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연구

An Analysis of Labor Market Structure in the Fisheries Industry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hanging Labor Policies

2019. 12.

한광석 | 마창모 | 문석란 | 김세인 | 이채령

연구진 |

한광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위원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위원
문석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김세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원
이채령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한광석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6장, 제7장 제1절~제2절 일부

연구진 |

마창모 제7장 제1절~제2절 일부
문석란 제4장
김세인 제5장
이채령 제3장

외부연구진 |

김한솔 (주)리서치앤리서치 팀장
배형민 (주)리서치앤리서치 선임연구원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김택훈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연맹 수산정책본부장
김병호 부경대학교 교수
조용준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송준석 해양수산부 서기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주 52근로시간제 도입 등 노동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각 16.4%, 10.9% 인상되었다. 2009~2017년까지 최저임금 연 평균 인상률은 6.2%(최저 2.75%~최고 8.3%)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 역시 최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제로 단축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수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산업의 경우 대부분 노동력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임을 고려한다면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산업분야의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영향과 대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동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분야의 노동시장 구조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의 변화 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실시에 따른 수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수산업분야 노동시장의 구조분석을 통해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산업의 세부산업인 어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등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급, 임금 결정 등

노동시장 구조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수산업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노동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가 수산업분야에 안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의 집필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의 한광석 연구위원, 마창모 연구위원, 문석란 전문연구원, 김세인 연구원, 이채령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통계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담당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의 다양한 자문위원이 참여를 하였다. 부경대학교 김병호 교수, 수산경제연구원 조용준 박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김택훈 수산정책본부장, 해양수산부 송준석 서기관 그리고 본원의 홍현표 명예위원과 조정희 수산연구본부장이 연구 추진과정에서 본 연구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셨다. 이에 필자를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수산업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수산업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장 영 태

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론 3
	1. 연구범위 및 내용 3
	2. 연구방법론 5

제 2 장	최근 노동 관련 제도 변화 현황과 쟁점 · 9
	제1절 최저임금제도 9
	1. 최저임금제도 개요 9
	2. 우리나라 최저임금 변화 추이 12
	제2절 근로시간 단축제도 18
	1.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18
	2.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 19
	3. 수산업분야 근로시간 단축제도 22

제 3 장	수산물 생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 · 25
	제1절 산업 개요 25
	1. 산업 정의 25
	2. 산업 분류 26
	3. 산업 현황 27
	4. 산업 특성 34
	제2절 노동시장 구조 및 특성 분석 39

	1. 노동시장 현황 39
	2. 임금 제도 43
	3. 노동시장 특성 48

제 4 장	수산물 가공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 · 57
	제1절 산업 개요 57
	1. 산업 정의 57
	2. 산업 분류 59
	3. 산업 현황 64
	4. 산업 특성 68
	제2절 노동시장 구조 및 특성 분석 77
	1. 고용 및 임금실태 분석 77
	2. 노동시장 특성 82

제 5 장	수산물 유통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 · 85
	제1절 산업 개요 85
	1. 산업 정의 85
	2. 산업 분류 87
	3. 산업 현황 90
	4. 산업 특성 96
	제2절 노동시장 구조 및 특성 98
	1. 고용 및 임금 실태 분석 98
	2. 노동시장 특성 102

제 6 장	노동제도 변화에 따른 수산업 영향분석 · 10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07

1. 조사 개요	107
2. 조사업체 특성 분석	108
제2절 수산업 노동시장 특성 분석	115
1. 채용 방식	115
2. 임금 관련 설문조사	118
3. 노동조합 관련 설문조사	126
제3절 노동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128
1. 최저임금제도 적용에 따른 영향력 분석	128
2. 근로시간 단축 영향 분석	140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51

제1절 요약 및 결론	151
1.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151
2. 노동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156
제2절 정책제언	158
1. 최저임금 산정 시 수산업 특성 반영 검토 필요	158
2.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160
3. 고령노동자에 대한 정책지원	161
4. 합리적인 탄력적 근로기간 설정	162
5. 정부지원제도의 홍보	163
6.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원	163
7. 수산업분야 노동력 수급 효율성 제고	164
8. 수산업분야 노동 통계 시스템 구축	165



표 목차

❖	
〈표 1-1〉	해양수산업특수분류상의 수산업 분류 5
〈표 1-2〉	본 연구조사 방법론 6
〈표 1-3〉	선행연구와 차별성 6
〈표 2-1〉	선원 및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14
〈표 2-2〉	수산업부문 최저임금 영향률 15
〈표 2-3〉	1인당 최저임금 부담액 16
〈표 2-4〉	최저임금이 고용과 매출에 미치는 영향 17
〈표 2-5〉	근로시간 단축 현황 19
〈표 2-6〉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 21
〈표 2-7〉	수산업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23
〈표 3-1〉	수산물 생산부문의 법상 분류 26
〈표 3-2〉	수산물 생산업의 통계상 분류 비교 27
〈표 3-3〉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 동향 28
〈표 3-4〉	어업부문 성장성 관련 지표 28
〈표 3-5〉	2015년 수산물 생산업 종사자 현황 29
〈표 3-6〉	2015년 어로·양식어업 경영 형태 현황 30
〈표 3-7〉	원양어업 종사 형태 현황 31
〈표 3-8〉	원양어업 선원 취업 현황 31
〈표 3-9〉	연도별 어선 선원 이직 현황 32
〈표 3-10〉	천일염 생산량 33
〈표 3-11〉	2017년 전국 염전 운영 현황 33
〈표 3-12〉	소금 채취업 종사자 현황 34
〈표 3-13〉	전국 염전의 임차비율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37
〈표 3-14〉	2017년 수산물 생산업 업종별 종사자 현황 40

〈표 3-15〉 2017년 수산업 업종별 종사자 현황(연령별)	41
〈표 3-16〉 2017년 해양수산분야 종사자 현황(직종별)	41
〈표 3-17〉 2017년 해양수산분야 종사자 현황(성별 및 국적별)	42
〈표 3-18〉 2017년 수산물 생산업 업종별 급여 현황	42
〈표 3-19〉 우리나라 업종별 임금제도 현황	45
〈표 3-20〉 임금지급 결정방법	46
〈표 3-21〉 근해어업 연평균 선원임금	47
〈표 3-22〉 수산물 생산업의 채용규모 확대 시 요인 영향력	49
〈표 4-1〉 수산물 가공업 신고 업종 분류 및 정의	59
〈표 4-2〉 「식품산업진흥법」상의 업종별 정의	60
〈표 4-3〉 수산가공품의 제품 분류별 정의 및 종류	60
〈표 4-4〉 수산가공품 품목별 생산량 항목 분류 체계	62
〈표 4-5〉 표준산업분류상의 수산물 가공업 분류 비교	63
〈표 4-6〉 전체 수산가공품 생산량 및 생산금액	64
〈표 4-7〉 수산가공품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65
〈표 4-8〉 수산가공품별 업체 수 현황	66
〈표 4-9〉 수산가공품업 종사자 현황	67
〈표 4-10〉 2017년 수산물 가공업 지역별 업체 및 종사자 현황	68
〈표 4-11〉 식료품 제조업 대비 수산물 가공업 지위	69
〈표 4-12〉 수산물 가공업의 산업 규모 비교(2017년 기준)	70
〈표 4-13〉 수산물 가공업의 사업체 규모	72
〈표 4-14〉 수산물 가공업 조직형태	72
〈표 4-15〉 수산물 가공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교	73
〈표 4-16〉 2017년 지역별 주요 수산물가공품 생산동향	74
〈표 4-17〉 수산물 가공업 총산출액 및 부가가치액 변화 추이	75
〈표 4-18〉 산업부문별 생산유발계수 순위(2014)	75
〈표 4-19〉 수산가공품 및 국내 주요 산업의 고용효과 비교(2014)	76
〈표 4-20〉 수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 현황(2017)	77
〈표 4-21〉 수산물 가공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77
〈표 4-22〉 수산물 가공업의 평균 종사자 수(직위별)	78

〈표 4-23〉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 현황(성별 및 국적별)	78
〈표 4-24〉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 현황(연령별)	79
〈표 4-25〉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 직종별 현황	79
〈표 4-26〉 수산물 가공업 연간급여 현황(2017)	80
〈표 4-27〉 수산물 가공업 직종별 월평균 임금 현황(2018)	80
〈표 4-28〉 한국인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현황(2018)	81
〈표 4-29〉 수산물 가공업 직위별 월평균 임금 현황(2018)	81
〈표 5-1〉 수산물 유통 기능	86
〈표 5-2〉 수산물 유통업의 통계상 분류	89
〈표 5-3〉 대형마트·백화점 수산물 매출액 추이	90
〈표 5-4〉 대형마트의 농수축산물 매출액 구성비 추이	91
〈표 5-5〉 전국 위판장 현황(2018년 기준)	91
〈표 5-6〉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 현황(2017년 기준)	92
〈표 5-7〉 최근 10년간 도매시장 거래금액 규모별 중도매인 현황	94
〈표 5-8〉 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2016년 기준)	95
〈표 5-9〉 수산물 도소매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2016년 기준)	96
〈표 5-10〉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 현황(2016년 기준) - 수산업 실태조사	98
〈표 5-11〉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 현황(2017년 기준) - 전국사업체조사	99
〈표 5-12〉 산지 수산물시장 유통종사자 현황(수산물 위·공판장)	100
〈표 5-13〉 수산물 유통업 단순 노무인력 현황(전국향운노동조합연맹)	101
〈표 5-14〉 도매시장 수산부문 유통종사자 현황 -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	101
〈표 5-15〉 수산물 유통종사자 수 추정결과 비교(2016년 기준)	102
〈표 5-16〉 수산물 유통업의 근로기준법 적용	103
〈표 6-1〉 조사업체 개요	108
〈표 6-2〉 수산업 업종별 표본 창립연대	110
〈표 6-3〉 수산업 업종별 업체별 매출액 분포	112
〈표 6-4〉 업종별 수산분야 매출 비중(수산업)	114
〈표 6-5〉 분야별 수산업 근로자 채용방식	117
〈표 6-6〉 수산업 산업분류별 근로자 채용 시 임금 결정기준	119
〈표 6-7〉 수산업분류별 임금 지급시기	121

〈표 6-8〉 수산업분야별 전체 임금 대비 성과급 비율	123
〈표 6-9〉 수산업분야별 임금 결정 방식	125
〈표 6-10〉 수산업분야별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	127
〈표 6-11〉 수산업분야별 최저임금액 급여 근로자 여부	129
〈표 6-12〉 수산업분야별 최저임금 지급 근로자 비율	131
〈표 6-13〉 최저임금액 급여 이유	133
〈표 6-14〉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해지 근로자 여부	135
〈표 6-15〉 최저임금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136
〈표 6-16〉 최저임금이 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137
〈표 6-17〉 최저임금이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	138
〈표 6-18〉 최저임금이 근로자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39
〈표 6-19〉 최저임금이 기계화 및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139
〈표 6-19〉 최저임금이 기계화 및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계속)	140
〈표 6-20〉 분야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141
〈표 6-21〉 분야별 임금 감소 여부	144
〈표 6-22〉 분야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비율	145
〈표 6-2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지원대책 활용(예정)여부	146
〈표 6-24〉 분야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148
〈표 6-25〉 분야별 정부지원대책 미활용 이유	149
〈표 7-1〉 최저임금 영향률의 차이	159
〈표 7-2〉 어가수 추이 및 전망	16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8
<그림 2-1> 최저임금 결정 과정	11
<그림 2-2>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변화	13
<그림 2-3> OECD 최저임금 현황	13
<그림 2-4> 2018년 OECD 근로시간	18
<그림 2-5>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20
<그림 2-6> 근로시간 단축 특례 유지업종	21
<그림 4-1> 수산업의 범위	58
<그림 4-2> 사업체 당 출하액 및 부가가치액 비교	70
<그림 6-1> 설문조사 개요	108
<그림 6-2> 표본 창립연대(수산업)	109
<그림 6-3> 수산업 업체별 매출액 분포	111
<그림 6-4> 수산분야 매출 비중(수산업)	113
<그림 6-5> 수산업분야 근로자 채용방식	116
<그림 6-6> 근로자 채용 시 임금 결정기준	118
<그림 6-7> 임금 지급시기	120
<그림 6-8> 전체 임금 대비 성과급 비율	122
<그림 6-9> 임금 결정방식	125
<그림 6-10>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구성여부	126
<그림 6-11> 최저임금액 급여 근로자 여부	128
<그림 6-12>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비율	130
<그림 6-13> 최저임금액 급여 이유	132
<그림 6-14>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해지 근로자 여부	135
<그림 6-15>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141

〈그림 6-16〉 개정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고용자 임금 감소여부	143
〈그림 6-17〉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비율	145
〈그림 6-18〉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지원대책 활용(예정)여부	146
〈그림 6-19〉 활용 또는 활용예정인 제도	147
〈그림 6-20〉 분야별 정부지원대책 미활용 이유	149
〈그림 7-1〉 여가경제의 비용 중 노무비 비율의 증대	159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 각종 노동정책이 변화되고 있음
- ▶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으로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상승하였고, 2019년도 8,350원으로 10.9% 상승
- ▶ 근로시간 역시 최대 68시간 근로시간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 ▶ 본 연구는 수산업분야 노동시장의 구조분석을 통한 노동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파급효과와 정책적지원 등 대응책 마련함에 있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 연구방법

-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산업분야의 산업적 특징을 파악하고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함
- 수산업 기업체 358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수산업분야의 파급효과를 분석함
- 통계분석에서 간과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시장 이슈들을 위해 노동계 및 산업계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수산업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연구 수행함

▶ 연구특징

- 이 보고서는 수산업을 1,2,3 차 산업인 어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적 특징을 살펴보고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하였음
-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하여 문헌조사, 통계조사 등을 활용하여 우선 분석하고,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음
- 설문조사를 통하여 채용방식, 임금, 노동조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고, 최저임금 적용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음
- 정부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정책변화가 수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산업분야의 노동시장 구조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1) 수산업 노동시장의 특징

가. 수산물 생산업

- ▶ 수산물 생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노동, 자본 등의 인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생산의 불확실성이 존재. 이로 인해 노동의 비유동성과 소위 깃가림제로 통칭하는 비율 급제 존재
- ▶ 타산업에 비해 임시직, 일용직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많은 특성을 보임
- ▶ 노동력 수급에 있어서 계절성을 지니는데, 어로어업은 출어할 때, 양식어업은 입식, 종패, 수확, 어장관리 등 일시적으로 노동수요가 급증
- ▶ 어선어업 종사자 중 선원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육상근로자의 127~128% 정도의 최저임금을 지급받음

나. 수산물 가공업

- ▶ 수산물 가공업은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약 59%이며, 직종별로 기능직이 66.6%로 단순 노동의 특징이 높고, 연령도 50대 이상이 47.4%로 고령화 되어 있음
- ▶ 수산물 가공업은 수산물의 생산특성에 따라 고용형태가 좌우됨. 생산이 원료수급에 따라 계절적인 특성을 지니는 사업체의 경우 임시일용직이 많으나, 상시작업을 하는 사업체의 경우 상용직이 많음

- ▶ 가공형태가 단순할수록 임시 및 일용직의 비율이 높음
- ▶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5.8%이나 종사자의 노령화와 수산물작업 환경의 열악함 등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등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한 부담이 수산물 생산업이나 유통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다. 수산물 유통업

- ▶ 수산물 유통업은 2000년 이후 전통적인 소비지 유통중심의 도매시장이 축소되고 있음
- ▶ 수산물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를 보면 도매업은 10억 원 이하가 59.1%, 소매업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업체는 전체의 59.2%로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함
- ▶ 종사자 규모는 종사자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도매업은 87.9%, 가공식품도매업은 79.3%, 수산물소매업은 98.8%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 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무급가족 비율이 19.46%으로 수산물 생산업 7.5%, 가공업 7.1%에 비해 높음
- ▶ 종사자의 47.7%가 여성인데, 종사자 중 상용직의 여성비율은 38.5%인데, 임시 및 일용직의 여성비율은 74.8%에 달함
- ▶ 수산물도소매업은 업무운영이 비교적 자율적인 형태이며,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가 큰 영향이 없다고 함

(2) 최저임금제 변화에 따른 영향

- ▶ 최저임금액 지급 여부에 대해 수산물 생산업은 11.5%, 수산물 가공업은 33.3%, 수산물 유통업은 16.2%가 있다고 응답
- ▶ 최저임금 지급 이유는 단순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6.5%임.
-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해지여부에 대해서는 1.4%가 있다고 대답하여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 ▶ 최저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순이익은 40.5%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으며, 제품가격에는 수산물 가공업이 41.4%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함
- ▶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 생산성이나 이직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기계화 및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90%가량이 영향 없음 이라고 응답. 최저임금 상승이 자본재로 대체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3) 근로시간 단축 영향

- ▶ 상용 근로자의 주당평균시간에 대하여 평균 53시간이 넘는 업체는 20.7%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수산물 유통업이 27.4%로 나타났는데 62시간 초과 부분이 23.1%임
- ▶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에서 고용자 임금 감소 여부에 대해 91.7%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12.6%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

- ▶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감소비율은 5~10%미만이 52.6%로 가장 높았음
- ▶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하여 정부지원대책에 대하여 “있다”라고 대답한 업체는 20.6%에 불과함. 정부지원대책 활용예정인 제도는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사업’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게 대답
- ▶ 정부지원대책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35.4%임

(4) 정책대안 제시 내용 및 정책화 활동

- ▶ 수산업 부문 별도 최저임금 산정
 - 현재 수산업 중 선원법 적용을 받는 어선원에게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그 외 근로자는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적용
 - 수산업은 노동시장 구조는 일반 산업과 다른 특성을 보임. 따라서 수산업부문은 별도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 마련
 -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노동조합과 선주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다 보니 ILO의 기준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
 -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처우 문제 등 현안사항이 있으므로 별도의 연구를 통해 해결과정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냉동냉장업 등 수산업분야의 외국인 고용허가에 대한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고령노동자에 대한 정책 지원

- 수산업은 타분야에 비해 고령자가 특히 많음. 어가의 고령자율은 2017년 기준으로 35.2%이며, 수산물 가공업종사자는 50대 이상이 67.4%에 달함
-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급 또는 별도의 최저임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령자 고용확보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함
- ▶ 합리적인 탄력적 근로기간 설정
 - 수산업의 속성상 계절적 속성이 있음. 특히 가공산업의 경우 원료인 수산물에 따라 생산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노사정이 합리적으로 탄력적 근로기간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만일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없는 경우 법 테두리 내의 합리적인 탄력적인 근로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해당업종의 업무분석을 통한 합리적 탄력적 근로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정부지원 제도의 홍보
 -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지원대책 미활용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내용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다. 수산물 가공업은 28.9%, 수산물 유통업은 40.8%가 지원내용을 잘 모르고 있음
 - 따라서 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물론 해양수산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 ▶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지원
 - 수산부문 고령자, 청년, 귀어·귀촌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분야 노동력 수급 효율성 제고

- 수산업 노동시장은 계절성과 지역적인 한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노동의 수급여건이 달라 인력조달에 고비용이 소요되기도 함. 따라서 수산업분야의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노동동향 통계 신설

- 특히 수산업 노동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발표 통계자료와 통계청의 통계수치가 상이하여 정책 활용에 혼선이 따름. 수산업분야의 필요한 노동관련 통계조사를 만들 필요가 있음

EXECUTIVE SUMMARY

An Analysis of Labor Market Structure in the Fisheries Industry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hanging Labor Policies

1. Purpose

- ▶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government's income-driven policy,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hanges to multiple labor polici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minimum wage system as well as a 52-hour workweek.
- ▶ In 2018, Korea's minimum wage increased by 16.4% from the previous year to mark 7,530 KRW (based on hourly wage rate) and recorded a 10.9% year-on-year increase to stand at 8,350 KRW in 2019.
- ▶ Following the change in the cap to maximum working hours to 52 hours from 68, the labor market is expected to undergo significant changes.
- ▶ This study aims to analyze implications resulting from a

number of changes in labor related systems based on an analysis of labor market structures in the fisheries sector, while suggesting countermeasures including policy support to combat any negative side-effects from certain changes.

2. Methodology and Feature

1) Methodology

- ▶ The analysis of a variety of statistics helped underst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the fisheries sector and identify the features of the labor market.
- ▶ Based on a survey targeting 358 fisheries related businesses, this study analyzed a number of implications that the government's changing labor policy has brought about within the fisheries sector.
- ▶ Researchers conducted on-site investigation by visiting relevant labor and industrial sites, carrying out consultations with experts on potential labor issues that statistical analysis that might have been overlooked.

2) Feature

- ▶ This study divided the fisheries industry into three categories: fishery production as the primary industry, fishery processing as the secondary industry and fishery distribution as the

tertiary industry. Under such categorization, this study looked into each industrial feature, while analyzing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 ▶ This study utilized a literature review and a statistical analysis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and supplemented the analysis with a survey and on-site investigation.
- ▶ With the survey offering information such as the type of employment, income and the presence of a labor union, the study analyzed implications of changes made to the minimum wage system and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 ▶ Furthermore,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the analysis of labor market structure to allow the government's policy changes to settle in the fisheries industry.

3. Results

1) Summary

- ▶ Unlike other industries, manmade efforts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fishery production industry such as labor and capital, but uncertain factors arise from natural causes.
- Therefore, the industry has inflexible labor and the Share System (paid based on the share of catch).
-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the fishery production

industry tends to utilize a large number of temporary, day employees as well as unpaid family members.

- The demand and supply of labor fluctuates seasonally; labor demand temporarily rises when fishing while labor demand for aquaculture sharply increases during periods of breeding, rearing, harvesting and cage management.
- Since workers subject to the Seafarers Act require high labor intensity, they are paid 127~128% of minimum wage compared to land workers.
 - ▶ Female workers account for 59% of all in the fishery processing industry while in technical jobs female workers occupy 66.6% of all work, featuring highly in manual labor. In addition, the industry is aging with 47.4% of workers in their 50s or older.
- Type of employment depends on features of producing marine products in the fishery processing industry. Businesses whose production relies on seasonal raw materials tend to hire a large percentage of temporary workers, while businesses with its operation running at all times possess a large share of regular workers.
- The simpler the type of processing is, the higher the ratio of temporary or day workers is.
- Despite the ratio of foreign workers currently standing at 5.8%, it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aging and worsening

working conditions.

- Burden arising from changes in labor policy including minimum wage system and 52 hour workweek are relatively higher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such a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 ▶ Since 2000, the fishery distribution industry has seen a decline in the traditional wholesale market centering on consumption sites.
- The size of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focused on fishery products is very small; sales of 59.1% of wholesale businesses account for less than 1 billion KRW compared to that of 59.2% of retail businesses accounting for less than 100 million KRW.
- 87.9% of wholesale business of fishery products are small businesses with the number of workers being less than 4, with 79.3% of wholesale business of processed food and 98.8% of retail business of fishery products fall into this category.
- 19.46% of fishery distribution businesses are run by unpaid family members, which is higher than that of fishery production businesses (7.5%) and fishery processing businesses (7.1%).
- Female workers account for 47.7% of all workers, with female workers representing just 38.5% of regular employment while

their representation in temporary and day work being much higher, standing at 74.8%.

- Working hours of fishery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are relatively flexible and most of the workers are paid above minimum wage. Therefore, changes in the minimum wage system and 52 hour workweek do not have a large impact on the industry.
- ▶ Concerning the increase in minimum wage, 11.5% of fishery production businesses, 33.3% of fishery processing businesses and 16.2% of fishery distribution businesses are willing to pay the minimum wage.
- 46.5%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were willing to pay the minimum wage in order to handle simple manual work.
- Only 1.4% of business owners said they consider terminating employment due to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meaning de facto none.
- 40.5% of those working in the fishery processing industry stated that rising minimum wages w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ir net profit, while 41.4% of them said it w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prices.
- The survey showed that increase in minimum wage has not significantly impacted labor productivity and turnover.
- In particular, 90% of respondents said that increasing the minimum wage has had no impact on mechanization and

automation, which means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replace the rising minimum wage with capital goods.

- ▶ 20.7% of business stated that their regular employees work more than 53 hours a week on average. In particular, 27.4% of businesses in the fishery distribution industry said their employees were working beyond the maximum cap while 23.1% said they were working more than 62 hours per week.
- In terms of the impact of a reduced cap to working hours, 91.7% of respondents stated that the change would not reduce their salaries, while 12.6% of those in the fishery processing industry stated that reduced working hours would in fact have an impact.
- 52.6%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are likely to reduce employees' wages by 5 to less than 10% due to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 Concerning the government's policy on reduced working hours, only 20.6% of businesses responded that they are 'aware' of the government's support measure. In addition, 46.8%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government's support measure that they are going to utilize is called the 'Project for Supporting Jobs', which was the highest.
- For reasons that business are not tapping into governmental support measures, 35.4% of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do

not know about the government's policy measures.

2) Policy suggestions and relevant activities

- ▶ Estimating a separate minimum wage for the fisheries sector
- At present, only fishers subject to the Seafarers Act are applied by a separate minimum wage, while other workers are applied by the minimum wage same as land workers.
- The fisheries industry has distinctive features of the labor market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industries. Therefore, the fisheries sector needs to estimate a separate minimum wage system.
- ▶ Establishing minimum wage standards for foreign workers
- The minimum wage for foreign sea crews are determined by a collective agreement between the labor union and ship owners, which could potentially contradict with the ILO standards.
- Given pending issues concerning labor conditions for foreign fishers, it is necessary to draw solutions through a separate study.
- The scope of permitting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expanded including refrigeration business.
- ▶ Providing policy support for elderly workers
-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the fisheries sector

particularly has a large number of elderly workers. As of 2017, the rate of aging workers in fishery households accounted for 35.2%, while 67.4% of those working in the fishery processing industry were people in their 50s or older.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to hire elderly workers including paying employment incentives for the elderly and setting up a separate standard of minimum wage.
 - ▶ Establishing a reasonably flexible working period
- The fisheries industry is affected by seasonal factors by nature. In particular, the gross production of the processing industry fluctuates depending on raw materials, in other words, fishery products.
- The labor union,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allowed to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flexible working period. If workers are not able to represent their rights, it is necessary to entrust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establish a reasonably flexible working period within the boundary of laws based on the analysis of relevant businesses.
 - ▶ Promoting the government's support measures
- The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 (35.4%) stated that they do not know about the government's policy measures and have failed to utilize them. In addition, 28.9% of respondents in the fishery processing industry and 40.8% of

the respondents in the fishery distribution industry stated that they do not know about the government's support measures.

- Therefor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s well a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hould actively promote governmental policies including the minimum wage system and reduced working hours.
 - ▶ Expanding support for the Job Stabilization Fund
- Support for the Job Stabilization Fund should be expanded targeting elderly and young workers, those returned to fishing and agricultural villages as well as foreign seasonal workers working only during specific seasons.
-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pport for workers in businesses with the number of workers being less than 5.
 - ▶ Boosting the efficiency of the demand and supply of labor in the fisheries sector
- The labor market in the fisheries industry has limitations due to seasonal and locational factors. The industry has to pay high cost for securing the labor due to different conditions of supply and dem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run a program to match job seekers with job offers in the fisheries sector.

- ▶ Building statistics on labor trends
- Particularly concerning labor in the fisheries sector, statistics published by the MOF are different from those announced by the Korea Statistics, causing confusion in utilizing polic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build labor related statistics necessary for the fisheries sector.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 Setting up a reasonable wage system for the fisheries sector
- ▶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against reduced working hours in the fisheries sector
- ▶ Preparing labor policy including changes on the employment system of foreign workers in the fisheries sector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 각종 노동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으로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상승하였고, 2019년도 8,350원으로 10.9% 상승하였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역시 최대 68시간 근로시간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기인한다. 소득주도 정책이라 함은 소비 주체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이다. 과거 투자와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고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소득양극화에 따른 중산층의 붕괴, 저소득층의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대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소위 '낙수효과'가 실패로 돌아간 것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제도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많은 혼란을 주었으며, 그 효과에 대한 논쟁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없애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주어 경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론이다. 경기지표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가 여부와 고용증가에 대한 통계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정부의 이러한 노동정책 변화는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에서 노동부문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이광남 외(2019)에 의하면 12.9%~19.9%에 달한다.¹⁾ 또한 장정인 외(2018)에 따르면 수산업분야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업체 수는 약 32,900개에 달하며,²⁾ 대상 종사자 수는 381,32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³⁾ 이에 따라 수산업분야에 대한 노동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수산업의 경우 해운산업이나 항만산업 등과 달리 노동시장의 균형은 정책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었으며, 관련 연구도 많지 않았다. 해양수산분야 중 해운은 선원복지, 항만은 항운노조의 상용화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가 있어서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수산업의 경우 과거 어선원 기준임금을 제외하고는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1) 이광남 외(2019), p. 236.

2) 장정인 외(2018), p. 4.

3) 장정인 외(2018), p. 51.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산업분야의 영향력을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산업분야의 노동시장에 대한 수급 상황, 임금 결정 등 구조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각종 노동정책이 수산업분야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노동시장 구조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지원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산업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또는 도소매 등 영세기업이 많아 노동관련 제도 변경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정책 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정책이 수산업에서 연착륙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산업분야 노동시장의 구조분석을 통한 노동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 대응책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수산업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슈 분석의 목적도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업분야의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방법론

1.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수산업의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수산업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변화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을 분석하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이 되는 수산업의 분야를 한정해야 한다.

수산업의 법적정의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상에 정의되어 있다. 또한 수산업에 대한 분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와 해양수산업특수분류상의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표준산업분류상에 수산업은 하나의 분류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나누어 쪼개져 있거나 다른 산업과 혼용되어 있다. 이에 반해 해양수산업특수분류는 대분류상에 수산물생산업(4), 수산물가공업(5), 수산물유통업(6)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었다(〈표1-1〉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산업의 분류는 해양수산업특수분류상의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산물 생산업 중 내수면 관련 어업과 어업관련서비스업, 수산물 가공업상의 소금가공업, 기타 수산물 가공업 등은 제외하도록 한다.

노동정책은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제도 정책
-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책
- 수산업의 산업 특성
- 수산업의 노동시장 수요
- 수산업의 노동시장 공급 특성
-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통계는 통계청의 관련 산업 통계와 해양수산업특수분류에 의해 조사된 해양수산업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표 1-1〉 해양수산업특수분류상의 수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수산물 생산업	어로어업	해수면 어업
		내수면 어업
	양식어업	해수면 양식어업
		내수면 양식어업
		관상용 수산 동식물 양식어업
	어업관련서비스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소금 채취업	소금 채취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 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 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소금 가공업
		기타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수산물 중개업
		수산물 도소매업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수산물 운송업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

자료: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주된 방법은 통계분석과 설문조사 분석이다. 또한 통계 분석에서 간과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시장 이슈들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수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하여 자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1-2〉 본 연구조사 방법론

구분	내용
통계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어가경제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기업경영분석, 경제총조사, 해양수산업실태조사, 원양어업통계조사, 선원통계연보,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전국사업체 조사, 유통산업실태조사, 수산물가공업통계
현장조사 및 자문	선주협회, 수협, 선원노조, 학계, 양식생산업 종사자, 유통회사, 가공회사 등
설문조사	총 358개 업체 시행

본 연구의 주요 선행연구는 〈표 1-3〉 과 같다. 주요 선행연구는 장정인 외(2018)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분석과 이광남 외(2019), 수산업 현장 애로 사항 분석 및 동향 파악 연구가 있다. 전자가 계량분석을 통한 고용 변화를 추정하였고, 후자가 최저임금 변화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현장 애로 사항을 파악하였다면 본 연구는 수산업 노동 시장의 구조분석과 적용 이후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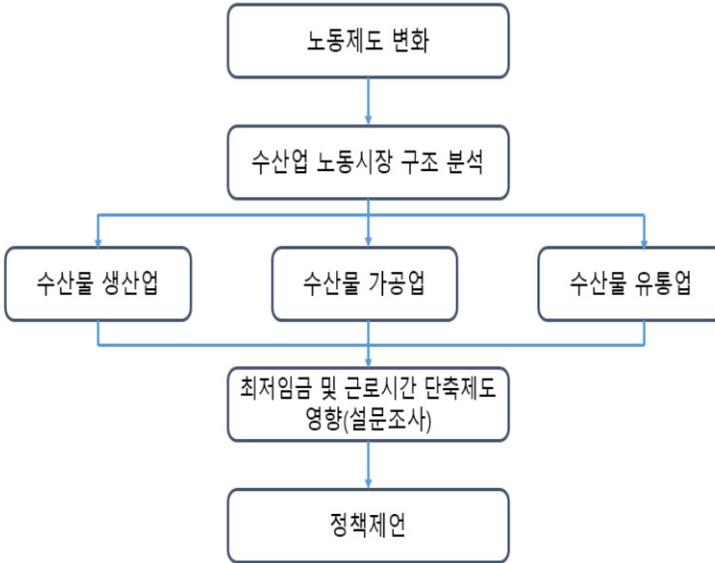
〈표 1-3〉 선행연구와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어업재해보상 보험의 기준임금 조사 및 산정체계에 관한 연구 연구진(연도): 한광석 외(2004) 연구목적: 어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기준임금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현지실태조사 선주 대상 설문조사 기존통계 조사 전문가 자문의견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노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 결정이론과 어업임금제도 어선원 임금수준 조사 및 분석 각종 사례분석 기준임금 산정체계 및 결정 건의사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통계 분석 시계열 및 횡단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는 효과 연구진(연도): 오상봉 (2015) 연구목적: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미변수활용 기업이윤변화(이중차분 모형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가구의 실태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부담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연구진(연도): 장정인 외(2018) 연구목적: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정책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분석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계량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분석 해양수산분야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현황 해양수산분야 근로현황 및 근로시간 단축 영향(설문조사) 정책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수산업 현장 애로사항 분석 및 동향 파악 연구 연구진(연도): 이광남 외(2019) 연구목적: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수산업 현장 애로사항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분석 해양수산분야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현황 해양수산분야 근로현황 및 근로시간 단축 영향(설문조사) 정책방안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영향분석 연구 연구진: 한광석 외 연구목적: 수산업분야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임금결정 등 구조 분석을 통하여 노동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정책 분석 노동시장 수급 분석 설문조사 현지조사 자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 관련 제도 변화 현황과 쟁점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 수산업의 노동정책 변화 영향 분석 정책제언

본 연구의 연구 흐름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 2 장

최근 노동 관련 제도 변화 현황과 쟁점

제1절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 개요

1) 도입목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⁴⁾

최저임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근거조항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경제사정상 실시가 되기 어려워 사문화되었으며,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7년 10월 헌법 제32조 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라는 조

4)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도란?」 (검색일: 2019년 10월 1일)

항이 신설됨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적용되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소유자⁵⁾에게는 「선원법」에 의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2)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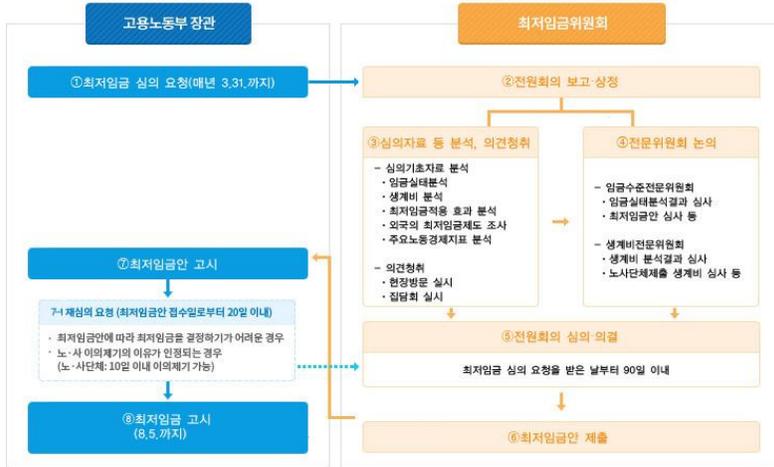
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결정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에 결정하여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동법 제4조 및 8조). 최저임금액은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월 단위 경우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한다(동법 제5조 ①항).

5) 선박 중 다음 각 호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선(解船). 다만, 「해운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된 부선은 제외한다.

〈그림 2-1〉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심의 및 결정과정」 (검색일: 2019. 10. 1)

나. 선원법에 의한 결정

선원의 최저임금제도는 2001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선원법」상의 최저임금은 노사합의에 따라 해수부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매년 심의 고시를 하게 된다(「선원법」 제59조). 「선원법」상의 최저임금은 통상 육상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선박소유자는 매년 고시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선원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책정되는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원법」 제56조 및 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선원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이다. 「선원법」에 의해 고시되는 최저임금은 선원최저임금,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어선원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등이다.

선원의 최저임금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의 특례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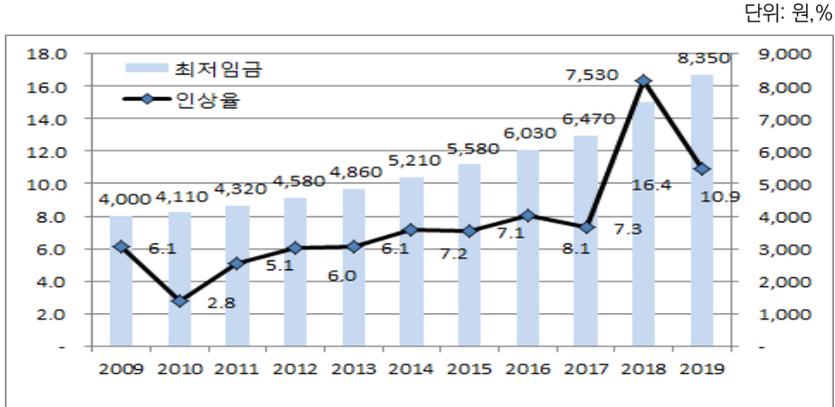
-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정할 수 있다.
-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습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수유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2. 우리나라 최저임금 변화 추이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8,350원으로 전년대비 10.9% 인상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1988년 제도 시행 당시 시간급 기준으로 제1그룹 462.5원 제2그룹 487.5원으로 시작되어 1989년 600원,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 600원, 2000년 1,865원 2010년 4,110원, 2019년 8,350원으로 인상되었다.⁶⁾ 1989년 이후 연평균 인상률은 9.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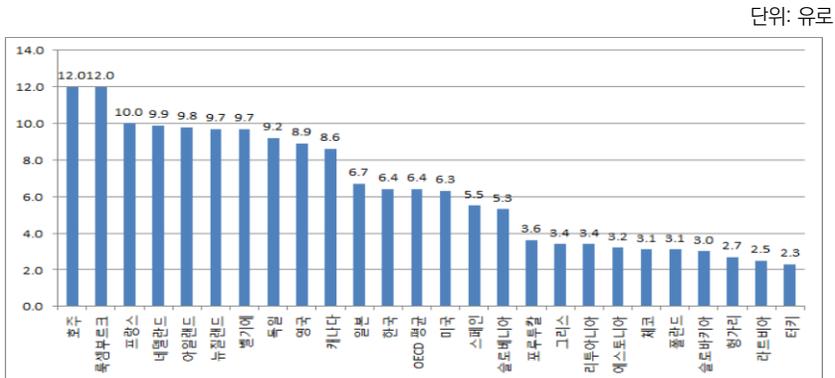
6)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액 현황」 (검색일: 2019. 10. 1.)

〈그림 2-2〉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변화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액 현황」(검색일: 2019. 10. 1)

〈그림 2-3〉 OECD 최저임금 현황



자료: WSI(2019), p. 4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선원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1998년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 월 36만 2천 원으로 처음 설정되었다가 2000년 44만 3천 원, 2009년 108만 원으로 처음 100만 원을 넘었으며, 2019년 현재 215만 원이 되었다.

〈표 2-1〉은 선원과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비교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2016년까지는 선원의 최저임금이 인상률이 다소 높았으나, 2017년 이후에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됨에 따라 인상률의 폭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높다. 선원과 근로자의 최저임금비율은 2010년 127.8%에서 2016년 130.2%까지 상승하였으나, 2019년 현재 123.4%까지 하락되었다.

〈표 2-1〉 선원 및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단위: 월/천원, %, %포인트

구분	선원(A) (인상률)	근로자(B) (인상률)	비율 (A/B, %)	인상률 차이 (A-B)
2010	1,098 (3.6)	859 (2.8)	127.8	0.8
2011	1,163 (6.0)	903 (5.1)	128.8	0.9
2012	1,238 (6.4)	957 (6.0)	129.4	0.4
2013	1,319 (6.5)	1,016 (6.0)	129.8	0.5
2014	1,415 (7.3)	1,089 (7.1)	129.9	0.2
2015	1,518 (7.3)	1,166 (7.1)	130.2	0.2
2016	1,641 (8.1)	1,260 (8.06)	130.2	0.04
2017	1,760 (7.3)	1,352 (7.3)	130.2	0.0
2018	1,982 (7.3)	1,573 (16.4)	126.0	-9.1
2019	2,153 (8.6)	1,745 (10.9)	123.4	-2.3

자료: 1. 해양수산부 “선원최저임금 고시” 각년도, 저자 정리

2.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검색일 8.14)

3. 수산분야의 최저임금

수산분야의 최저임금은 이원화되어 있다. 수산물 생산업 중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공표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다른 분야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수산업부문의 최저임금 영향률⁷⁾을 보면 수산물 생산업은 2.0%, 수산물 가공업은 23.1%, 수산물 유통업은 21.0% 수준이다. 수산물 생산업 중 어로어업은 1.4%, 양식어업은 2.9%, 어업관련서비스업은 0%인 데 비해 소금 채취업은 10.8%로 높았다.

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중개 및 도소매업 영향률이 23.2%인 데 비해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은 8.8%로 조사되었다.

〈표 2-2〉 수산업부문 최저임금 영향률

단위: %

분류	업종	사례수	2018년	2019년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49	1.9	2.0
	수산물 가공업	128	13.2	23.1
	수산물 유통업	56	20.5	21.0
중 분 류	어로어업	118	2.0	1.4
	양식어업	15	4.2	2.9
	어업관련서비스업	8	0.0	0.0
	소금 채취업	8	0.3	10.8
	수산물 가공업	128	13.2	23.1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49	22.4	23.2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7	8.8	8.8

자료: 해양수산부, 2017년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2019.

7) 최저임금 영향률: 당해연도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

2019년 기준 최저임금 부담액은 수산물 생산업은 20,804원, 수산물 가공업은 73,823원, 수산물 유통업은 68,92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분류기준으로 어로어업은 21,673원, 양식어업은 25,263원, 소금 채취업은 24,324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 유통업 중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은 68,191원,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은 73,182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2-3〉 1인당 최저임금 부담액

단위: 만 원

분류	업종	사례수	2018년	2019년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49	35,597	20,804
	수산물 가공업	128	138,755	73,823
	수산물 유통업	56	122,121	68,920
중 분 류	어로어업	118	40,713	21,673
	양식어업	15	21,053	25,263
	어업관련서비스업	8	0	0
	소금 채취업	8	14,865	24,324
	수산물 가공업	128	138,755	73,823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49	130,816	68,191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7	68,864	73,182

자료: 해양수산부, 2017년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2019.

수산업분야의 최저임금 적용이 고용과 매출에 모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의 하나인 수산물 가공

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고용에는 -7.0%, 매출에는 -5.3%의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산물 생산업은 고용에는 -0.9%, 매출에는 -1.3%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양식어업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5.4%로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 최저임금이 고용과 매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분류	업종	사례수	고용	매출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49	-0.9	-1.3
	수산물 가공업	128	-7.0	-5.3
	수산물 유통업	56	-1.1	-3.2
중 분 류	어로어업	118	-0.9	-1.3
	양식어업	15	-1.1	-5.4
	어업관련서비스업	8	0.0	3.4
	소금 채취업	8	-1.1	-1.9
	수산물 가공업	128	-7.0	-5.3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49	-1.2	-3.5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7	-0.7	-1.3

자료: 해양수산부, 2017년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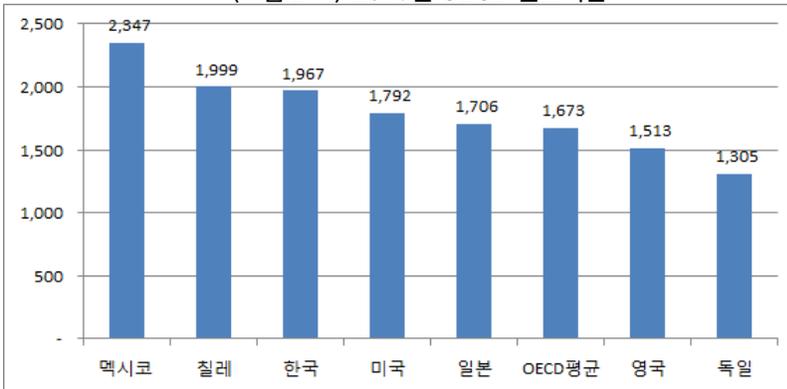
제2절 근로시간 단축제도

1.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취지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단축시켜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배경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삶의 질 저하이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00년대 들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으나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개정 전 근로시간은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으며,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례업종이 26개 업종으로 근로자 과로의 근원이 되었다.

〈그림 2-4〉 2018년 OECD 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e 고용지표(자료 검색일 2019.12.1.)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8년 기준 1,967시간으로 OECD 평균 1,673시간에 비해 294시간 정도 더 많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은 3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단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시간을 단축시킨 것이며, 최대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되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되면서 법정 48시간, 최대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었다. 이후 1989년 근로시간은 법정 44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으로 오히려 4시간이 증가되었다. 2003년 주 5일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시간은 전과 동일하지만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였다.

〈표 2-5〉 근로시간 단축 현황

연도	법정	최대
1953년	48	60
1989년	44	64
2003년	40	68
2018년	40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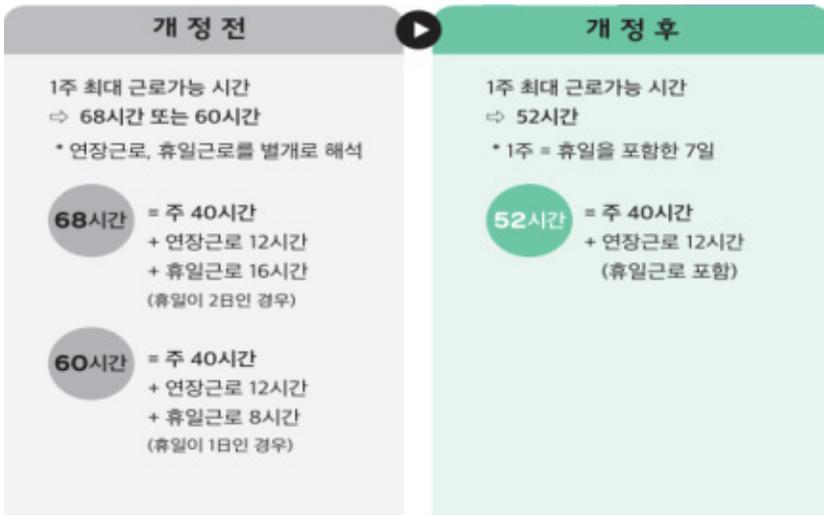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와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①항

과 ②항).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3조 ①항).

〈그림 2-5〉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자료: 고용노동부(2018. 6), p. 12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⁸⁾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

8) 서면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다(〈표 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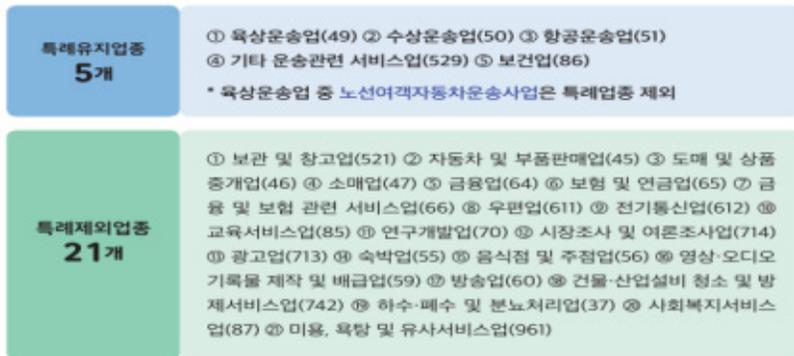
〈표 2-6〉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

시기	구분
2018. 7. 1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19. 7. 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2020. 1. 1.	50~300인 미만
2021. 7. 1	5~0인 미만

자료: 고용노동부(2018. 6), p. 13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한편,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은 과거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다.

〈그림 2-6〉 근로시간 단축 특례 유지업종



자료: 고용노동부(2018. 6), p. 16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

분류 또는 소분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5개의 특례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법 제59조).

또한 근로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채식, 재배, 재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3. 수산업분야 근로시간 단축제도

수산업분야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수산물 유통업, 수산물 가공업 등이다. 수산물 생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산업이므로 어로어업, 양식어업, 어업관련서비스업, 소금 채취업 등은 근로시간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수산물 가공업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적용되게 되며, 수산물 증개 및 도소매업과 운송업 및 보관업 등 수산물 유통업은 기존의 특례에서 제외되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된다.

〈표 2-7〉 수산업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해양수산물특수분류(2018)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특례 및 법 적용	근로시간 단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2)	일반	단축적용 (68→52시간)
		수산물 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소금 가공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기타 수산물 가공업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203)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331)					
수산물 유통업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수산물 중개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특례 제외	단축적용 (∞→52시간)
			소매업 자동차 제외(47)		
		수산물 도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 자동차 제외(47)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 자동차 제외(47)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수산물 운송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특례 존치	X	
		수상 운송업(50)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	보관 및 창고업(521)	특례 제외	단축적용 (∞→52시간)	

자료: 장정인 외(2018), p. 24.

2016년 기준으로 수산업 사업체 수는 총 125,283개이며,⁹⁾ 이 중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가 92,383개이다. 여기에서 수산물 생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으므로, 대상 기업체수는 약 32,900개 이하로 추산되며 종사자 수는 381,326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¹⁰⁾

9) 장정인 외(2018), p. 44.

10) 장정인 외(2018), p. 48-51.

제 3 장

수산물 생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

제1절 산업 개요

1. 산업 정의

수산업은 통상적으로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어업·양식업·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을 의미하며, 이중 수산물 생산업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과 양식업에 해당한다. ‘어업’은 「수산업법」 제2조 1항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수산업법」의 분류상 어업은 크게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구분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1호에 따르면 ‘양식’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그리고 동법 제2조2호에 따라

‘양식업’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표 3-1〉 수산물 생산부문의 법상 분류

구분		업종	관련법률
어업	면허어업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수산업법」 제8조
	허가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수산업법」 제41조
	신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양식업	면허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 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내수면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허가	육상해수양식업, 육상등 내수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법」(2019. 1. 8, 법률 제16212호); 「양식산업발전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모든 자료 검색일: 2019. 10. 5)

2. 산업 분류

수산물 생산업의 산업분류는 해양수산특수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해양수산특수분류상으로 수산물 생산업은 어로어업,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소금 채취업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어로어업은 해수면과 내수면으로, 양식어업은 해수면, 내수면, 관상용으로 분류된다.

통계상 분류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수산물 생산업은 어업과 기타비금속광물 광업의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으로 구성된다. 어업은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으로 2개 중분류로 구분된다. 어로어업은 해수면 어업(원양 어업, 연근해 어업)과 내수면어업으로 구별되고,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

업은 양식어업(해수면 양식어업, 내수면 양식어업,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과 어업관련서비스업으로 대별된다.

〈표 3-2〉 수산물 생산업의 통계상 분류 비교

해양수산물특수분류(2018)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수산물 생산업	어로어업	해수면 어업	어로어업(031)
		내수면 어업	
	양식어업	해수면 양식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032)
		내수면 양식어업	
		관상용 수산 동식물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소금 채취업	소금 채취업	기타비금속광물 광업(072)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2자리는 중분류, 3자리는 소분류

자료: 장정인 외(2018) p. 23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3. 산업 현황

1) 어로어업과 양식업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은 2013년 313만 5천 톤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에 326만 9천 톤으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7년에 전년대비 13.9% 증가한 372만 5천 톤을 기록하였다.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은 2014년 1,059천 톤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927천 톤이며, 전체 생산량의 비중도 32%에서 24.9%로 하락하였다. 반면 천해양식어업은 2014년 이후 생산량과 총생산량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년대비 23.7% 증가한 231만 6천 톤(전체의 62.2%)을 생산하였다.

〈표 3-3〉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13	2014	2015	2016(a)	2017(b)	증감률(%) ((b-a)/a)
총생산량	3,135	3,304	3,337	3,269	3,725	13.9
일반해면 어업	1,045 (33.3%)	1,059 (32%)	1,058 (31.7%)	908 (27.8%)	927 (24.9%)	2.1
천해양식 어업	1,515 (48.3%)	1,547 (46.8%)	1,668 (50%)	1,872 (57.3%)	2,316 (62.2%)	23.7
원양어업	550 (17.5%)	669 (20.3%)	578 (17.3%)	454 (13.9%)	446 (12%)	-1.8
내수면어 업	25 (0.8%)	30 (0.9%)	33 (1%)	35 (1.1%)	36 (1%)	2.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검색일: 2019.10. 14)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17년에 어업 부문의 성장성 관련 지표는 유동자산 증가율을 제외한 5가지 지표가 양(+)으로 나타난다. 특히 매출액 증가율이 14.26%로 어업관련 기업의 신장세를 나타낸다.

〈표 3-4〉 어업부문 성장성 관련 지표

단위: %

Code No.	내역	2015	2016	2017
501	총자산 증가율	1.29	8.62	7.41
502	유형자산 증가율	5.16	0.24	5.82
503	유동자산 증가율	2.12	21.84	-16.41
504	재고자산 증가율	-9.41	-3.24	9.4
505	자기자본 증가율	1.88	6.54	9.16
506	매출액 증가율	-1.04	6.67	14.26

주: 1)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준수

2) 해수면 및 내수면 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합 결과

자료: 한국은행(2018), p. 303

통계청의 경제총조사(표준산업분류 기준)로 수산물 생산부분의 근로 형태 현황¹¹⁾을 살펴보았다. 85개의 어로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50.0%(3,608명)이 상용근로자이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 41.6%(2,999명), 무급가족 종사자 5.0%(359명), 기타 종사자 3.5%(25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식어업 238개 사업체에 종사하는 2,014명 중 58.7%(1,183명)이 상용근로자이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 11.7%(235명), 기타종사자 29.6%(596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77.7%로 평균치보다 매우 높다. 해면양식어업의 경우 상용근로자 51.8%, 기타 종사자 41.4%이다.

어업관련 서비스업의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 50%, 기타종사자 48.1%로 타 어업분류보다 상용근로자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5〉 2015년 수산물 생산업 종사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어업	어로어업(해면 및 내수면)		85	3,608	2,999	359	250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양식어업	해면양식어업	158	733	97	0	586
		양식어업	내수면 양식어업	36	106	43	0	6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44	344	95	0	4
			어업관련서비스업	66	135	5	0	130

주: 1) 1인 경영체 또는 사업체는 제외

2)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총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검색일: 2019. 10. 3)

11) 통계청의 경제총조사(표준산업분류 기준)는 1인 경영체(사업체)가 제외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함.

통계청의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어로어업과 양식어업 경영형태는 자기어업, 남의 어업, 자기어업과 남의 어업을 동시에 종사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로·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은 90,144명이며, 이 중 어로어업 65,035명(72.1%), 양식어업 25,109명(27.9%)이다.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 중 자기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각 97.6%(63,483명), 95.9%(24,076명)로 대부분이 자기어업을 경영하는 형태이다.

〈표 3-6〉 2015년 어로·양식어업 경영 형태 현황

단위: 명

구분	어업종사 가구원	자기어업에 종사	남의 어업에 종사	자기어업을 하면서 남의 어업에도 종사
어로어업	65,035	63,483	426	1,126
양식어업	25,109	24,076	530	503
총계	90,144	87,559	956	1,629

주: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총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검색일: 2019. 10. 17)

최근 5개년 원양어업 종사 형태는 통계청 원양어업통계조사로 살펴보았다. 2014년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9,253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6,075명까지 하락하였다.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5개년 평균 97.5%이다.

〈표 3-7〉 원양어업 종사 형태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조업기업체 (허가수)	49 (70)	43 (62)	33 (44)	31 (36)	34 (35)
전체 종사자	9,253	8,105	7,014	6,282	6,075
상용근로자	8,862	7,626	6,958	6,262	5,992
임시 및 일용근로자	391	479	56	20	83

주: 원양어업 업체 중 실제 조업하고 있는 업체의 종사 현황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원양어업통계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검색일: 2019. 10. 17)

원양어업의 선원 수도 5개년 연속 하락하였다. 한국인 선원 비중은 2015년 26.5%(1,538명)이었으나, 점차 하락하여 2018년에는 24.3%(1,161명)로 나타났다.

〈표 3-8〉 원양어업 선원 취업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조업기업체 (허가수)	49 (70)	43 (62)	33 (44)	31 (36)	34 (35)
전체 선원	6,523	5,799	5,159	4,783	4,775
한국인 선원	1,616	1,538	1,286	1,189	1,161
외국인 선원	4,907	4,261	3,873	3,594	3,614

주: 원양어업 업체 중 실제 조업하고 있는 업체의 선원 취업 현황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원양어업통계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검색일: 2019. 10. 17)

한국선원통계연보에서 발표한 어선 선원 이직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 동안 선원 취업자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선원 이

직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어선 선원 취업자는 2,307명이었지만 점차 감소하여 2018년 1,889명을 기록하였다. 선원 이직률은 2015년 1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8년 33.1%까지 상승하였다.

〈표 3-9〉 연도별 어선 선원 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전년도말 (A)			금년도말 (B)			금년도 신규 구직등록자 (C)	이직자 (D)	이직율 (%) (E)
	계	취업자	미취 업자	계	취업자	미취 업자			
2014	2,307	2,239	68	2,041	1,923	118	142	408	17.7
2015	2,041	1,923	118	1,938	1,823	115	224	327	16.0
2016	1,938	1,823	115	1,949	1,768	181	385	374	19.3
2017	1,949	1,768	181	1,889	1,802	87	572	632	32.4
2018	1,889	1,802	87	1,857	1,774	83	593	625	33.1

주: 1) 이직자(D)=(A+C)-B

2) 이직율(E)=D/A

3) 연근해어선 선원은 제외

자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2019), p. 301

2) 소금 채취(생산)업¹²⁾

최근 4년(2013년 제외) 평균 천일염 생산량은 318천 톤이며, 2016년 이후 생산량이 조금씩 감축하여 2017년에는 전년대비 4.3% 감소한 309천 톤을 생산했다. 국내 소금시장의 규모는 약 1,648억 원이다. ¹³⁾

2018년 기준으로 천일염 산업에는 1,111개 업체가 있고, 556억 원

12) 목포대학교 고두갑 교수 자문과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2018)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13)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p. 11

을 생산한다. 그리고 정제염 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1개 업체(한주소금) 416억 원을 생산한다. 천일염을 이용한 가공산업은 2016년 기준으로 676억 원(재제염 126억 원, 가공염 362억 원, 태움용염 180억 원, 기타염 8억 원) 규모이다.¹⁴⁾

〈표 3-10〉 천일염 생산량

단위: 천 톤

구분	2013	2014	2015	2016(a)	2017(b)	증감률(%) ((b-a)/a)
생산량	420	309	332	323	309	-4.3

자료: 대한염업조합 통계.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천일염 생산량 관리방안 연구」(2018), p. 13 재인용을 토대로 작성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염전 1,111개소(4,777ha)가 존재하며, 309천 톤(556억 원)의 소금을 생산한다. 전남지역에서 생산하는 소금생산액이 전국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표 3-11〉 2017년 전국 염전 운영 현황

구분	허가업체수 (개소)	허가염전 면적(ha)	가동업체수 (개소)	가동염전 면적(ha)	생산량 (천 톤)	생산액 (억 원)
전국	1,111	4,777	1,062	4,618	309	556
전남	1,029	3,701	982	3,558	281	506
기타	82	1,076	80	1,060	28	50

자료: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소금산업실태조사 결과).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천일염 생산량 관리방안 연구」, 2018, p. 13 재인용을 토대로 작성

소금채취를 하는 사업체 1,058개에 종사하는 2,655명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자영업자가 39.2%(1,04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14)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p. 11

다.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 형태가 33.1%(879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 13.3%(353명), 상용근로자 12.1%(322명), 기타 종사자 2.3%(61명)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표 3-12〉 소금 채취업 종사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 수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소금 채취업	1,058	322	353	1,040	879	61

주: 1인 경영체 또는 사업체는 제외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총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검색일: 2019. 10. 3)

4. 산업 특성¹⁵⁾

1) 수산업의 특성

가. 생산의 불확실성

수산업의 특성 중 하나는 생산성이 노동, 자본 등의 인위적인 노력 보다는 자연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산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자연적 요인이란, 수산자원의 이동성, 풍량과 같은 조업조건, 해류, 조류, 수온 등의 자연적인 조건을 포함한다.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어구, 기자재,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으로 기대되는 산출물간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다.

생산의 불확실성은 경영인이 합리적인 경영관리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부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생산시설 투자(생산관리),

15) 김병호 외(2013), pp. 293~302 바탕으로 작성함.

비용절감 등의 노력과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반적인 상황이다.

나. 생산물의 강부패성

수산물은 어획 또는 수확과 동시에 부패성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품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신속한 운반과 거래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신속한 거래 상대의 발견, 거래 등 거래의 일련 과정에서 어업인의 참여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상품의 가격은 중도매인들 간 경쟁매매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상품 가격결정 과정에 어업인이 참여하고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생산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운반·보관에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하다 보니 높은 마진을 책정한다. 그 결과 어업인들이 최초로 생산물을 판매하는 가격과 최종소비자의 지불가격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 수산자원 및 어장의 공유재산적 성격

수산물 생산부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산자원과 어장은 공유재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어장과 수산자원의 이용에 있어 부담이 적다 보니, 개인이 생산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유인이 약한 편이다. 특히 수산자원은 이동성을 갖고 있어 사유화하기 어려워 경쟁 조업이 발생하고, 구획된 어장 내에서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밀식하는 등의 문제가 초래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수산자원과 어장을 이용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라. 노동 및 자본의 비유동성

수산업에 투입한 노동과 자본은 다른 산업으로 쉽게 전환되어 이용하기 어려운 비유동성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우선 노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촌지역에서 자라서 가족노동 구성원으로 참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산업에 흡수된다. 만약 이들이 10대 중반부터 가족노동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후에 타 업종으로 직업 전환을 희망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 등으로 습득한 교육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어 자유업이나 단순 노무자 정도로만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수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며 습득한 수산업 지식과 기술에 상응한 임금은 단순 노무직보다 높기 때문에 수산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게 된다.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산업에 투입한 자본을 현금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수산업의 자본은 어선, 어업시설, 어업권 등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고, 매각 시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산업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매각자산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마. 공동관리와 임차특징(소금산업)¹⁶⁾

염전의 저수지는 몇 개의 염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영역이지만 어장과 같이 공동체적 성격은 없으며, 7~10명이 공동투자하여 관리한다. 전국에 있는 염전의 61.2%가 임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천일염 주 생산지인 신안군은 59.1%, 기타는 64.3%로 조사된다.

16) 목포대학교 고두갑 교수 자문과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2018)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표 3-13〉 전국 염전의 임차비율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단위: ha, %

지역		가동면적	임차면적	임차비율	비고	
인천	인천	37.7	37.7	100.0	-	
	경기	화성	53.5	46.7	87.3	-
	서산	56.7	31.2	55.0	-	
	태안	373.2	32.0	8.6	두산 100ha 매물	
	보령	7.3	0.0	0.0	-	
	부안	45.0	0.0	0.0	곰소지역	
충남	군산	2.1	0.0	0.0	-	
	고창	192.1	190.9	99.4	(주)삼양사	
	영광	염산	345.0	324.0	93.9	-
		백수	171.5	154.3	90.0	-
목포	22.2	21.2	95.5	-		
무안	83.5	76.1	91.1	-		
해남	32.9	3.6	10.9	철임배추용		
완도, 진도, 보성, 순천	8.2	3.0	36.6	-		
전남	신안	도초	242.5	123.3	50.8	-
		비금	414.9	202.1	48.7	-
		신의	495.5	178.8	36.1	-
		하의	126.2	58.1	46.0	-
		지도	271.8	213.1	78.4	-
	임자	149.4	110.6	74.0	-	
	증도	250.9	239.1	95.3	태평염전	
	장산	17.3	9.5	54.9	-	
	안좌, 팔금, 암태, 자은	114.7	93.9	81.9	-	
	압해	71.6	44.9	62.7	-	
총 계		3,585.7	2,194.1	61.2	-	
기 타		1,430.9	920.7	64.3	-	
신 안		2,154.8	1,273.4	59.1	-	

자료: 염전원부기공, 2018. 12. 목포대학교 신학협력단 「천일염 생산량 관리방안 연구」, 2018, p. 12 재인용

2) 어업노동의 특성¹⁷⁾

어업노동의 특성은 상기한 어업의 특성 때문에 노동의 까다로움(Difficult), 위험(Dangerous), 불결한 노동환경(Dirty), 격리(Distance)의 소위 '4D'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노동의 까다로움(Difficult)은 어업이 자연조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예측불가능하게 된다. 대부분의 노동이 규칙적이고 근로시간이 정해진 데 비하여 어업노동은 노동시간이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없다. 또한 노동시간의 투입만큼 바로 산출이 되지 않는다. 산출은 노동의 투입에도 의존하지만 자연 조건에도 많이 의존된다.

어업노동의 위험(Dangerous)과 관련해서는 노동이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위험할 뿐 만 아니라, 급작스러운 해상 조건의 변화에 의해 극한상황에서도 조업을 해야 할 때가 있게 된다.

불결한 노동환경(Dirty)은 작업의 공간적 제약과 관계되어 있다. 어업노동현장은 육지와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어선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어선원의 의식주 및 복지보다는 어구나 어획물 적재를 위한 공간으로 우선 사용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어선 내의 정주여건은 열악하게 되고 항차가 긴 어업일수록 더욱 심해지게 된다.

노동현장의 격리(Distance)는 가정과 노동공간의 격리이다. 이러한 격리는 시간적 공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가 가정과 근로공간을 출퇴근을 하는 데 비해 어업노동은 노동시간이 정해

17) 최정윤(2008), pp. 221~245 바탕으로 작성함.

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가정과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어업노동의 4D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어업의 임금은 다른 노동시장의 임금결정과 다른 방식으로 결정된다. 어업의 노동은 출항에서 귀항까지 조업시간과 비조업시간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 이는 어업의 고유한 임금체계인 소위 짓가림제 등이 도입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제2절 노동시장 구조 및 특성 분석

1. 노동시장 현황

수산물 생산업 종사자 수는 2017년 기준(사례수 47,049개)으로 477,382명이다. 수산물 생산업의 종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식어업으로 약 77.8%이며, 그 다음으로 어로어업 21.5%, 소금 채취업 0.6%, 어업관련 서비스업 0.1% 순으로 높다.

수산물 생산업의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임시 및 일용 근로자 72.6%, 상용근로자 13%, 대표자 9.9%, 무급 가족 종사자 3.2%, 기타 종사자 1.2% 순으로 높다.

어로어업에서는 상용근로자 비율(32.5%)이 가장 높고, 양식어업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86.4%), 어업관련 서비스업은 상용근로자(73.0%), 소금 채취업은 대표자(38.4%) 형태의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4〉 2017년 수산물 생산업 업종별 종사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례수	대표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합계
수산물 생산업	47,049	47,474 (9.9)	62,222 (13)	346,693 (72.6)	15,457 (3.2)	5,536 (1.2)	477,382 (100)
어로어업	31,838	32,090 (31.2)	33,409 (32.5)	25,091 (24.4)	9,152 (8.9)	2,951 (2.9)	102,693 (100)
양식어업	14,056	14,229 (3.8)	28,176 (7.6)	321,127 (86.4)	5,410 (1.5)	2,525 (0.7)	371,467 (100)
어업관련 서비스업	77	77 (18.4)	305 (73)	18 (4.3)	0	18 (4.3)	418 (100)
소금 채취업	1,078	1,078 (38.4)	332 (11.8)	457 (16.3)	895 (31.9)	42 (1.5)	2,804 (1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검색일: 2019. 10. 29)

수산물 생산업의 연령을 보면 50대가 3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가 6%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업종별로 연령별 종사자 분포가 상이하다. 50대 비중이 가장 많은 업종은 어로어업(37.2%)과 소금 채취업(39.8%)이다. 그리고 40대 비중이 높은 업종은 양식어업(38.6%)과 어업관련 서비스업(40.9%)이다.

다음으로 수산물 생산업의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능직이 74.9%로 가장 비중이 높고, 사무직 17.5%, 기술직 7.2%, 연구직 0.5% 순으로 나타났다. 어로어업, 양식어업, 소금 채취업은 기능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어업관련 서비스업은 사무직 비중이 가장 높다.

〈표 3-15〉 2017년 수산업 업종별 종사자 현황(연령별)

단위: %

구분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수산물 생산업	6	19	29.6	33.8	11.6
어로어업	6.6	13.6	21.8	37.2	20.8
양식어업	5	25.5	38.6	30	0.8
어업관련 서비스업	24.1	26.5	40.9	7.7	0.9
소금 채취업	0.7	9.4	36.5	39.8	13.6

주: 사례수는 수산물 생산업 업종별 종사자 현황과 동일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검색일: 2019. 10. 29)

〈표 3-16〉 2017년 해양수산분야 종사자 현황(직종별)

단위: %

구분	직종			
	연구	기술	사무	기능
수산물 생산업	0.5	7.2	17.5	74.9
어로어업	0.5	8	13.9	77.6
양식어업	0.6	5.9	21.1	72.3
어업관련 서비스업	0	14.8	62	23.2
소금 채취업	0	16.7	22.4	60.9

주: 사례수는 수산물 생산업 업종별 종사자 현황과 동일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검색일: 2019. 10. 29)

수산물 생산업 종사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310,061명(65%), 여성은 167,321명(35%)이다. 수산물 생산업 중 여성이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양식어업(41.2%), 소금 채취업(31.6%), 어업관련 서비스업(19.1%), 어로어업(12.9%)이다.

수산물 생산업의 종사자 중 한국인은 87.4%, 외국인은 12.6%이다.

외국인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어로어업(13.6%), 양식어업(12.4%), 소금 채취업(1.6%), 어업관련 서비스업(0.2%) 순이다.

수산물 생산업의 업종별 연간급여를 살펴보면, 어로어업이 7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양식어업 23.3%, 소금 채취업 1.9%, 어업관련 서비스업 0.5% 순으로 나타난다.

〈표 3-17〉 2017년 해양수산업 종사자 현황(성별 및 국적별)

단위: 명

구분	성별		국적별	
	남성	여성	한국인	외국인
수산물 생산업	310,061	167,321	417,229	60,153
어로어업	89,404	13,290	88,685	14,009
양식어업	218,403	153,064	325,369	46,098
어업관련 서비스업	338	80	417	1
소금 채취업	1,916	887	2,758	45

주: 사례수는 수산물 생산업 업종별 종사자 현황과 동일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검색일: 2019. 10. 29)

〈표 3-18〉 2017년 수산물 생산업 업종별 급여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연간급여	비중
수산물 생산업	22,140	100
어로어업	16,446	74.3
양식어업	5,162	23.3
어업관련 서비스업	102	0.5
소금 채취업	429	1.9

주: 사례수는 수산물 생산업 업종별 종사자 현황과 동일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검색일: 2019. 10. 29)

2. 임금 제도

「선원법」 제2조는 선원임금을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 월고정급, 생산수당, 비율급 5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한다.¹⁸⁾ 11항 통상임금이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의미한다. 12항 승선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13항은 월고정급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4항 생산수당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고정급 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획금액이나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5항 비율급(比率給)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연안어업의 경우, 규모와 조건에 따라 노동 특성과 임금제도가 상이하다.¹⁹⁾

전통적으로 어업에서는 수익분배제²⁰⁾ 또는 짓가림제(일본식으로

18) 선원임금의 법적 특성은 「선원법」 제57조와 제59조에서 찾을 수 있음. 「선원법」 제57조에서는 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르면 어선원의 임금은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으며, 비율급으로 인해 어선원 임금은 특성을 가짐.

19) 연안어업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연안어업은 규모와 조건이 다양해 노동구조와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함. 그리고 업종별 특성과 어획고가 상이하다보니 임금구조와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함. 예를 들어, 어획고가 좋지 않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선호하며, 최저임금의 기준도 다를 수 있음.

20) 어획고에서 어로경비를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선주와 선원이 정해진 규칙(짓)으로 분배함 (김병호 외(2013), p. 381).

보합제)를 취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비율급제 성격을 가진다. 어선어업에 비율급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임금체계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비율급제를 운영하는 방법은 어획대상물, 업종별, 해역별로 상이하다. 해양수산부장관 허가어업 14개와 정치망어업(면허어업)에서 지급하는 임금제도는 업종별,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업종에서 취하는 임금제도는 고정급병용짓가림제이며, 총 10개 업종에서 고정급과 비율급제(짓가림제)를 혼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금제도는 업종별 경영상황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는데, 한 예로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업계는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어로경비 부담을 선원과 선주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해 비율급제로 전환하였다. 공동경비 부담은 조업비용 절약과 효율적인 조업활동을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이러한 의미에서 어선수리비 등도 공동경비에 포함하였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 결과 2014년까지 유지한 월 고정급 및 생산 장려금제를 2015년부터 「선원법」 제56조에 근거한 비율급제로 전환하였다.

〈표 3-19〉 우리나라 업종별 임금제도 현황

지급형태		어업
고정급제	월급제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울산, 부산) 근해안강망어업(인천, 서산, 목포, 여수) 근해자망어업(신안, 울산) 정치망어업(강원 고성, 삼척, 양양, 포항, 경남 고성, 남해군)
	일급제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여수)
짓가림제	순수 짓가림제	잠수기어업(여수, 통영)
	최저임금제 실시	근해채낚기어업(강원 고성, 강릉, 강구, 구룡포, 울릉, 죽변, 포항) 근해자망어업(여수, 구룡포, 울산, 추자도) 근해연승어업
고정급비용 짓가림제	고정급가산 생산수당제	대형선망어업
	고정급비용 짓가림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여수)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통발어업(속초, 죽변, 후포, 남해군) 근해안강망어업(인천, 보령, 군산) 근해채낚기어업(동해, 속초, 영덕) 근해자망어업(인천, 강구)

주: 1) 외국인 선원은 고정급제(월급제)

2) 근해안강망어업(인천, 목포, 여수), 근해자망어업(울산)의 경우 선장은 짓가림제, 기타선원은 고정급제

3) 근해유망어업(목포, 여수)의 경우 선장, 기관장은 짓가림제, 기타선원은 고정급비용짓가림제

4) 잠수기어업(거제)의 경우 어로장은 짓가림제, 기타선원은 고정급비용짓가림제

자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017), p. 100

그리고 15개 업종의 임금지급 결정방법은 단체협약 또는 개별협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체협약은 각 선주협회와 해상노조가 체결하는 것이고, 개별협약은 선주 대 선원이 체결하는 것이다. 임금지급

결정방법 또한 업종과 지역별로 상이한 것을 <표 3-20>을 통해 알 수 있다.

선원노조의 임금협상력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현장조사를 통해 출항에 필요한 선원이 많고, 한국인 선원비율이 높은 업종에서는 선원노조의 임금협상력이 높은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는 선원이 단체행동을 할 시,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경영안정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는 이유로 판단된다.

<표 3-20> 임금지급 결정방법

구분	어업	비고
단체협약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선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근해통발어업(후포, 통영, 남해) 근해안강망어업(군산, 목포) 근해채낚기어업(동해, 강릉, 구룡포, 영덕) 근해자망어업(여수, 구룡포, 추자도) 근해연승어업(성산포) 정치망어업(여수)	각 선주협회 대 해상노조
개별협약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통발어업(속초) 잠수기어업 근해안강망어업(인천, 보령, 서산, 여수) 근해채낚기어업(강원 고성, 속초, 강구, 울릉, 죽변, 포항) 근해자망어업(인천, 신안, 강구, 울산) 근해연승어업(통영, 서귀포, 제주, 한림, 모슬포) 정치망어업(강원 고성, 삼척, 양양, 포항, 경남 고성, 남해)	선주 대 선원

자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017), p. 99

해양수산부의 근해어업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내국인 선원 임금은 2012~2017년 동안 연평균 4.3%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38,441천 원) 대비 6.3% 증가한 40,848천 원이다. 외국인 선원의 임금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19,333천 원) 대비 5.1% 상승한 20,315천 원이다. 해양수산부 근해어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내국인 선원 임금지급 방식은 짓가림제가 51.6%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고정과 짓가림제 혼합 형태(27.8%), 고정급(20.1%), 기타(0.5%) 순이다. 외국인 선원 임금지급 방식의 경우, 고정급이 92.8%로 가장 많이 취하는 임금지급 형태이며, 다음으로 고정과 짓가림제 혼합 형태(5.1%), 짓가림제(2.1%) 순으로 높다²¹⁾.

〈표 3-21〉 근해어업 연평균 선원임금

연도	내국인		외국인	
	임금(천 원)	전년대비 증감률(%)	임금(천 원)	전년대비 증감률(%)
2012	33,079		-	
2013	32,984	-0.3	17,679	
2014	35,889	8.8	18,300	3.5
2015	38,809	8.1	18,560	1.4
2016	38,441	-0.9	19,333	4.2
2017	40,848	6.3	20,315	5.1

자료: 해양수산부, 『근해어업 실태조사』,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

원양어업의 임금제는 짓가림제, 생산수당제, 월급제로 구분한다. 주로 일정 수익을 직급별 정해진 비율로 분배하는 짓가림제를 채택하

21) 해양수산부, 2018년 근해어업실태조사, 2018, p.27.

지만, 원양업계에서도 대상 어획물, 업종에 따라 임금제가 다양하였다. 어획고가 높고, 수산물의 가치가 높거나 어획고 상태가 좋은 업종에서는 짓가림제로 운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최근 짓가림제를 없애고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생산수당제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3. 노동시장 특성²²⁾

1) 어로어업

가. 생산의 불확실성

수산업의 대표적인 특성인 생산의 불확실성이 업체의 채용 의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양수산분야 업체는 ‘채용규모 확대 시 매출 증가 등 업황 호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에 67.7점인 반면, 수산물 생산업에서는 이보다 약 10점 높은 76.8점이다. 특히, 어로어업의 채용확대 의사는 ‘업황 호조에 영향력을 받는다’에 77.1점으로, 업체의 채용의사와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생산의 불확실성은 선원 임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황이 양호할 때는 비율급제로 인해 선주와 선원이 만족하는 소득을 창출지만, 어획고 상태에 따라 선원의 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현장 조사로 확인되었다.

22) 노동시장 특성은 각 산업의 관련 노동연맹, 협회, 학계 등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조사(조사 기간: 2019. 6~2019. 11), 문헌조사, 서면자문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표 3-22〉 수산물 생산업의 채용규모 확대 시 요인 영향력

단위: 개, 점

구분	사업체수	직원 퇴사/휴직등 빈자리 충원	우수인력 확보차원의 채용규모 확대	신규사업 진출 등 사업 확장	매출 증가 등 업황 호조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 정책
전체	21,254	27.4	20.2	20.4	67.7	16.1
수산물 생산업	13,485	6.9	5.3	5.1	76.8	6.9
어로어업	13,315	6.3	4.2	4.2	77.1	6.3
양식어업	170	50.0	87.5	75.0	50.0	50.0
어업관련 서비스업	0	0.0	0.0	0.0	0.0	0.0
소금 채취업	0	0.0	0.0	0.0	0.0	0.0

자료: 박광서 외, 「해양수산 고용현황 분석 및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2019, p. 93 바탕으로 재작성

나. 노동시간의 불명확성

어로어업 종사자의 근로활동은 일반적으로 출항 준비, 어군 탐색, 어획 활동, 귀항 후 어획물 운반 및 처리로 간주한다. 선원의 근로시간은 육상근로자와 달리 어군 탐색시간 등의 대기시간이 존재해 실제 노동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 예로, 어느 근해어업에서는 선주가 인지하는 노동시간은 출항부터 정산금(철망 및 청소, 판매 후 일주일 경과한 시점)을 지급하는 순간 노동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원양어업 업계에서는 어로기간(6~18개월)에 맞춰 고용계약을 하고, 조업준비부터 하역단계까지를 노동시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 선장을 중심으로 한 단체 채용

전문가 면담조사에 따르면 어로장의 노하우와 지혜, 어선원의 성실성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업무를 매뉴얼화시키기 어렵고, 고용주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선원의 업무를 평가하기 힘들다. 그

령기 때문에 전주(고용주)는 선원 모집 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나 인력소개 업체를 통하기보다는 어로장이나 선장의 소개로 인력을 채용한다.²³⁾ 이러한 특성으로 선원 노동시장은 전국적인 규모로 형성되지 않으며, 어로장과 선장 중심으로 형성한 단체로 채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원양업계에서는 자국과 본국에서 기초 교육을 받은 외국인 선원을 채용한다. 승선 전에는 송출국가에서 안전교육을 받으며, 승선 후에는 선내 사고(안전, 화재) 대비 교육, 어로 교육 등을 받는다. 외국인 선원의 승선율은 70~80% 이상으로 높고 이탈률이 낮는데, 그 이유는 발급받는 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연근해어업 취업 시 요구하는 E10 비자는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만, 외항상선과 원양어선에 필요한 C3 비자는 체류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하루 만에 배를 타고 바로 자국으로 귀국하여 이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라. 수노동 체계로 기계화의 어려움²⁴⁾

어업 노동은 수노동체계로 이루어지므로 매뉴얼화하기 어렵고, 따라서 기계화·자동화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됨은 물론, 분업체제 구축을 통해 개개 어선원의 작업 내용을 단순화하는 일도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어장, 대상 어종, 어획시기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어획방법이나 작업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업이라 하더라도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따라서

23) 원양어업은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구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양업체가 자체적으로 출항 인력을 구성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선장이 주축이 되어 출항팀을 구성함.

24) 최정윤(2008), pp. 208~245 바탕으로 작성.

어장이나 대상어종이 거의 일정하므로, 기계화·자동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개개 어선원들의 작업 내용도 단순화되어, 어업경영에 있어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생산방식의 변화를 자본제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어업에 있어서는 개개 어선원이 작업에 숙련되기까지 그다지 많은 시간이 요하지 않으며, 특별한 자질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므로, 노동력을 조달하기 위한 시장은 지역적 한계를 거의 가지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일반 어선원의 절대다수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그 단적인 결과이다.

근해어업의 경우는 본래 조업구역이 전국에 걸쳐 있으므로 어장 조건이 업종별로 거의 일정하다고 할 수 있고, 대상 어종도 비교적 단순할 뿐 아니라, 주년조업체제이므로 어획시기도 그다지 변화가 크지 않다.

그러나 업종별로 본다면, 주된 어장에 지역적 차이가 있고, 선적항이나 양륙항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자본제화가 진전되지 못한 채 수노동체제하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의 조달은 선적항이나 양륙항의 인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최근에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연안어업의 경우에는 연간 조업일수가 적고, 조업이 매우 불규칙적이며, 또한 여러 어종을 대상으로 다양한 어구어법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오랜 기간의 경험과 숙련이 어업노동에 필수적 조건이 되었다.

한편, 어획활동이 겸업에 제약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며,

시기적으로도 매우 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단기적인 어획 변동이 크기 때문에 타인노동을 고용할 수 있는 경영 조건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족노동(자가노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가피하게 고용노동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혈연이나 지연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마. 어업의 노사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²⁵⁾

어업노동은 기상적 요인에 따른 자연적 중단이나 어선 및 물적 수단의 문제로 인한 인위적 중단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이유로 어기 중에 출항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어업노동이 중단되는 기간을 비노동 기간이라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기간을 비노동 기간이라고 한다면, 어선원의 관점에서는 단기적이고 불확실하게 초래되는 이 기간 동안 취업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며, 이에 따른 고용 불안정은 노사 모두에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어업에 나타나는 독특한 문제인 만큼 노사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각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현장조사를 통해 어로어업은 제한적인 인력풀, 부진한 어획고, 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정감 등의 애로사항을 발견하였다. 어획고가 점차 낮아져 조업기간 단축과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업무 강도와 작업조건은 변함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역특례 확대, 임금상승, 선원복지 방안 마련 등이

25) 최정윤, 수산경영학(2008), pp. 208~245 및 현장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

제시되었다. 그리고 임금 부분은 기본 월급을 보장하는 임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장기근속 계약이 논의되고 있었다.

바. 정부 노동정책 영향력

선원의 임금은 「선원법」 테두리에서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체결되기 때문에,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조업을 위해 필요한 필수 인력과 어선 척당 승선 인원은 고정되고, 육상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상승은 어선어업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어선어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리고 일부 수산업계와 단체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적용과 ILO 어선원 노동협약, STCW-F 협약 등 국제규범 비준 등을 대비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었다. 현재 외국인 선원 인력은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확보하며, 관리 차원에서 지출하는 연간 수수료는 1인당 36만 원이다. 외국인 선원 1인당 연간 관리비, 조업 휴식기 동안 지출하는 숙박비, 식비, 외국인 국내 체류 연장을 위한 법무부 승인 수수료 등을 모두 고려하면 국내 선원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 임금 상승은 한국인 선원부터 임원까지 연쇄적으로 임금상승과 보험료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였다.

2) 양식업

가. 인력수요의 계절성

양식어업 노동시장의 특징은 종자 입식, 출하 등 특정 시점에 인력

을 많이 필요로 하여 상시 인력과 임시·일용직을 투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는 양식 품종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굴 양식장은 종패 입식, 수확, 어장관리 등 일시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 일용직을 고용하고, 평소 어장 운영은 1인 체제로 유지된다. 경남에 위치한 한 어류 가두리 양식업체는 상시근로자를 두고, 입식·출하시기에 양어장 간 협업을 하거나 일용직을 이용한다.

나. 인력 확보 경로와 임금

양식장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양식산업 성격(지역기반 산업), 내외국인 근로자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다.

굴 양식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시기에 지역 주민 또는 소개를 통해 임시직을 고용하며, 1인당 일당 12만 원(남자) 또는 10만 원(여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류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시기(입식, 출하시기)에 동종 업계 간 협업이나 소개를 통한 일용직을 고용하여 인력을 확보한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인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력관리공단을 통해 소개받고,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고용한다. 임금 수준은 경력이 없는 고등학교 학력의 한국인을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지급과 숙식을 제공하는 수준이며, 연차에 따라 월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 정부 노동정책 영향력

굴 양식장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당 상승,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건비 차등 등의 요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양식장의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을 실제로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임금을 계약했기 때문에,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고 국내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할 경우 업체의 경영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3) 소금 채취(생산)업

가. 노동관련 통계자료 부재

천일염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 매우 어려워 현장 조사를 통한 추정치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ha당 3명이 소요되나 일반적으로 부부 중심의 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명을 고용하는 형태이다. 전국 천일염전의 가동면적 3,585ha을 고려하면, 약 900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 임금과 임금수준

염전을 임차하는 경우에 생산물 분배방식을 보면 생산량 할당제(일명 와리제로 불림)로 임금을 지급한다. 염전의 80.9%가 생산량 할당제로 취하고, 19.1%가 도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 생산량 할당제의 경우 생산물 분배비율을 보면 생산허가권자(염전소유주) 대 생산자(임차인) 비율이 5:5(55.1%), 4:6(8.4%), 3:7(7.9%), 기타(7.9%)이다.

염전 근로 희망자는 대부분 직업소개소에 20~30만 원을 주고 염전

업체를 소개받고 있으며, 염전에 오기 전 선대(선금)라는 형태로 200~300만 원을 받고 염전에 취업한다. 이전처럼 강제적인 방법으로 취업시키는 사례는 이제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급료는 최저 임금(약 175만 원)을 통장을 통해서 지불한다. 월급을 175만 원 정도 받으나, 약 15~20만 원은 생활비(전기세, 쌀, 김치 등)로 지불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150만 원 수준이다.

다. 불규칙한 노동시간과 노동형태

염전 노동의 시간은 불규칙하며, 이른 아침이나 서늘한 오후, 초저녁에 노동이 이뤄진다. 노동의 형태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염전에서는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노동자의 100%가 한국인이다.

라. 노동자 특징

염전 노동자의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60대에 걸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일용직 형태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는 없다.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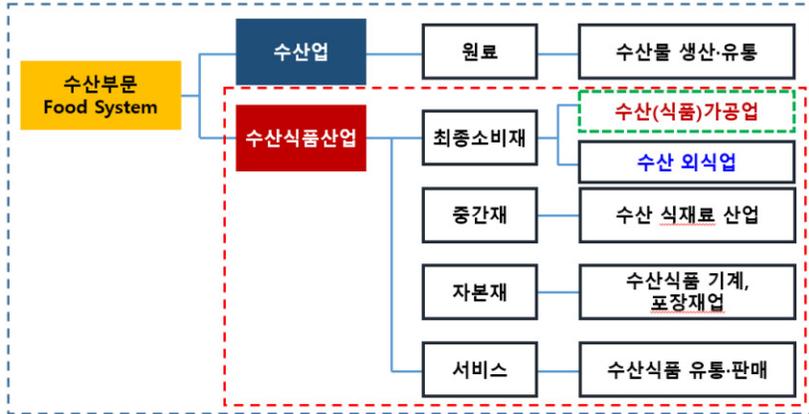
수산물 가공업 노동시장 분석

제1절 산업 개요

1. 산업 정의

수산분야는 크게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산물 가공업은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산업으로서 수산식품산업의 범주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수산식품산업은 수산물 가공업 외에도 수산외식업, 수산식재료 산업, 수산물 유통·판매업, 수산물 가공기계·포장업까지 폭넓게 포함할 수 있는데, 협의의 관점에서 수산물 가공업은 수산식품산업을 통칭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그림 4-1〉 수산업의 범위



자료: 이현동 외(2017), p. 4

‘수산물 가공업’의 법적 정의는 「수산업법」 제2조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수산물 가공업을 통해 만들어진 ‘수산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보존 또는 가치 증대를 위하여 육상 또는 선상에서 어획물 또는 양식 수확물을 가공한 제품’을 의미한다.

수산물 가공업은 전통적으로 ① 국민에게 식품(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② 편의성 등 소비자의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으며, ③ 대부분 지역산업으로서 고용창출 등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²⁶⁾

26) 정명생·임경희(2002), pp. 19~23.

2. 산업 분류

수산물 가공업은 가공정도에 따라 단순가공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고차가공품은 「식품위생법」에서 업종을 분류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신고업종으로 가공 장소 혹은 원료나 가공품의 종류에 따라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수산물 가공업, 수산피혁 가공업, 해조류 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가공업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6조 2항에 따라 아래 <표 4-1>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단,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4-1> 수산물 가공업 신고 업종 분류 및 정의

구분		업종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 6	신고업종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수산물 가공업, 수산피혁 가공업, 해조류 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2	신고업종	통조림, 어육가공품, 젓갈류, 조림식품, 건제품, 조미가공품, 기타가공업

자료: 통계청(2017a), p. 6

〈표 4-2〉 「식품산업진흥법」상의 업종별 정의

분류	정의
어유(간유)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냉동·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단, 연육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또는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는 제외)
선상수산물 가공업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수산피혁 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해조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호료(糊料)용·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자료: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 6

두 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업의 제품은 가공방법과 원료에 따라 건제품, 염장품, 염신품, 통조림품, 냉동품, 해조제품, 한천, 연제품, 조미가공품, 어간유·어유, 어분·어비, 수산피혁품 등으로 구분한다. 통계청의 ‘수산물가공업통계’는 수산가공품의 분류를 기초로 하여 생산량과 생산금액 등 기초적인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표 4-3〉 수산가공품의 제품 분류별 정의 및 종류

분류	정의 및 종류
건제품	어패류 또는 처리가공, 건조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것 - 소건품: 생것을 그냥 또는 수세 후 패류는 탈각 후 건조시킨 것(해조류 건조품은 제외) - 염건품: 소금물에 적시거나 소금을 뿌린 후 건조시킨 것 - 자건품: 찌거나 삶은 후 건조시킨 것(자숙, 압착, 탈지 후 건조하여 원형을 보존하는 것 포함)

분류	정의 및 종류
염장품	수산동식물을 식염에 절여 부패되지 않도록 한 제품
염신품	어패류에 식염을 가하여 숙성 발효시킨 젓갈, 식염과 조미료 등을 가하여 숙성 발효시키거나 조미한 조미(양념) 젓갈, 식염과 익힌 곡류 및 조미료 등을 가하여 숙성 발효시킨 생선식혜 및 젓갈을 여과한 액젓(액상젓갈) 등의 제품
통조림품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조리한 후 관 또는 병 등에 살재임, 탈기, 밀봉, 가열살균, 냉각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제품
냉동품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원형, 처리 또는 가공하여 동결시킨 제품 - 원형동결품: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전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동결시킨 제품 - 처리동결품: 수산동식물을 수세, 처리, 선별, 칭량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보통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포장, 동결한 냉동품
해조제품	해조류 중에 이물질을 제거, 정선하고 수분을 감소시킨 제품
한천	홍조류 중의 한천성분(다당류)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추출, 응고, 건조시켜 만든 제품
연제품	어육에 소량의 소금 및 부재료를 넣고 갈아서 고기품을 만든 다음 이것을 가열, 응고시켜 만든 탄력성 있는 겔(gel) 상태의 가공제품
조미가공품	조미료를 첨가하여 조림, 건조 또는 구워서 만든 제품 및 패류 자숙 시 유출되는 액의 유효성분을 농축하여 만든 간장류(주스류) 등의 제품(단, 식염을 첨가 또는 식염수에 단순히 침지하여 만든 제품은 조미가공품으로 취급하지 않음)
어간유·어유	어간유는 수산동물의 간장에서 추출한 유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농축한 것으로서 비타민 A를 함유한 것을 말하며, 어유는 수산동물에서 추출한 유
어분·어비	어분은 어류 및 기타 수산동물을 자숙, 압착, 건조하여 분쇄한 것 또는 소건하여 분쇄한 것을 말하고, 어비는 어류 및 기타 수산동물을 자숙, 압착, 건조하되 분쇄하지 않은 것
수산피혁품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가죽제품

자료: 통계청(2017a), p. 4~5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또한 ‘수산물가공업통계’에서 집계하는 수산가공품의 품목별 생산량 항목 분류체계는 아래 <표 4-4>와 같다.

〈표 4-4〉 수산가공품 품목별 생산량 항목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부항목
연 근 해 산	냉동품 (원형동결)	오징어, 명태, 가자미, 고등어, 대구, 조기, 꽁치, 갈치, 전갱이, 새우, 삼치, 정어리, 병어, 복어, 부세, 낙지, 꽃게, 기타
	냉동품 (처리동결)	갑오징어, 새우, 봉장어, 명태, 연육, 새조개, 굴, 바지락, 홍합, 기타
	통조림품	꽁치, 고등어, 굴, 골뱅이, 홍합, 바지락, 참치, 기타
	연제품	맛살, 어육소세지, 튀김어묵, 찐어묵, 구운어묵, 기타
	소건품	오징어, 명태, 새우, 실치, 조개류, 기타
	염건품	조기류, 기타
	자건품	굴, 멸치, 새우, 홍합, 기타
	해조제품	마른김, 건미역, 염장미역, 다시마, 톳, 해조류, 염장 다시마, 기타
	한천	실한천, 가루한천, 기타
	조미가공품	조미김, 조미오징어, 조미취치포, 조미명태포, 기타
	어유분	오징어유, 기타어간유, 어분어비
	염장품	고등어, 기타
	염신품	멸치젓, 새우젓, 오징어젓, 조개젓, 굴(어리굴젓), 성게젓, 명란젓, 창란젓, 황석어젓, 기타
	수산피혁	-
기타가공품	-	
원양산	냉동품 (원형동결)	명태, 참치류, 오징어, 갈치, 꽁치, 새우, 기타

자료: 통계청(2017a), p. 5

이 외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²⁷⁾를 살펴보면, ‘수산업’을 하나의 산업(대분류)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세분류상 생산부분은 농림어업(A)에, 가공업은 제조업(C)에, 유통업은 도매 및 소매업(G)에 포함되어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업종 중 10개 항목에 해당되고 있다. (아래 <표 4-5> 참고)

〈표 4-5〉 표준산업분류상의 수산물 가공업 분류 비교

해양수산업특수분류(2018, 세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50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50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50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5014	수산동물 기타 가공 및 처리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5015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5020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5030	소금 가공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5090	기타 수산물 가공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자료: 통계청, 「해양수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p. 4. (검색일: 2019. 10. 1.)

27)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산업관련 통계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통계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산업 분류 체계임. 1964년에 최초 제정된 이후, 국내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10차까지 개정됨(한광석·이헌동(2014), p. 8).

3. 산업 현황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18% 감소한 129만 톤 가량이며, 생산액은 약 0.8% 감소한 5.9조 원이다. 수산식품산업은 소비량 자체로 보았을 때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산물 가공업은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하향곡면을 보이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표 4-6〉 전체 수산가공품 생산량 및 생산금액

단위: 천 톤, 십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a)	2017(b)	증감률 (b/a)
수량	1,297	1,682	1,282	1,574	1,291	△18.0%
금액	6,132	6,274	6,139	5,962	5,916	△0.8%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수산물가공업통계」 바탕으로 저자 가공(검색일: 2019. 8. 8)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생산량 증가를 보인 대표 품목은 자건품(92.7%), 조미가공품(58.5%), 한천(43.2%) 등이며, 생산금액에서 증가세를 보인 품목은 자건품(153.1%), 조미가공품(107.4%), 한천(39.9%), 냉동품 처리동결(15.9%) 등이다.

반면에 생산량 감소세를 보인 대표적인 품목은 염신품(72.3%), 어유분(59.1%), 통조림품(48.9%), 염장품(40.8%), 염건품(27.7%), 연제품(25%) 등이며, 생산금액에서 감소세를 보인 품목은 염장품(41.3%), 통조림품(33.9%), 해조제품(25.9%) 등이다.

〈표 4-7〉 수산가공품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단위: 톤, 백만 원

구분	수량 및 금액	2016(a)	2017(b)	증감률 (b/a)
냉동품 (원형동결)	수량	1,574,950.8	1,291,639.055	△18.0%
	금액	5,962,882.8	5,916,672.342	△0.8%
냉동품 (처리동결)	수량	587,671.5	495,541.166	△15.7%
	금액	1,622,945.4	1,880,736.274	15.9%
통조림품	수량	188,288.3	96,134.375	△48.9%
	금액	1,068,851.6	706,154.63	△33.9%
연제품	수량	96,832.2	72,601.295	△25.0%
	금액	324,475.5	298,498.896	△8.0%
소건품	수량	119,574.7	125,845.081	5.2%
	금액	354,202.2	391,037.78	10.4%
염건품	수량	21,491.8	15,542.426	△27.7%
	금액	160,471.5	148,638.577	△7.4%
자건품	수량	1,125.0	2,167.792	92.7%
	금액	12,344.7	31,238.705	153.1%
해조제품	수량	5,329.9	4,495.161	△15.7%
	금액	31,609.9	23,434.644	△25.9%
한천	수량	184,419.1	264,035.215	43.2%
	금액	607,027.5	849,528.251	39.9%
조미가공품	수량	157.1	249.082	58.5%
	금액	4,384.9	9,092.28	107.4%
어유분	수량	202,624.5	82,820.924	△59.1%
	금액	984,443.8	1,037,547.156	5.4%
염장품	수량	29,216.7	17,286.707	△40.8%
	금액	39,573.4	23,237.28	△41.3%
염신품	수량	55,431.1	15,347.491	△72.3%
	금액	49,812.2	55,073.882	10.6%
수산피혁품	수량	44,337.8	63,262.087	42.7%
	금액	176,396.9	227,851.603	29.2%
기타	수량	0.2	8.662	4,388.1%
	금액	2.4	401	16,525.2%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수산물가공업통계」 바탕으로 저자 가공(검색일: 2019. 8. 8)

‘수산물가공업통계’상, 2018년을 기준으로 수산물 가공업체는 총 5,003개 사가 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냉동품(41.7%), 해조제품(11.7%), 조미가공품(11.4%), 염신품(10.5%) 사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체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제품별 사업체 수 비중은 거의 유사하나 전체 사업체 수는 5,358개사에서 5,003개사로 감소하여 지속적인 산업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4-8〉 수산가공품별 업체 수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사업체 수(개소)	비중 (%)	사업체 수(개소)	비중 (%)	사업체 수(개소)	비중 (%)
냉동품(원형동결)	1,790	33.4	1,747	33.0	1,620	32.4
냉동품(처리동결)	541	10.1	527	9.9	466	9.3
통조림품	53	1.0	54	1.0	41	0.8
연제품	99	1.8	91	1.7	96	1.9
소건품	317	5.9	322	6.1	312	6.2
염건품	26	0.5	232	4.4	215	4.3
자건품	66	1.2	96	1.8	84	1.7
해조제품	529	9.9	622	11.7	585	11.7
한천	4	0.1	3	0.1	3	0.1
조미가공품	522	9.7	603	11.4	569	11.4
어유분	25	0.5	16	0.3	18	0.4
염장품	123	2.3	103	1.9	75	1.5
염신품	425	7.9	475	9.0	523	10.5
수산피혁품	1	0.0	1	0.0	-	-
기타	837	15.6	406	7.7	396	7.9
합계	5,358	100.0	5,298	100.0	5,003	10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수산물가공업통계」 바탕으로 저자 가공(검색일: 2019. 10. 17)

수산물 가공업의 종사자 수는 약 7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종사자 수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 7.8만 명 대비 2018년 7.3만 명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4-9〉 수산가공품업 종사자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종사자 수(명)	비중 (%)	종사자 수(명)	비중 (%)	종사자 수(명)	비중 (%)
냉동품(원형동결)	25,901	33.0	22,208	28.9	19,843	27.1
냉동품(처리동결)	9,970	12.7	10,050	13.1	9,044	12.4
통조림품	4,981	6.3	4,613	6.0	3,108	4.2
연제품	5,765	7.3	4,763	6.2	5,693	7.8
소건품	2,682	3.4	2,280	3.0	2,586	3.5
염건품	314	0.4	864	1.1	498	0.7
자건품	1,206	1.5	1,275	1.7	1,142	1.6
해조제품	6,374	8.1	8,236	10.7	7,780	10.6
한천	181	0.2	100	0.1	98	0.1
조미가공품	9,473	12.1	10,389	13.5	9,682	13.2
어유분	503	0.6	225	0.3	191	0.3
염장품	1,498	1.9	1,364	1.8	1,043	1.4
염신품	3,890	5.0	5,341	7.0	6,038	8.2
수산피혁품	1	0.0	4	0.0	-	-
기타	5,809	7.4	5,128	6.7	6,451	8.8
합계	78,548	100.0	76,840	100.0	73,197	10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수산물가공업통계」 바탕으로 저자 가공(검색일: 2019. 10. 17)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산물 가공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은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전라남도(27.7%), 경기도(15.3%), 부산광역시(13.8%), 경상북도(8.0%) 순이다.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25.3%), 전라남도(16.2%), 경기도(16.0%), 경상남도(1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0〉 2017년 수산물 가공업 지역별 업체 및 종사자 현황

구분	사업체 수(개소)	비중(%)	종사자 수(명)	비중(%)
서울	22	0.4	234	0.3
부산	732	13.8	19,445	25.3
대구	31	0.6	372	0.5
인천	222	4.2	3,141	4.1
광주	25	0.5	175	0.2
대전	17	0.3	398	0.5
울산	38	0.7	227	0.3
경기도	813	15.3	12,312	16.0
강원도	378	7.1	5,577	7.3
충청북도	93	1.8	1,833	2.4
충청남도	276	5.2	2,436	3.2
전라북도	218	4.1	2,632	3.4
전라남도	1,467	27.7	12,467	16.2
경상북도	422	8.0	5,191	6.8
경상남도	389	7.3	9,242	12.0
제주	155	2.9	1,158	1.5
합계	5,298	100.0	76,840	10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수산물가공업통계」 바탕으로 저자 가공 (검색일: 2019. 10. 17)

4. 산업 특성

1) 산업적 지위

수산물 가공업이 우리나라 식료품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을 기준으로 사업체 수 대비 약 18.5%, 종사자 수 대비 약 14.3%이다. 이에 반해, 출하액과 부가가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2%와 8%로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표 4-11〉 식료품 제조업 대비 수산물 가공업 지위

단위: 개, 명, 백만 원, (%)

구분		2015	2016	2017
사업체 수	식료품 제조업	4,874	5,014	5,220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A)	941 (19.3)	929 (18.5)	965 (18.5)
종사자 수	식료품 제조업	190,549	195,940	201,350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A)	28,515 (15.0)	28,690 (14.6)	28,813 (14.3)
출하액	식료품 제조업	73,204,569	75,355,093	78,164,065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A)	5,453,687 (7.4)	5,918,754 (7.9)	6,416,038 (8.2)
부가가치	식료품 제조업	24,714,861	25,852,916	26,998,744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A)	1,966,878 (8.0)	2,085,758 (8.1)	2,168,318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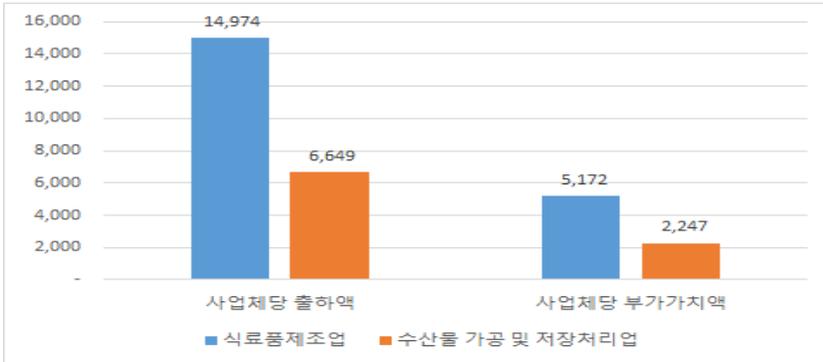
주: A는 식료품 제조업 중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비중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 참고하여 저자 가공(검색일: 2019. 10. 16)

특히, 사업체당 출하액과 부가가치액을 식료품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수산물 가공업의 출하액은 약 66.5억 원, 부가가치액은 22.5억 원으로 식품제조업의 출하액 149.7억 원, 부가가치액 51.7억 원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4-2〉 사업체 당 출하액 및 부가가치액 비교
(식료품 제조업 vs. 수산물 가공)

단위: 백만 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 참고하여 저자 가공(검색일: 2019. 10. 17)

이를 농업 분야인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의 규모와 비교해보면 수산물 가공업의 영세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아래 〈표 4-12〉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종사자 수, 평균 출하액, 평균 부가가치액 모두 식료품 제조업, 육류 가공업, 곡물 가공업 대비 수산물 가공업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산물 가공업의 평균 출하액과 부가가치액은 식료품 제조업 대비 각각 약 43%, 44%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12〉 수산물 가공업의 산업 규모 비교(2017년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평균 종사자 수	43	39	35	30	27
평균 출하액	21,765	14,974	13,664	6,649	14,714
평균 부가가치액	7,823	5,172	3,423	2,247	4,365

주: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 참고하여 저자 가공(검색일: 2019. 10. 17)

2) 특징

수산물 가공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노동 집약적이고 영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료의 특성으로 인해 품질 균일화, 규격화 등이 어려워 가공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제조업 대비 원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어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가공업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발전해 온 특징이 있다.²⁸⁾

가. 노동 집약적

수산물 가공업의 원료가 되는 수산물은 부패가 쉽고, 수급량과 수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특징이 있어 전 과정의 기계화가 어렵고 노동에 대한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식품가공산업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보존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발달시키고, 가공공정의 분업화, 기계화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산물은 원물의 특성상 이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산물 가공업은 대체적으로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수산가공품의 제품별 가공 현황을 살펴보면 냉동식품이 전체 가공품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단순가공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나. 중소·영세성

수산물 가공업은 위에 언급한 원료의 부패성, 계절성, 지역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보다는 영세·중소업체 위주로 발달해 온 특징이 있다. ‘해양수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수산물 가공업에

28) 정명생·임경희(2002), pp. 33~37.

서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8.3%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중소업체임을 알 수 있다.

〈표 4-13〉 수산물 가공업의 사업체 규모

단위: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수산물 가공업	0.1	1.6	98.3

주: 사례 수는 5,934개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9. 10. 17)

조직형태로 살펴보았을 때도, 개인사업체 비중이 약 7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고 영세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4〉 수산물 가공업 조직형태

단위: %

구분	개인	회사법인	회사이외 법인	비법인 단체	공공 및 국가/지자체
수산물 가공업	79.2	16.2	4.5	0.1	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9. 10. 18)

또한 수산물 가공업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 10명 미만 비율은 약 7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나 식료품 제조업 대비 대규모 사업체(100인 이상)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수산물 가공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교

단위: 개소(%)

종사자 규모별	제조업	식품제조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4명	275,223(63.5)	46,880(79.9)	1,610(43.3)
5~9명	89,041(20.5)	6,583(11.2)	1,150(31.0)
10~19명	34,512(8.0)	2,476(4.2)	490(13.2)
20~49명	23,903(5.5)	1,819(3.1)	338(9.1)
50~99명	6,880(1.6)	562(1.0)	92(2.5)
100~299명	3,438(0.8)	294(0.5)	34(0.9)
300~499명	372(0.1)	25(0.0)	1(0.0)
500~999명	192(0.0)	11(0.0)	-
1000명 이상	123(0.0)	3(0.0)	-
합계	433,684	58,653	3,7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9. 10. 16)

다. 지역 밀착 발전형

수산물 가공업은 원료 수급 차원에서 지역의 어업 기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발전해왔다. 지역별 주요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냉동품의 경우 약 43.4%가 부산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는 부산이 근해 및 원양어업 생산물의 주요 집산지로 대규모 어획물 처리를 위한 냉동냉장업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제품은 경상북도에서 약 36.7%, 강원도에서 약 31.2%가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상북도는 살오징어, 붉은대게 등, 강원도는 명태, 오징어 등의 주산지로 건제품의 주요 원료가 생산되는 지역이다. 해조제품 역시 김, 미역의 주요 생산지인 전라남도에서 약 96.1%가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산물 가공업은 원료의 주요 생산기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지역 산업 발전의 주축으로 자리 잡아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4-16〉 2017년 지역별 주요 수산물가공품 생산동향

단위: 톤

구분	냉동품	건제품	해조제품	염신장품	...	합계
서울	374	0	0	0	...	906
부산	256,649	840	675	14,995	...	349,861
대구	2,548	-	32	0	...	3,447
인천	6,129	334	1,449	812	...	13,274
광주	257	0	283	0	...	542
대전	434	11	0	288	...	4,036
울산	1,278	-	104	1,201	...	2,676
경기도	20,351	1,429	2,373	838	...	84,182
강원도	22,382	6,928	42	2,426	...	70,640
충청북도	764	195	194	250	...	8,737
충청남도	15,627	18	2,793	25,478	...	58,260
전라북도	6,280	241	1,437	2,625	...	11,708
전라남도	30,327	2,849	253,838	17,216	...	340,749
경상북도	168,369	8,142	15	4,581	...	204,715
경상남도	48,583	1,033	721	7,391	...	125,257
제주	11,323	185	77	509	...	12,648
합계	591,676	22,205	264,035	78,610	...	1,291,639

주: 1) 냉동품은 원형동결과 처리동결, 건제품은 소건품, 염건품, 자건품을, 염신장품은 염신품과 염장품을 합친 수량임

2) 통계 품목 중 일부만 발췌함(통조림품, 연제품, 한천, 조미가공품, 어유분, 수산피혁품, 기타가공품 생략)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수산물가공업통계」 바탕으로 저자 가공(검색일: 2019. 10. 17)

3) 산업적 역할

2014년을 기준으로 수산물 가공업이 국내 경제 전체 총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5%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액은 2000년 0.6조 원 대비 2014년 약 1.3조 원으로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총 산출액)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산업의 채산성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7〉 수산물 가공업 총산출액 및 부가가치액 변화 추이

단위: 십억 원

구분	2000	2005	2010	2014
중간투입액(A)	3,162	3,936	6,943	7,996
부가가치액(B)	567	729	1,064	1,273
총산출액(C=A+B)	3,729	4,665	8,007	9,269
부가가치율(B/C)	0.15	0.16	0.13	0.14

자료: 이현동 외(2017), p. 6

수산물 가공업의 생산유발효과²⁹⁾는 2.511로 국내 총 161개 산업 중 13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수산물 가공업의 부가가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있어 수산물 가공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표 4-18〉 산업부문별 생산유발계수 순위(2014)

순위	부문번호	부문명	생산유발계수
1	058	냉간압연강재	3.045
2	013	육류 및 낙농품	2.739
3	057	열간압연강재	2.723
4	093	기타 철강1차제품	2.593
5	059	특장차 및 트레일러	2.570
6	092	산업용 운반기계	2.556
∴	∴	∴	∴
12	070	자동차 부품	2.522
13	014	수산가공품	2.511
∴	∴	∴	∴
110	007	수산물	1.810

자료: 이현동 외(2017), p. 7

29) 생산유발효과는 산업의 생산이 1단위 증가할 때 국민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파급효과를 의미함.

또한 수산물 가공업의 고용유발계수³⁰⁾는 약 10명으로 전체 161개 산업 중 4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하는 반도체(3.1명), 자동차(6.3)와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3차 산업(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을 감안한다면, 제조업에 해당하는 수산물 가공업의 고용유발효과는 매우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4-19〉 수산가공품 및 국내 주요 산업의 고용효과 비교(2014)

부문 번호	부문명	고용 유발 계수	부문 번호	부문명	고용 유발 계수
001	곡물 및 식량작물	5.1	031	목제품	9.9
002	채소 및 과일	3.8	036	석탄제품	2.2
003	기타작물	3.3	037	석유제품	1.4
004	낙농 및 육우	3.7	041	화학섬유	3.7
005	기타 축산	4.0	042	의약품	6.2
006	임산물	4.4	058	냉간압연강재	4.3
007	수산물	4.7	082	반도체	3.1
013	육류 및 낙농품	6.9	092	자동차	6.3
014	수산가공품	10.0	110	건축 보수	9.6
015	정곡 및 제분	5.3	112	일반토목시설 건설	7.0
016	제당 및 전분	3.5	115	도소매서비스	13.3
017	떡, 과자 및 면류	9.1	122	하역서비스	11.3
018	조미료 및 유지	7.6	123	보관 및 창고서비스	12.4
019	기타 식료품	9.7	125	음식점 및 주점	13.1

자료: 이헌동 외(2017), p. 7

30) 고용유발계수는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판매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의미함.

제2절 노동시장 구조 및 특성 분석

1. 고용 및 임금실태 분석

1) 고용 현황

2017년 기준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 수는 약 45,476명으로 추정되며,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약 7.66명이다. 수산물 가공업의 고용 규모는 전체 수산업 대비 약 7.1% 수준이다.

〈표 4-20〉 수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 현황(2017)

구분	평균(명)	합계(명)	비중(%)
수산물 생산업	10.15	477,382	74.7
수산물 가공업	7.66	45,476	7.1
수산물 유통업	2.69	115,789	18.1
수산업 합계	-	638,647	10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검색일: 2019. 10. 18)

수산물 가공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³¹⁾를 살펴보면, 각각 연평균 증감률 -3.4%, -3.5%로 고용 규모가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1〉 수산물 가공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사업체 수	5,358	5,298	5,003	-3.4
종사자 수	78,548	76,840	73,197	-3.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수산물가공업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검색일: 2019. 10. 18)

31) 현재 수산물 가공업의 고용 통계와 관련하여 '수산물가공업통계'와 '해양수산업통계조사'에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이 집계되고 있으나 분류 기준과 적용범위가 통계별로 다소 상이하여 수치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수산물 가공업의 종사지위별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평균 7.66명 중 대표 1명(약 13%), 상용근로자 4.73명(약 61.7%), 임시 및 일용근로자 1.3명(약 17%), 무급 가족봉사자 0.58명(약 7.6%), 기타 0.06명(약 0.8%)으로 구성되어있다. 수산물 가공업은 원료의 생산시기에 따라 가공 업무가 편중될 수 있어 임시직 및 일용직 비중이 약 17%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무급 가족 비율도 약 7.6%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22〉 수산물 가공업의 평균 종사자 수(직위별)

단위: 명

구분	대표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무급 가족봉사자	기타 종사자	합계
구성	1	4.73	1.3	0.58	0.06	7.6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검색일: 2019. 10. 18)

또한 어획 후 분야(post harvest sector)인 수산물 가공업은 전통적으로 여성 고용 비율이 높은 산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업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약 59%이며, 외국인 고용률은 5.8%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3〉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 현황(성별 및 국적별)

단위: 명, %

구분	성별		국적별	
	남성	여성	한국인	외국인
인원	18,761	26,714	42,842	2,633
비중	41.3	58.7	94.2	5.8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검색일: 2019. 10. 18)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의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중 40대 이상이 약 77.3%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24〉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 현황(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비중	5.9	16.8	29.9	34.8	12.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검색일: 2019. 10. 18)

직종별로는 기능직³²⁾이 전체 종사자의 6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적 특성상 단순노동의 특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4-25〉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 직종별 현황

단위: %

구분	연구	기술	사무	기능
비중	1	15.1	17.4	66.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검색일: 2019. 10. 18)

2) 임금 현황

수산물 가공업의 종사자당 평균 연간급여액은 약 22,341,455원이며, 월평균 임금은 약 1,861,788원으로 나타났다.

32) 기능직은 skills의 개념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능력이 쌓인 직종을 의미하며, 기술직(Technician)에 비해 저차원의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을 의미함.

〈표 4-26〉 수산물 가공업 연간급여 현황(2017)

단위: 원

연간급여액	종사자 당 연간급여
10,160,000,000,000	22,341,45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검색일: 2019. 10. 18)

임금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산업 실태조사’³³⁾의 3년간 (2016~2018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한국인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2016년 179.4만 원에서 2018년 199.8만 원으로 올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 상용근로자, 한국인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27〉 수산물 가공업 직종별 월평균 임금 현황(2018)

단위: 만 원, %

구분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한국인 상용근로자	179.4	187.6	199.8	5.5
한국인 임시 및 일용근로자	79.1	82.2	88.9	6.0
외국인근로자	144.3	151.0	174.2	9.9

자료: 이광남 외, 2019. ‘수산업 현장 애로사항 분석 및 동향 파악’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

수산물 가공업의 월평균 임금은 175~300만 원 이하 구간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임금(301만 원 이상)을 받는 비중이 생산업 38.8%, 유통업 4.5%에 비교하여 가공업은 1.3%로 작게 나타났다.

33)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 개정(2018. 3)으로 통계청의 권고에 따라 기존에 실시하던 ‘수산업 실태조사’는 ‘해양수산업통계조사’로 통합되었음(2019. 7).

〈표 4-28〉 한국인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현황(2018)

단위: %

구분	157만 원 이하	158~174만 원 이하	175~300만 원 이하	301만 원 이상
수산물 생산업	12.8	3.6	44.9	38.8
수산물 가공업	12.4	16.4	69.8	1.3
수산물 유통업	8.9	10.6	76.0	4.5

자료: 이광남 외, 2019. '수산업 현장 애로사항 분석 및 동향 파악' p. 154 참고하여 저자 재가공

임금현황을 근로자 직위별로 살펴보면, 한국인 상용근로자의 경우 약 70%가 175~300만 원 이하 구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57만 원 이하 구간에서 약 8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75~300만 원 이하 구간이 52.8%, 158~174만 원 이하가 32.1%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9〉 수산물 가공업 직위별 월평균 임금 현황(2018)

단위: %

구분	157만 원 이하	158~174만 원 이하	175~300만 원 이하	301만 원 이상
한국인 상용근로자	12.4	16.4	69.8	1.3
한국인 임시 및 일용근로자	84.8	8.3	6.8	0.0
외국인근로자	15.1	32.1	52.8	0.0

자료: 이광남 외, 2019. '수산업 현장 애로사항 분석 및 동향 파악' 참고하여 저자 재가공

2. 노동시장 특성³⁴⁾

수산물 가공업은 원료가 되는 '수산물'의 생산 특성에 따라 고용 형태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임금형태, 고용정책에 대한 영향도가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산물 가공업의 고용 형태를 조사한 결과, 원물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가공도나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일수록 상용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원물의 생산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거나 가공형태가 단순할수록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굴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4~5월까지가 주요 생산시기이기 때문에 가공(박신) 작업 또한 이 시기에 맞추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며, 박신한 굴의 양만큼 매일 정산하여 지급하는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원료의 수급이 연중 안정적인 경우, 타 식품제조업과 유사한 형태로 생산직을 대부분 상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근접성(대도시 인접여부)에 따라 인력 수급 용이성이 다소 차이가 나는 점, 잦은 이직이나 이탈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수산물 가공업은 비린내 등 열악한 작업 환경,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국내 젊은 인력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의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도 향후 채용의사를 밝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규모는 지속

34) 노동시장 특성은 각 산업의 관련 노동연맹, 협회, 학계 등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조사(조사 기간: 2019. 6~2019. 11)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구조상 일용직 고용 비율이 높을수록 최저임금제나 52시간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산물 가공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원료 수급 측면에서 지역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 등 사업 구조 다변화가 어려운 산업이다. 또한 전 과정 기계화(설비화)가 어렵고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국내 노동조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가공(원물의 생산) 성수기가 3개월 이상인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의 연장(3개월 → 6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외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 중 65세 이상의 기술 및 숙련도가 높은 인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고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 5 장

수산물 유통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

제1절 산업 개요

1. 산업 정의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업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³⁵⁾ 유통이란 생산자에게는 생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필요로 하는 제품 구입과 최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이다. 수산물 유통은 수산물이 생산된 후 유통 기구를 거치며 가격이 형성되고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으로 수산물 생산과 소비의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근해에서 어획된 수산물은 생산자→수산업협동조합 산지 위판장→수산물 소비지 도매시장→도매상→소매상→소비자로

35)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의 1.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수산물 생산과 소비 사이의 중간과정에 위치한 산지 위판장, 소비지 도매시장, 도매상, 소매상은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 기구이고, 이들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전부 포함하여 수산물 유통이라고 한다.³⁶⁾

유통은 상품 생산 완료한 단계에서 소비될 때까지의 과정으로 유통과정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서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 또는 기관까지 상품이 이전되는 것이다.³⁷⁾ 수산물 유통은 운송, 보관, 정보 전달, 거래, 상품 구색, 선별, 집적, 분할 등 8가지 기능을 갖는다(〈표 5-1〉 참조).

〈표 5-1〉 수산물 유통 기능

구분	주요 내용
1. 운송 기능	수산물 생산지나 양륙 산지 등과 소비지 사이의 장소 거리를 연결시켜주는 기능
2. 보관 기능	수산물 생산 조업 시기와 비조업 시기 등과 같은 시간의 거리를 연결시켜주어 소비자가 언제든지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3. 정보 전달 기능	판매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나 냉동여·선어의 선도 등 수산 상품에 대한 인식의 거리를 연결시켜주는 기능
4. 거래 기능	생산자가 소유하여 팔고자 하는 수산물의 소유권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 사이의 소유권 거리를 중간에서 적정 가격을 통해 연결시켜주는 기능
5. 상품 구색 기능	시장 수요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다양하면서도 여러 질의 수산물을 수집하여 다양한 수산 상품의 구색을 갖추는 기능

36) 전라남도교육청(2014), p. 10.

37) 장영수(2011), p. 16.

구분	주요 내용
6. 선별 기능	다양한 질의 수산물을 구분하여 상·중·하와 같이 등질 생산물을 소집합으로 선별하거나, 수산물의 이용 배분 과정에 있어 선어, 냉동, 가공 등과 같이 시장의 다양성에 대처하기 위해 수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하는 기능
7. 집적 기능	연안 수산물과 같이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등질 수산물의 소집합을 집적하는 기능
8. 분할 기능	원양어업과 같이 대규모 어업 생산에 의해 생산된 대량의 수산물을 각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소량으로 분할하는 기능

자료: 전라남도교육청(2014), p. 24~25

2. 산업 분류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에서 수산물 유통업은 수산물 판매업과 수산물 운송 보관업으로 분류한다. 통상적으로 현행 통계청의 표준 산업분류(KSIC)체계에서는 통계상으로 명확히 식별되는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을 수산물 유통분야로 간주한다. 수산물 유통업은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과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의 2개 중분류로 구분된다.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은 수산물 중개업, 수산물 도소매업,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으로 나누어지며,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은 수산물 운송업,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으로 나뉜다.(<표 5-2> 참조).

‘수산물 국내 중개업’은 진주조개나 조개껍데기 등을 이용하여 보석, 공예품, 장신구 등을 가공하거나 폐화석을 이용하여 비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한다. ‘수산물 해외 중개업’은 국내에서 미가공 수산물 및 각종 수산 가공식품의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수산물 전자상거래 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미가공 수산물 및 각종 수산 가공식품의 소매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 활동이다.

'수산 신선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은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산 것·신선한 상품이나 냉동·건조·염장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한다. '수산 신선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은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산 것·신선한 상품이나 냉동·건조·염장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수산물 가공식품 도소매업'은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수산물의 가공식품을 도소매하는 산업 활동이며, '기타 수산물 가공품 도소매업'은 기타 수산물 가공품을 도소매하는 산업 활동이다.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은 관상용 수산 동식물을 중개 또는 도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한다.

'수산물 육상 운송업'은 육상에서 활어운반차, 냉동 및 냉장 탑차 등을 이용해 수산물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수산물 해상 운송업'은 독립 경영하는 어획물 운반선 및 공장형 선박 가공품 운반선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이다.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은 인공적으로 저온(냉장 및 냉동)을 유지하여 수산물을 보관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표 5-2〉 수산물 유통업의 통계상 분류

코드	해양수산업특수분류 세분류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6111	수산물 국내 중개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6112	수산물 해외 중개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6113	수산물 전자상거래 중개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6121	수산 신선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46314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46315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6122	수산 신선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47213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4721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6123	수산물 가공식품 도소매업	46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6129	기타 수산물 가공품 도소매업	46463	장난감 및 취미, 오락 용품 도매업
		46492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6130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	46205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
		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6211	수산물 육상 운송업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2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3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6212	수산물 해상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6220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자료: 통계청, 「해양수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p. 4-5. (검색일: 2019. 10. 1.)

3. 산업 현황

2000년 이후 수산물 유통시장은 전통적인 소비지 유통 중심의 도매시장이 축소되고 대형소매업체와 백화점 등 대규모 구매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소매유통시장에서는 최근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 채널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이후 슈퍼마켓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소분화된 상품(1인용)과 온라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대형소매업체의 성장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대를 유지했으나, 2016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또한 온라인쇼핑, 쇼핑몰, 해외직구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을 통한 구매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³⁸⁾ 대형마트의 수산물 매출액 비중은 매년 평균 약 4~5% 수준이며, 농산물은 평균 11~14%, 축산물은 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대형마트의 총매출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이다(〈표 5-4〉 참조).

〈표 5-3〉 대형마트·백화점 수산물 매출액 추이

단위: 조 원, %,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형마트	매출액	39.1	39.2	39.4	40.6	41.5
	성장률	1.5	0.3	0.6	3.1	2.2
	점포 수	483	504	512	518	525
백화점	29.8	29.1	28.9	30.0	29.2	

주: 매출액은 통계청 소매업체별 판매액(경상금액 기준)

자료: 식품저널, 「2018년 식품유통연감」;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18 참고 저자 재작성

38)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16, 18.

〈표 5-4〉 대형마트의 농수축산물 매출액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대형마트	농산물	12.1	11.2	13.6	11.5	13.8
	축산물	6.2	6.5	6.7	6.7	7.2
	수산물	4.7	4.2	5.5	4.9	4.8
	이 외	77.0	78.1	74.2	76.9	74.2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각 연도;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19
참고 저자 재작성

2018년 기준 전국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위판장은 총 222개소로 회원 조합 220개소, 수협중앙회 1개소, 부산공동어시장 1개소이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55개소, 경상남도 54개소, 강원도 27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³⁹⁾

〈표 5-5〉 전국 위판장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소계	지정	미지정
합계	222	121	10
부산광역시	11	10	1
인천광역시	7	6	1
울산광역시	3	2	1
경기도	3	1	2
강원도	27	27	-
충청남도	24	24	-
전라북도	6	6	-
전라남도	55	51	4
경상북도	22	22	-
경상남도	54	54	-
제주도	10	9	1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2018. 12. 31 기준);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45 참고 저자 재작성

39)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44.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공영도매시장 33개소, 일반법정도매시장 13개소, 민영도매시장 3개소 등 총 49개소의 도매시장이 있다.⁴⁰⁾⁴¹⁾ 전국 도매시장 중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은 총 19개소이며, 2017년 기준 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량은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36.3%,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3.2%, 노량진수산물시장 16%,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8.4%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5-6〉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 현황(2017년 기준)

단위: 톤, 백만 원, %

도매시장명	거래물량	비중	거래금액	비중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합계	400,184	100	1,600,688	100	-
서울 가락	92,882	23.2	489,257	30.6	강동수산, 서울건해산물, 수협가락(공)
부산 국제	145,398	36.3	329,241	20.6	부산감천항수산, 삼성아이에프엠, 부산수산물(공), 부산시수산감천(공)
대구 북부	16,806	4.2	92,687	5.8	대구수산, 대구종합수산, 대구신화수산
광주 서부	4,397	1.1	32,146	2	수협광주(공)
대전 오정	5,677	1.4	32,480	2	한밭수산
대전 노은	2,190	0.5	17,008	1.1	대전노은신화수산, 대전노은진영수산

40) 농림축산식품부(2019), 2018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p.77

41) ①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공투자자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 ② 일반법정도매시장: 민간의 투자로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 ③ 민영도매시장: 민간인 등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시장.

도매시장명	거래물량	비중	거래금액	비중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울산시	6,420	1.6	32,110	2	울산중앙수산, 울산건해산물, 울산수협(공)
수원시	5,902	1.5	26,572	1.7	수원수산, 남부수협(공)
안양시	6,856	1.7	32,708	2	안양평촌수산
안산시	2,746	0.7	11,670	0.7	안산수산
구리시	33,557	8.4	134,289	8.4	강북수산, 수협구리(공)
청주시	1,282	0.3	5,608	0.4	청주수산시장
충주시	642	0.2	2,892	0.2	중원수산
천안시	996	0.2	6,789	0.4	해량수산
전주시	1,612	0.4	8,291	0.5	전주수산시장, 수협전주(공)
익산시	2,231	0.6	10,627	0.7	이리수산시장
안동시	521	0.1	6,923	0.4	안동수산시장
서울 노량진	63,891	16	316,328	19.8	노량진수산
포항시	6,178	1.5	13,062	0.8	신포항수산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각 연도;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19
참고 저자 재작성

전국 도매시장의 수산부류 중도매인 실태를 거래금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취급규모 '10억 원 이상'의 중도매인이 2008년 19.2%에서 2017년 16.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취급규모 '5억 원 미만'의 영세 소규모 업자가 60%를 차지한다.

〈표 5-7〉 최근 10년간 도매시장 거래금액 규모별 중도매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8년				2017년			
	전체 도매시장	비중	수산	비중	전체 도매시장	비중	수산	비중
총계	4,829	100	1,503	100	8,036	100	1,458	100
1억 원 미만	579	6.9	216	14.4	475	5.9	268	18.4
1~3억 원 미만	1,483	17.6	348	23.2	847	10.5	343	23.5
3~5억 원 미만	1,609	19.1	331	22	1,137	14.1	264	18.1
5~10억 원 미만	2,103	24.9	320	21.3	2,029	25.2	349	23.9
10~20억 원 미만	1,577	18.7	198	13.2	1,875	23.3	163	11.2
20~30억 원 미만	557	6.6	58	3.9	731	9.1	39	2.7
30억 원 이상	521	6.2	32	2.1	942	11.7	32	2.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08년 및 2017년;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50 참고 저자 재작성

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억 원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의 59.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수산물 소매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59.2%로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함을 알 수 있다.⁴²⁾

수산물 도소매업의 영세성은 종사자 규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종사자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비율은 수산물 도매업 87.9%,

42)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51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79.3%, 수산물 소매업 98.8%이다. 산업의 영세성은 경영 성과(이윤) 및 고용 문제와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⁴³⁾

〈표 5-8〉 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2016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계	14,549	100.0	1,017	100.0	21,739	100.0
50백만 원 미만	622	4.3	125	12.3	7,259	33.4
50~100백만 원	1,368	9.4	83	8.2	5,603	25.8
100~500백만 원	4,445	30.6	216	21.2	6,865	31.6
500~1,000백만 원	2,170	14.9	156	15.3	1,064	4.9
1,000~5,000백만 원	3,350	23.0	322	31.7	901	4.1
5,000~10,000백만 원	2,316	15.9	80	7.9	45	0.2
10,000~20,000백만 원	179	1.2	17	1.7	2	0.0
20,000~30,000 백만 원	56	0.4	6	0.6	-	-
30,000백만 원 이상	43	0.3	12	1.2	-	-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2010,2015) 및 「도소매업조사」(2006~2016);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51 참고 저자 재작성

43)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51

〈표 5-9〉 수산물 도소매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2016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계	14,579	100	1,017	100	21,739	100
1~4명	12,785	87.9	806	79.3	21,474	98.8
5~9명	1,308	9	147	14.5	236	1.1
10~19명	319	2.2	31	3	22	0.1
20~49명	114	0.8	19	1.9	7	0.0
50~99명	19	0.1	6	0.6	-	-
100~299명	4	0.0	6	0.6	-	-
300명 이상	-	-	2	0.2	-	-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2010, 2015) 및 「도소매업조사」(2006~2016);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51 참고 저자 재작성

4. 산업 특성

수산물은 강한 부패성 및 유통 과정에서의 거래 위험성(부패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 등 일반 제품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특성은 수산물 유통업에서도 나타난다. 수산물 유통업의 특징은 첫째, 유통경로의 다양성, 둘째, 가격의 변동성, 셋째, 생산물의 규격화 및 균질화의 어려움, 넷째, 수산물 구매의 소량 분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⁴⁴⁾

1) 유통경로의 다양성

수산물 유통은 생산지와 소비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유통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유통 경로의 다

44) 전라남도교육청(2014), p. 12~13.

양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산물 생산 특성에 기인하는데, 계절성을 띠는 어업생산, 조업 해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어장(생산지), 다품종, 다양한 형태의 어업 방식(연안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 양식업)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생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선어·냉동·가공 원료 등 여러 형태로 이용 배분되고 있다.

2) 가격의 변동성

일반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원가 비용에 근거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있어 비교적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반면, 수산물은 생산 불확실성, 어획물의 다양성, 강한 부패성 등으로 일정한 가격(가격 정찰제, 표준 가격 설정)을 유지하기 어렵고 변동 폭이 크다. 따라서 최종 소매 단계에서 계획적인 판매가 어렵다. 또한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높은 유통 마진이 형성되기 쉽다.

3) 수산물의 규격화 및 균질화의 어려움

일반 공산품은 대부분 규격과 품질 상태가 일정하게 등급화되어 있다. 이에 반해 수산물은 다양한 어종이 어획·생산되고 규격(크기), 품질도 균일하지 못한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같은 고등어라 하더라도 크기가 다르고 선도도 다르게 양륙·진열된다. 이렇게 양륙된 고등어는 크기별로 선별된 후 경매된다.

4) 수산물 구매의 소량 분산성

수산물 소비는 전국 분산적이며 소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소비자는 주로 수산물을 소량씩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산물은 저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량으로 구매해 보관하기보다는 소량으로 빈번하게 구매하여 소비한다.

제2절 노동시장 구조 및 특성

1. 고용 및 임금 실태 분석

2016년 수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 수는 전년과 비슷한 12만 6,863명으로 남성 7만 2천명(56.8%), 여성 5만 5천명(43.2%)이다.⁴⁵⁾

〈표 5-10〉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 현황(2016년 기준) - 수산업 실태조사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계	계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근 로자	임사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합계	126,560	126,863	36,082	21,398	56,895	12,182	307
남	71,043	72,006	20,028	7,898	37,569	6,329	184
여	55,517	54,857	16,054	13,500	19,326	5,854	123

자료: 통계청, 해양수산업통계조사;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53 참고 저자 재작성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에서 수산물 유통업은 수산물 판매업과 수산물 운송 보관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현행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KSIC)체계에서는 통계상으로 명확히 식별되는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이 수산물 유통분야

45) 수산업 전반의 고용·매출·재무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승인통계인 수산업 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매년 수산분야 사업체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로 간주된다.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의 종사자 수를 집계해보면, 2017년 3개 업종 유통종사자 수는 전년(61,295명) 대비 약 5% 증가한 64,673명으로 추정된다.⁴⁶⁾

〈표 5-11〉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 현황(2017년 기준) - 전국사업체조사

단위: 명

구분	종사지 지위	종사자 수	
		2016년	2017년
수산물 도매업	자영업주, 무급가족	11,149	11,476
	상용종사자	16,646	17,805
	임시 및 일용근로자	3,323	3,376
	기타종사자	361	185
	합계	31,479	32,842
수산물 소매업	자영업주, 무급가족	19,570	21,062
	상용종사자	2,523	2,772
	임시 및 일용근로자	1,840	1,934
	기타종사자	143	30
	합계	24,076	25,498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자영업주, 무급가족	973	1,038
	상용종사자	4,248	4,431
	임시 및 일용근로자	502	554
	기타종사자	17	10
	합계	5,740	6,033
합계 (3개 업종 전체 합)	자영업주, 무급가족	31,692	33,576
	상용종사자	23,417	25,008
	임시 및 일용근로자	5,665	5,864
	기타종사자	521	225
	합계	61,295	64,673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0차 산업분류 기준)」;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54 참고 저자 재작성

46) 수산업 실태조사는 공식 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업종의 수산물 유통종사자 수를 추정할 광의(廣義)의 개념이라면, 전국사업체조사의 유통종사자 수는 통상적인 수산물 유통업으로 간주되는 정책대상 범위에서 협의(狹義)의 개념인 종사자 수로 볼 수 있음.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에서는 산지 유통종사자를 중도매인, 매참인, 경매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부산공동어시장 유통종사자를 포함한 산지 유통종사자 수는 4,455명으로 추정된다.

〈표 5-12〉 산지 수산물시장 유통종사자 현황(수산물 위·공판장)

단위: 명

구분	합계	중앙회	회원조합	부산공동어시장	
2016년	중도매인	3,813	24	3,700	89
	매참인	94	6	79	9
	경매사	525	4	513	8
	합계	4,432	34	4,292	106
2017년	중도매인	3,751	23	3,639	89
	매참인	110	6	97	7
	경매사	524	3	513	8
	합계	4,385	32	4,249	104
2018년	중도매인	3,834	23	3,722	89
	매참인	128	6	115	7
	경매사	493	3	482	8
	합계	4,455	32	4,319	104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0차 산업분류 기준)」;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54 참고 저자 재작성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에서 파악하고 있는 2018년 전국 수산물 유통 관련 단순 노무인력(중도매인, 매참인, 경매사 등을 제외한 위판장 및 시장 내 양륙, 배열, 하역, 운반 등 인력)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2,735명으로 파악된다.⁴⁷⁾ 2012년 이래로 전체 항운노동조합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반비례하여 임시일용직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7) 산지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위판장이나 시장 내에서 일하는 단순 노무인력(양륙, 배열, 하역, 운반 등)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음.

〈표 5-13〉 수산물 유통업 단순 노무인력 현황(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력	1,868 (46)	1,925 (870)	1,943 (170)	1,797 (93)	1,801 (87)	1,764 (959)	1,706 (730)	1,653 (701)	1,646 (1,089)
합계	1,914	2,795	2,112	1,890	1,888	2,723	2,437	2,354	2,735

주: 노무인력은 항운노조조합원과 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할 자료 수 있으며, ()는 임시일용직임

자료: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공 내부자료, 2018. 12;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55

참고 저자 재작성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2017년 기준)의 전국 도매시장 수산 부문 유통종사자 수는 전년(3,355명)과 비슷한 3,396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중 중도매인은 1,458명으로 전체의 4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역인 1,083명(31.9%), 도매법인 임직원 495명(14.9%)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5-14〉 도매시장 수산부문 유통종사자 현황 -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관리사무소(공사) 직원	23	23	24	31	35	34	46	32
도매법인 임직원 (경매사 포함)	595	581	454	477	459	526	495	495
중도매인	1,464	1,447	1,442	1,455	1,462	1,474	1,507	1,458
매매참가인	161	169	161	190	182	198	199	290
관련 상인	1,349	1,329	1,332	1,131	462	438	340	38
하역인	649	615	566	680	533	820	768	1,083
합계	4,241	4,164	3,979	3,964	3,133	3,490	3,355	3,396

주: 수산부문 유통종사자 수는 민영도매시장과 법정도매시장 자료의 합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56 참고 저자 재작성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2016년 수산업 실태 조사에서의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 수는 12만 6,863명, 수산물도소매업 통계(전국사업체조사)로 식별되는 종사자 수는 6만 1,295명, 산지 및 도매시장에 종사하는 유통인(단순 노무인력 포함) 종사자 수는 1만 247명으로 파악된다.

〈표 5-15〉 수산물 유통종사자 수 추정결과 비교(2016년 기준)

구분	종사자수	비고
수산업 실태조사	126,863명	해양수산업 특수산업분류에 근거하여 추정
전국사업체 조사	61,295명	통계자료로 식별되는 수산물도매업, 수산물가공식품도매업, 수산물소매업 3개 업종 종사자 수 집계
산지 및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10,247명 (산지 6,892명, 도매 3,35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수협 위·공판장 현황에서 집계하고 있는 종사자(중도매인, 매참인, 경매사)와 전국항운노조연맹의 단순노무인력 • 도매: 도매시장통계연보에서 집계하는 수산물 유통 종사자 수

자료: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p. 56 참고 저자 재작성

2. 노동시장 특성⁴⁸⁾

수산물 유통업 중 수산물 증개 및 도소매업은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특례업종이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수산물 운송업은 특례가 존치되었으나,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의 경우 특례에서 제외되었다(〈표 5-16〉 참조).

48) 노동시장 특성은 각 산업의 관련 노동연맹, 협회, 학계 등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조사(조사 기간: 2019. 6~2019. 11), 문헌조사, 서면자문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표 5-16〉 수산물 유통업의 근로기준법 적용

해양수산물특수분류(2018)			특례 및 법 적용	근로시간 단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수산물 유통업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수산물 중개업	특례 제외	단축적용 ($\infty \rightarrow 52$ 시간)
		수산물 도소매업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수산물 운송업	특례 존치	×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		특례 제외	단축적용 ($\infty \rightarrow 52$ 시간)	

주: ∞ 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의미

자료: 장정인 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2018. p. 23 〈표 2-7〉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수산물 도소매업, 중개인 등 유통업은 주로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영세형 경영 형태로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편이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 등 성과를 보상받으며, 단기간에 노동이 집약되는 때에는 일용직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유통은 업무 운영이 비교적 자율적인 형태이며, 대부분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사무 관리직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력 채용은 정기적으로 하기보다는 결원이 생기면 충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주로 지인의 소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산분야 특성상 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생소한 용어가 많아 3~5년 이상 경력이 생겨야 영업을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육성 차원에서 채용을 하거나 경력자를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 특성이 주로 영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데, 주로 월급을 받는 형태이고, 근무

시간은 자유로운 편이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는 수산물 판매를 다른 유통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경우도 있다.

현재 산지중도매인(경매사)은 약 3,500여 명으로 중개업은 1인·가족 경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노동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해진 임금이 없고 마진에 따라 유동적인데, 본인이 일한 만큼 임금을 벌고 있다.⁴⁹⁾

대부분의 냉동냉장업체는 25명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이며 특히 경상·전라권 일대의 소규모 냉동창고는 계속되는 어획량 감소로 인한 보관률의 하락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보관 및 창고업 중 냉동냉장창고업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경우 냉각기의 유지 관리 미보수를 하는 감시 단속직 업무로 야간근무를 하지만 장시간 과로노동을 하는 일반 서비스 업종과는 다른 형태의 근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냉동냉장창고의 안전관리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기에 연장근로의 한도나 휴게시간 부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보관 및 창고업체는 단순 보관업에 대해서 대부분의 인원을 주 40시간 근무인원으로 채용하며 일부에 대해 감시 단속직 인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냉동냉장업은 상시 가동되는 냉각 시설의 특성상 대부분의 고압가스안전관리자들이 24시간 2교대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⁵⁰⁾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공조냉동기계 자격 소지자를 선임⁵¹⁾하여야 하는데, 근로시간 특례 업종 제외로 주 52시간 적용을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추가 인

49)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자문(2019. 8. 14).

50)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및 관계자 자문(2019. 10. 15).

5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력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냉동냉장업 업체 수는 전국 828개 사다.⁵²⁾

한편, 정부는 2005년부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냉동냉장업계에 지원하고 있다. 기업체에 숙련인력활용 및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2012. 7)가 시행되었는데,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 제조업에 한정하여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된 냉동냉장업은 동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냉동냉장창고는 연중 영하 18도 이하의 환경에서 입출고를 하며 저온물품을 상하차하는 단순 업무로 노동강도가 높아 내국인의 선호도가 낮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냉동냉장업 분야 성실외국인근로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특례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⁵³⁾

52)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2015년 기준).

53)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자체 조사 결과,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희망한 업체는 90% 이상임.

제 6 장

노동제도 변화에 따른
수산업 영향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최근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이 수산분야 노동시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를 수산물 생산업, 유통업 가공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표본은 총 328개 사업체 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18%이다. 표본 추출은 수산업종별 할당표본 추출을 사용하였다.

〈그림 6-1〉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	→	▪ 전국 수산업분야 사업체
표본 수	→	▪ 총 358개
표본 오차	→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5.18% Point
조사 방법	→	▪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추출	→	▪ 수산업종별 할당표본 추출(Quota Sampling)
조사 기간	→	▪ 2019년 7월 9일 (화) ~ 7월 25일 (목)

2. 조사업체 특성 분석

조사업체의 업종은 수산물 생산업이 130개 업체, 수산물 가공업이 111개 업체, 수산물 유통업이 117개 업체이다.

〈표 6-1〉 조사업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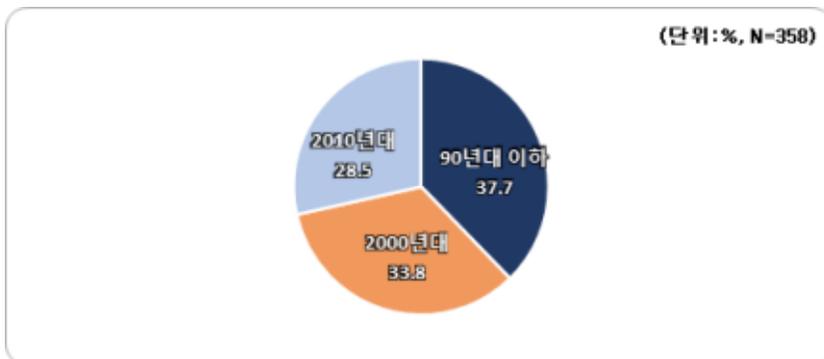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비율(%)
■ 전 체 ■		358	100.0
대분류	수산물 생산업	130	36.3
	수산물 가공업	111	31.0
	수산물 유통업	117	32.7
중분류	소금 채취업	27	7.5%
	연안어업	16	4.5%
	근해어업	24	6.7%
	원양어업	4	1.1%
	양식어업	59	16.5%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21.2%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9.8%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3.4%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29.3%

1) 창설연월

수산업 전체 사업체의 창설연월에 대해 살펴본 결과, '90년대 이하'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000년대'가 33.8%, '2010년대'가 28.5% 순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기준으로 수산물 생산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90년대 이하'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000년대'가 28.5%, '2010년대'가 29.2%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00년대'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90년대 이하'가 29.7%, '2010년대'가 27.9%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90년대 이하'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000년대'가 31.6%, '2010년대'가 2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표본 창립연대(수산업)



〈표 6-2〉 수산업 업종별 표본 창립연대

단위: %		사례수	90년대 이하	2000년대	2010년대
■ 전 체 ■		358	37.7	33.8	28.5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42.3	28.5	29.2
	수산물 가공업	(111)	29.7	42.3	27.9
	수산물 유통업	(117)	40.2	31.6	28.2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44.4	37.0	18.5
	연안 어업	(16)	50.0	12.5	37.5
	근해 어업	(24)	41.7	29.2	29.2
	원양 어업	(4)	100.0	0.0	0.0
	양식 어업	(59)	35.6	30.5	33.9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25.0	40.8	34.2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40.0	45.7	14.3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50.0	41.7	8.3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39.0	30.5	30.5

2) 2018년 12월 말 기준 매출액

2018년 12월 말 기준 수산업분야 전체 매출액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억~5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0억~50억 원 미만'이 16.8%, '5천만 원 미만'이 9.5%, '5억~10억 원 미만'이 9.2%, '50억~100억 원 미만'이 8.7%, '5천~1억 원 미만'이 7.3%, '100억~200억 원 미만'이 5.0%, '300억 원 이상'이 4.2%, '200~300억 원 미만'이 2.5%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생산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억~5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5천만 원 미만'이 16.2%, '5천~1억 원 미만' 13.1%, '5억~10억 원 미만' 9.2%, '10억~50억 원 미만'이 9.2%, '100억~200억 원 미만'과 '300억 원 이상'과 '50억~100억 원 미만'이 2.3%, '200~300억 원 미만'이 0.8% 순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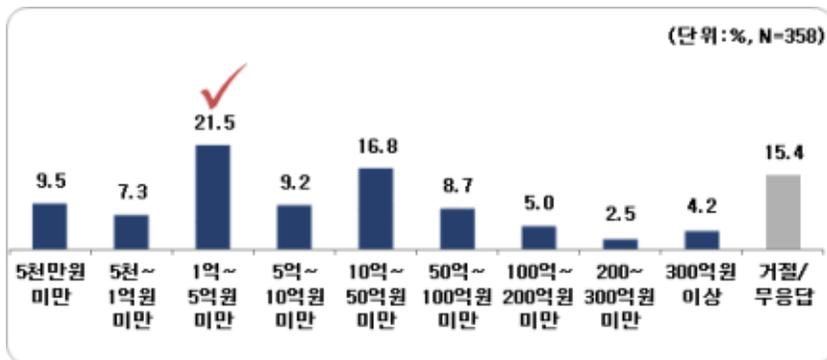
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10억~50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50억~100억 원 미만'이 16.2%, '1억~5억 원 미만'이 11.7%, '5억~10억 원 미만'이 10.8%, '100억~200억 원 미만'이 7.2%, '300억 원 이상'과 '200~300억 원 미만'이 4.5%, '5천~1억 원 미만'과 '5천만 원 미만'이 3.6%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억~5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0억~50억 원 미만'이 17.9%, '50억~100억 원 미만'이 8.5%, '5천만 원 미만'과 '5억~10억 원 미만'이 7.7%, '300억 이상'이 6.0%, '100억~200억 원 미만'이 5.1%, '5천~1억 원 미만'이 4.3%, '200~300억 원 미만'이 2.6% 순으로 나타났다.

1억~5억 원 미만은 양식어업에서 특히 높고, 10억~50억 원 미만은 수산물 가공업, 동물,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6-3〉 수산업 업체별 매출액 분포



〈표 6-3〉 수산업 업종별 업체별 매출액 분포

단위: %		사례수	5천만 원 미만	5천~1억 원 미만	1억~5억 원 미만	5억~10억 원 미만	10억~50억 원 미만
■ 전 체 ■		(358)	9.5	7.3	21.5	9.2	16.8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16.2	13.1	25.4	9.2	9.2
	수산물 가공업	(111)	3.6	3.6	11.7	10.8	24.3
	수산물 유통업	(117)	7.7	4.3	26.5	7.7	17.9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37.0	14.8	11.1	11.1	3.7
	연안 어업	(16)	18.8	25.0	25.0	0.0	6.3
	근해 어업	(24)	4.2	8.3	16.7	25.0	16.7
	원양 어업	(4)	0.0	0.0	0.0	0.0	25.0
	양식 어업	(59)	11.9	11.9	37.3	5.1	8.5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5.3	3.9	7.9	10.5	25.0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0.0	2.9	20.0	11.4	22.9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0.0	8.3	16.7	33.3	25.0
수산물 증개 및 도소매업	(105)	8.6	3.8	27.6	4.8	17.1	

단위: %		50억~100억 원 미만	100억~200억 원 미만	200~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거절/무응답
■ 전 체 ■		8.7	5.0	2.5	4.2	15.4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2.3	3.1	0.8	2.3	18.5
	수산물 가공업	16.2	7.2	4.5	4.5	13.5
	수산물 유통업	8.5	5.1	2.6	6.0	13.7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0.0	0.0	0.0	3.7	18.5
	연안 어업	0.0	0.0	0.0	0.0	25.0
	근해 어업	4.2	16.7	0.0	0.0	8.3
	원양 어업	0.0	0.0	25.0	25.0	25.0
	양식 어업	3.4	0.0	0.0	1.7	20.3
	수산물 가공업: 동물	17.1	6.6	2.6	6.6	14.5
	수산물 가공업: 식물	14.3	8.6	8.6	0.0	11.4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6.7	0.0	0.0	0.0	0.0
수산물 증개 및 도소매업	7.6	5.7	2.9	6.7	15.2	

3) 수산분야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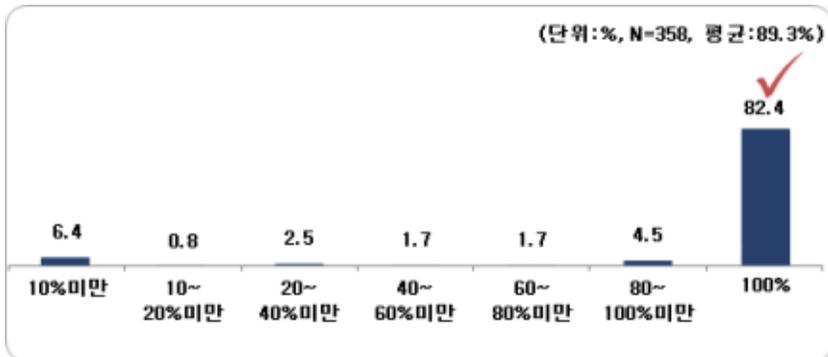
수산업분야 전체 매출 비중에 대해 살펴본 결과, '100%'라는 응답이 8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0% 미만'이 6.4%,

‘80~100% 미만’이 4.5%, ‘20~40% 미만’이 2.5%, ‘40~60% 미만’과 ‘60~80% 미만’이 1.7%, ‘10~20% 미만’이 0.8%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생산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100%’라는 응답이 8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80~100% 미만’이 4.6%, ‘60~80% 미만’이 2.3%, ‘10~20% 미만’과 ‘20~40% 미만’이 1.5%, ‘10% 미만’과 ‘40~60% 미만’이 0.8%,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100%’라는 응답이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0% 미만’이 11.7%, ‘80~100% 미만’이 4.5%, ‘40~60% 미만’이 1.8%, ‘20~40% 미만’과 ‘60~80% 미만’이 0.9%, ‘10~20% 미만’이 0.0%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100%’라는 응답이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0% 미만’이 7.7%, ‘20~40% 미만’이 5.1%, ‘80~100% 미만’이 4.3%, ‘40~60% 미만’이 2.6%, ‘60~80% 미만’이 1.7%, ‘10~20% 미만’이 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4〉 수산분야 매출 비중(수산업)



〈표 6-4〉 업종별 수산분야 매출 비중(수산업)

단위: %		사례수	10% 미만	10~ 20% 미만	20~ 40% 미만
■ 전 체 ■		(358)	6.4	0.8	2.5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0.8	1.5	1.5
	수산물 가공업	(111)	11.7	0.0	0.9
	수산물 유통업	(117)	7.7	0.9	5.1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0.0	0.0	3.7
	연안어업	(16)	0.0	0.0	0.0
	근해어업	(24)	0.0	0.0	0.0
	원양어업	(4)	0.0	0.0	0.0
	양식어업	(59)	1.7	3.4	1.7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11.8	0.0	1.3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11.4	0.0	0.0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8.3	8.3	8.3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7.6	0.0	4.8

단위: %		40~ 60% 미만	60~ 80% 미만	80~ 100% 미만	100%
■ 전 체 ■		1.7	1.7	4.5	82.4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0.8	2.3	4.6	88.5
	수산물 가공업	1.8	0.9	4.5	80.2
	수산물 유통업	2.6	1.7	4.3	77.8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0.0	0.0	3.7	92.6
	연안어업	0.0	6.3	0.0	93.8
	근해어업	0.0	0.0	8.3	91.7
	원양어업	25.0	0.0	25.0	50.0
	양식어업	0.0	3.4	3.4	86.4
	수산물 가공업: 동물	2.6	0.0	5.3	78.9
	수산물 가공업: 식물	0.0	2.9	2.9	82.9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0.0	8.3	16.7	5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2.9	1.0	2.9	81.0

제2절 수산업 노동시장 특성 분석

1. 채용 방식

수산업분야의 근로자 채용방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지인소개’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신문, 인터넷 광고’가 20.7%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도 ‘지인소개’가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신문, 인터넷 광고’가 11.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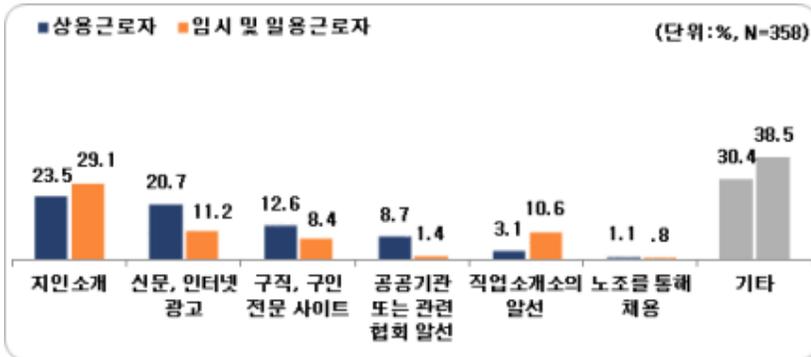
수산물 생산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지인소개’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 알선’이 14.6%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도 ‘지인소개’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직업소개소의 알선’이 20.0%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신문, 인터넷 광고’가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구직, 구인 전문 사이트’가 23.4%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지인소개’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구직, 구인 전문 사이트’가 16.2%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신문, 인터넷 광고’가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지인소개’가 16.2%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지인소개’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신문, 인터넷 광고’가 17.9%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의 지인소개는 연안어업이 높았으며, 신문, 인터넷 광고는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지인소개는 연안어업, 근해어업에서 특히 높고, 신문, 인터넷 광고는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6-5〉 수산업분야 근로자 채용방식



〈표 6-5〉 분야별 수산업 근로자 채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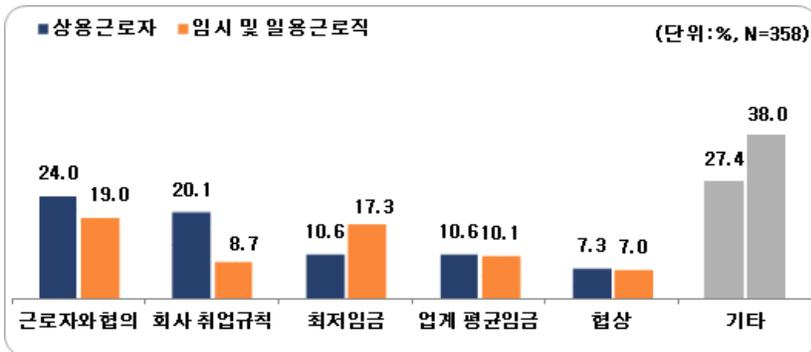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지인 소개	신문, 인터넷 광고	구직, 구인 전문 사이트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 알선	직업 소개소의 알선	노조를 통해 채용	기타
■ 상용근로자 ■		(358)	23.5	20.7	12.6	8.7	3.1	1.1	30.4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33.8	6.9	4.6	14.6	6.9	2.3	30.8
	수산물 가공업	(111)	18.9	27.0	23.4	7.2	1.8	0.9	20.7
	수산물 유통업	(117)	16.2	29.9	11.1	3.4	0.0	0.0	39.3
	소금 채취업	(27)	18.5	3.7	7.4	3.7	11.1	0.0	55.6
중 분 류	연안어업	(16)	62.5	0.0	12.5	6.3	0.0	0.0	18.8
	근해어업	(24)	50.0	4.2	0.0	16.7	8.3	4.2	16.7
	원양어업	(4)	0.0	25.0	0.0	0.0	25.0	25.0	25.0
	양식어업	(59)	28.8	10.2	3.4	22.0	5.1	1.7	28.8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21.1	26.3	23.7	5.3	1.3	0.0	22.4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14.3	28.6	22.9	11.4	2.9	2.9	17.1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25.0	50.0	8.3	8.3	0.0	0.0	8.3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15.2	27.6	11.4	2.9	0.0	0.0	42.9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358)	29.1	11.2	8.4	1.4	10.6	0.8	38.5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39.2	4.6	2.3	2.3	20.0	1.5	30.0
	수산물 가공업	(111)	26.1	11.7	16.2	0.9	9.0	0.9	35.1
	수산물 유통업	(117)	20.5	17.9	7.7	0.9	1.7	0.0	51.3
	소금 채취업	(27)	18.5	3.7	3.7	0.0	48.1	0.0	25.9
중 분 류	연안어업	(16)	50.0	0.0	0.0	6.3	0.0	0.0	43.8
	근해어업	(24)	50.0	4.2	0.0	0.0	8.3	8.3	29.2
	원양어업	(4)	0.0	25.0	0.0	0.0	25.0	0.0	50.0
	양식어업	(59)	44.1	5.1	3.4	3.4	16.9	0.0	27.1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22.4	10.5	17.1	0.0	7.9	1.3	40.8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34.3	14.3	14.3	2.9	11.4	0.0	22.9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8.3	41.7	8.3	0.0	0.0	0.0	41.7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21.9	15.2	7.6	1.0	1.9	0.0	52.4

2. 임금 관련 설문조사

1) 채용 시 임금 결정

근로자 채용 시 임금 결정기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근로자와 협의’가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회사 취업규칙’이 20.1%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근로자와 협의’가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17.3%로 나타났다.

〈그림 6-6〉 근로자 채용 시 임금 결정기준



수산물 생산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근로자와 협의’가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회사 취업규칙’ 15.4%, ‘업계 평균임금’과 ‘협상’이 13.8%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근로자와 협의’가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업계 평균임금’이 16.9%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최저임금’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근로자와 협의’가 21.6%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근로자와 협의’가 12.6%로 나타났다.

〈표 6-6〉 수산업 산업분류별 근로자 채용 시 임금 결정기준

단위: %		사례수	근로자와 협의	회사 취업규칙	최저 임금	업계 평균임금	협상	기타
■ 상용근로자 ■		(358)	24.0	20.1	10.6	10.6	7.3	27.4
대분류	수산물 생산업	(130)	26.9	15.4	2.3	13.8	13.1	28.5
	수산물 가공업	(111)	21.6	20.7	24.3	11.7	4.5	17.1
	수산물 유통업	(117)	23.1	24.8	6.8	6.0	3.4	35.9
중분류	소금 채취업	(27)	18.5	18.5	0.0	7.4	11.1	44.4
	연안어업	(16)	18.8	0.0	6.3	12.5	31.3	31.3
	근해어업	(24)	25.0	25.0	0.0	20.8	12.5	16.7
	원양어업	(4)	0.0	50.0	25.0	25.0	0.0	0.0
	양식어업	(59)	35.6	11.9	1.7	13.6	10.2	27.1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21.1	19.7	26.3	11.8	3.9	17.1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22.9	22.9	20.0	11.4	5.7	17.1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25.0	58.3	0.0	0.0	0.0	16.7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22.9	21.0	7.6	6.7	3.8	38.1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358)	19.0	8.7	17.3	10.1	7.0
대분류	수산물 생산업	(130)	26.9	8.5	10.0	16.9	9.2	28.5
	수산물 가공업	(111)	12.6	9.9	28.8	9.0	7.2	32.4
	수산물 유통업	(117)	16.2	7.7	14.5	3.4	4.3	53.8
중분류	소금 채취업	(27)	48.1	7.4	18.5	3.7	0.0	22.2
	연안어업	(16)	12.5	0.0	12.5	18.8	18.8	37.5
	근해어업	(24)	25.0	12.5	4.2	16.7	16.7	25.0
	원양어업	(4)	0.0	75.0	0.0	0.0	0.0	25.0
	양식어업	(59)	23.7	5.1	8.5	23.7	8.5	30.5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13.2	9.2	30.3	5.3	5.3	36.8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11.4	11.4	25.7	17.1	11.4	22.9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33.3	16.7	8.3	0.0	0.0	41.7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14.3	6.7	15.2	3.8	4.8	55.2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회사 취업규칙’이 24.8%, ‘근로자와 협의’가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6.8%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근로자와 협의’가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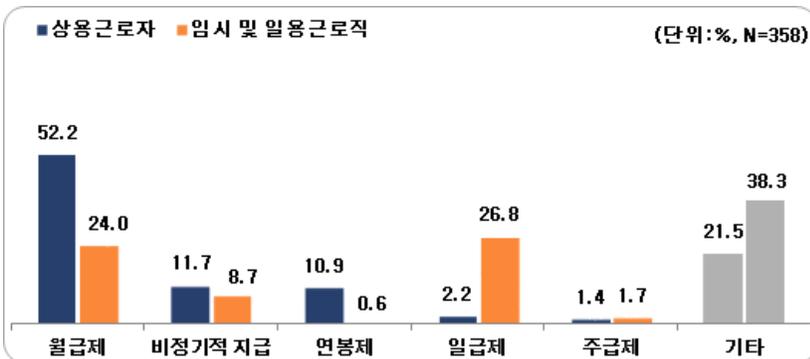
14.5%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자와의 협의’는 양식어업에서 특히 높고, ‘회사 취업규칙’은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 및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자와의 협의’는 소금 채취업에서 특히 높고, ‘최저임금’은 수산물 가공업: 동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임금 지급 제도

임금 지급 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월급제’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정기적 지급’이 11.7%로 나타났다. 임신 및 일용 근로자는 ‘일급제’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월급제’가 24.0%로 나타났다.

〈그림 6-7〉 임금 지급시기



수산물 생산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월급제’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정기적 지급’이 18.5%로 나타났다. 임신 및 일용 근로자는 ‘일급제’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월급제’가 22.3%로 나타났다.

〈표 6-7〉 수산업분류별 임금 지급시기

단위: %		사례수	월급제	비정기적 지급	연봉제	일급제	주급제	기타
■ 상용근로자 ■		(358)	52.2	11.7	10.9	2.2	1.4	21.5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46.2	18.5	10.8	3.1	3.1	18.5
	수산물 가공업	(111)	64.9	9.0	9.0	1.8	0.0	15.3
	수산물 유통업	(117)	47.0	6.8	12.8	1.7	0.9	30.8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33.3	18.5	7.4	0.0	0.0	40.7
	연안어업	(16)	50.0	31.3	6.3	0.0	0.0	12.5
	근해어업	(24)	45.8	16.7	20.8	0.0	12.5	4.2
	원양어업	(4)	50.0	0.0	50.0	0.0	0.0	0.0
	양식어업	(59)	50.8	16.9	6.8	6.8	1.7	16.9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63.2	9.2	10.5	0.0	0.0	17.1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68.6	8.6	5.7	5.7	0.0	11.4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66.7	0.0	33.3	0.0	0.0	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44.8	7.6	10.5	1.9	1.0	34.3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358)	24.0	8.7	0.6	26.8	1.7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22.3	11.5	0.8	36.2	3.1	26.2
	수산물 가공업	(111)	28.8	6.3	0.9	27.0	0.9	36.0
	수산물 유통업	(117)	21.4	7.7	0.0	16.2	0.9	53.8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44.4	7.4	0.0	29.6	0.0	18.5
	연안어업	(16)	12.5	31.3	0.0	12.5	0.0	43.8
	근해어업	(24)	20.8	16.7	4.2	20.8	12.5	25.0
	원양어업	(4)	50.0	0.0	0.0	0.0	0.0	50.0
	양식어업	(59)	13.6	6.8	0.0	54.2	1.7	23.7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25.0	7.9	1.3	25.0	0.0	40.8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37.1	2.9	0.0	31.4	2.9	25.7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41.7	8.3	0.0	8.3	0.0	41.7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19.0	7.6	0.0	17.1	1.0	55.2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월급제’가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정기적 지급’, ‘연봉제’가 9.0%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월급제’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급제’가 27.0%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월급제’가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연봉제’가 12.8%로 나타

났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월급제’가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급제’가 16.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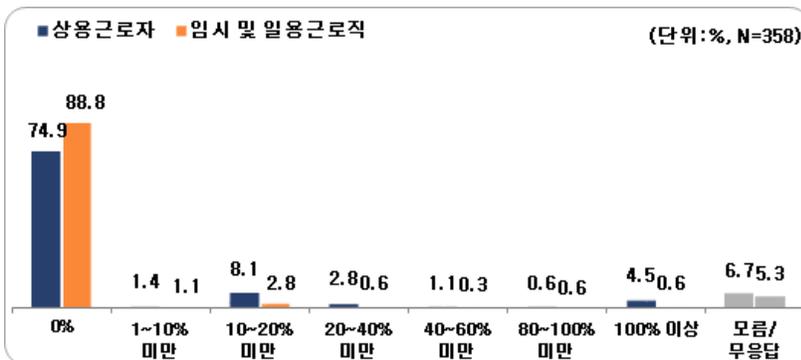
상용근로자의 ‘월급제’는 수산물 가공업 중 식물 가공업에서 특히 높고, ‘비정기적 지급’은 연안어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월급제’는 원양어업에서 특히 높고, ‘일급제’는 양식어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전체 임금 대비 성과급 비율

전체 임금 대비 성과급 비율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0%’가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20% 미만’이 8.1%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0%’가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20% 미만’이 2.8%로 나타났다.

수산물 생산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0%’가 6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20% 미만’이 10.8%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0%’가 8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20% 미만’이 3.1%로 나타났다.

〈그림 6-8〉 전체 임금 대비 성과급 비율



〈표 6-8〉 수산업분야별 전체 임금 대비 성과급 비율

단위: %	사례수	0%	1~10	10~20	20~40	40~60	80~100	100% 이상	모름/ 무응답	
			%	%	%	%	%			
■ 상용근로자 ■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358)	74.9	1.4	8.1	2.8	1.1	0.6	4.5	6.7
	수산물 가공업	(130)	66.9	2.3	10.8	3.8	0.8	0.0	5.4	10.0
	수산물 유통업	(111)	77.5	0.9	5.4	2.7	1.8	1.8	3.6	6.3
중 분 류	수산물 유통업	(117)	81.2	0.9	7.7	1.7	0.9	0.0	4.3	3.4
	소금 채취업	(27)	81.5	0.0	11.1	0.0	0.0	0.0	0.0	7.4
	연안어업	(16)	87.5	0.0	6.3	6.3	0.0	0.0	0.0	0.0
	근해어업	(24)	50.0	4.2	12.5	8.3	0.0	0.0	4.2	20.8
	원양어업	(4)	25.0	0.0	0.0	50.0	0.0	0.0	0.0	25.0
	양식어업	(59)	64.4	3.4	11.9	0.0	1.7	0.0	10.2	8.5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73.7	1.3	6.6	2.6	2.6	2.6	2.6	7.9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85.7	0.0	2.9	2.9	0.0	0.0	5.7	2.9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83.3	0.0	8.3	0.0	0.0	0.0	8.3	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81.0	1.0	7.6	1.9	1.0	0.0	3.8	3.8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358)	88.8	1.1	2.8	0.6	0.3	0.6	0.6	5.3
	수산물 가공업	(130)	83.1	2.3	3.1	1.5	0.0	0.0	0.0	10.0
	수산물 유통업	(111)	92.8	0.9	1.8	0.0	0.0	1.8	0.0	2.7
중 분 류	수산물 유통업	(117)	91.5	0.0	3.4	0.0	0.9	0.0	1.7	2.6
	소금 채취업	(27)	85.2	0.0	0.0	0.0	0.0	0.0	0.0	14.8
	연안어업	(16)	87.5	0.0	0.0	0.0	0.0	0.0	0.0	12.5
	근해어업	(24)	66.7	4.2	8.3	4.2	0.0	0.0	0.0	16.7
	원양어업	(4)	75.0	0.0	0.0	0.0	0.0	0.0	0.0	25.0
	양식어업	(59)	88.1	3.4	3.4	1.7	0.0	0.0	0.0	3.4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90.8	1.3	2.6	0.0	0.0	1.3	0.0	3.9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97.1	0.0	0.0	0.0	0.0	2.9	0.0	0.0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91.7	0.0	8.3	0.0	0.0	0.0	0.0	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91.4	0.0	2.9	0.0	1.0	0.0	1.9	2.9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0%'가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20% 미만'이 5.4%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0%'가 9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20% 미만', '80~100% 미만'이 1.8%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0%'가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20% 미만'이 7.7%로 나타났
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0%'가 9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20% 미만'이 3.4%로 나타났다.

4) 임금 결정방식

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근로자 개인과 협상에 의해
결정'한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업
주 일방적 결정'이 28.2%, '노사 단체협약'이 4.5%, '노사협의회'가
3.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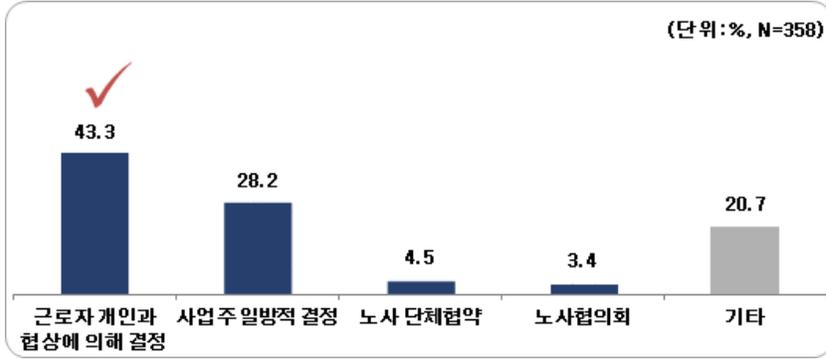
수산물 생산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근로자 개인과 협상에 의해
결정'한다는 응답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업
주 일방적 결정'이 17.7%, '노사 단체협약'이 7.7%, '노사협의회'가
4.6%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근로자 개인과 협상에 의해
결정'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업주 일방적
결정'한다는 응답이 35.1%, '노사 단체협약', '노사협의회'가 1.8% 순
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근로자 개인과 협상에 의해
결정'한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업
주 일방적 결정'이 33.3%, '노사 단체협약', '노사협의회'가 3.4% 순
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개인과 협상'에 의해 결정은 소금 채취업에서 특히 높고,
'사업주 일방적 결정'은 수산물 가공업: 식물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그림 6-9〉 임금 결정방식



〈표 6-9〉 수산업분야별 임금 결정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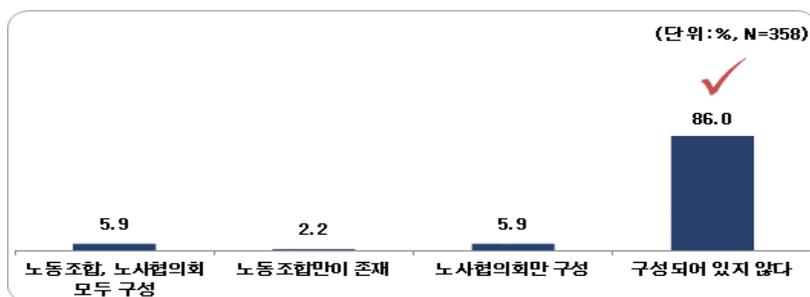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근로자 개인과 협상에 의해 결정	사업주 일방적 결정	노사 단체협약	노사 협의회	기타
■ 전 체 ■		(358)	43.3	28.2	4.5	3.4	20.7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55.4	17.7	7.7	4.6	14.6
	수산물 가공업	(111)	36.0	35.1	1.8	1.8	25.2
	수산물 유통업	(117)	36.8	33.3	3.4	3.4	23.1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74.1	7.4	0.0	0.0	18.5
	연안어업	(16)	56.3	18.8	6.3	6.3	12.5
	근해어업	(24)	50.0	8.3	33.3	8.3	0.0
	원양어업	(4)	0.0	25.0	25.0	25.0	25.0
	양식어업	(59)	52.5	25.4	0.0	3.4	18.6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35.5	34.2	2.6	1.3	26.3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37.1	37.1	0.0	2.9	22.9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50.0	33.3	8.3	0.0	8.3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35.2	33.3	2.9	3.8	24.8

3. 노동조합 관련 설문조사

1) 노동조합 설립 여부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구성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8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모두 구성', '노사협의회만 구성'이 5.9%, '노동조합만이 존재'가 2.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10〉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구성여부



수산물 생산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8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모두 구성'이 8.5%, '노동조합만이 존재'이 5.4%, '노사협의회만 구성'이 3.1%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사협의회만 구성'이 12.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모두 구성'이 2.7%, '노동조합만이 존재'가 0.9%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

답이 9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모두 구성'이 6.0%, '노사협의회만 구성'이 2.6%, '노동조합만이 존재'가 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0〉 수산업분야별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

단위: %		사례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모두 구성	노동조합만 이 존재	노사협의회 만 구성	구성되어 있지 않다
■ 전 체 ■		(358)	5.9	2.2	5.9	86.0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8.5	5.4	3.1	83.1
	수산물 가공업	(111)	2.7	0.9	12.6	83.8
	수산물 유통업	(117)	6.0	0.0	2.6	91.5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0.0	0.0	0.0	100.0
	연안어업	(16)	12.5	0.0	0.0	87.5
	근해어업	(24)	20.8	16.7	8.3	54.2
	원양어업	(4)	75.0	25.0	0.0	0.0
	양식어업	(59)	1.7	3.4	3.4	91.5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3.9	1.3	10.5	84.2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0.0	0.0	17.1	82.9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8.3	0.0	0.0	91.7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5.7	0.0	2.9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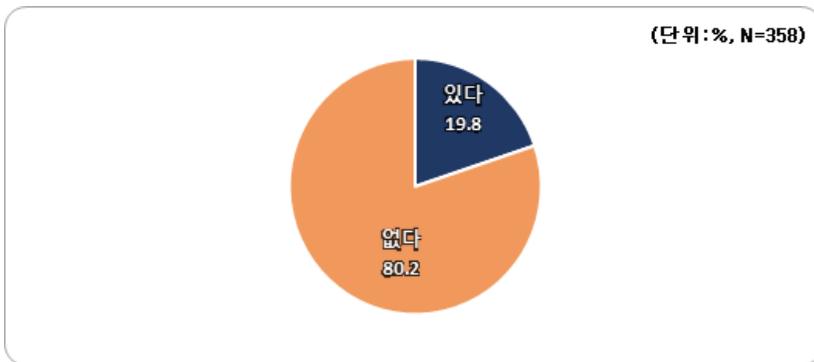
제3절 노동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1. 최저임금제도 적용에 따른 영향력 분석

1) 최저임금액 급여 근로자 존재

최저임금액 급여 근로자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80.2%, '있다'라는 응답이 19.8%로 최저임금액 급여 근로자가 없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1〉 최저임금액 급여 근로자 여부



수산물 생산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88.5%, '있다'라는 응답이 11.5%로 최저임금액 급여 근로자가 없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66.7%, '있다'라는 응답이 33.3%로 최저임금액 급여 근로자가 없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83.8%, '있

다'라는 응답이 16.2%로 최저임금액 급여 근로자가 없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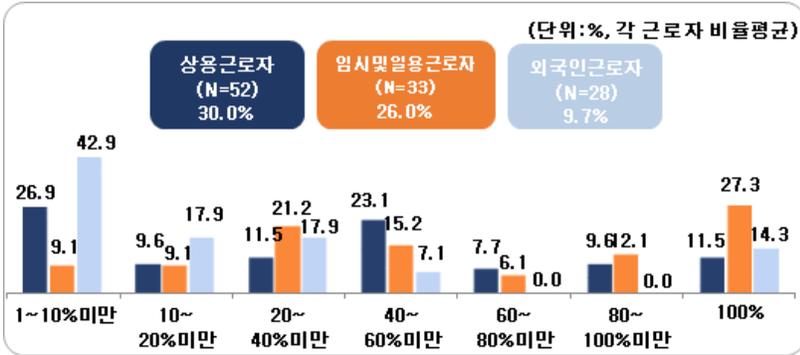
〈표 6-11〉 수산업분야별 최저임금액 급여 근로자 여부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 전 체 ■		(358)	19.8	80.2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11.5	88.5
	수산물 가공업	(111)	33.3	66.7
	수산물 유통업	(117)	16.2	83.8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11.1	88.9
	연안 어업	(16)	6.3	93.8
	근해 어업	(24)	12.5	87.5
	원양 어업	(4)	25.0	75.0
	양식 어업	(59)	11.9	88.1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30.3	69.7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40.0	60.0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16.7	83.3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16.2	83.8

2)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액 급여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비율을 7단계(1~10% 미만, 10~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100% 미만, 100%)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상용근로자 비율은 평균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 평균 26.0%, 외국인 근로자 비율 평균 9.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12〉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비율



수산물생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상용근로자 비율은 10% 미만이 62.5%로 가장 많으며, 10%~20%미만과 20%~40% 미만이 각각 12.2%이다.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임시 일용직이 100%인 비율이 42.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0%~40% 미만 비율이 28.6%, 1%~10% 미만과 10~20% 미만 비율은 모두 14.3%이다.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1%~10% 미만과 20%~40% 미만 비율이 모두 33.3%이며, 100% 외국인이 최저임금을 지급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6.7%이다.

수산물가공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상용근로자 비율은 40%~60% 미만이 33.3%로 가장 많으며, 1%~10%와 100%가 16.7%로 그 다음이다.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임시 일용직은 100%인 비율이 33.3%로 가장 많다.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1%~10% 미만이 44.4%로 가장 많다.

수산물유통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상용근로자 비율은 1%~10% 미만이 28.6%로 가장 많다. 임시 일용직은 7개 구간 모두 9.1% 또는 18.2%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1%~10% 미만이 50.0%로 가장 많다.

〈표 6-12〉 수산업분야별 최저임금 지급 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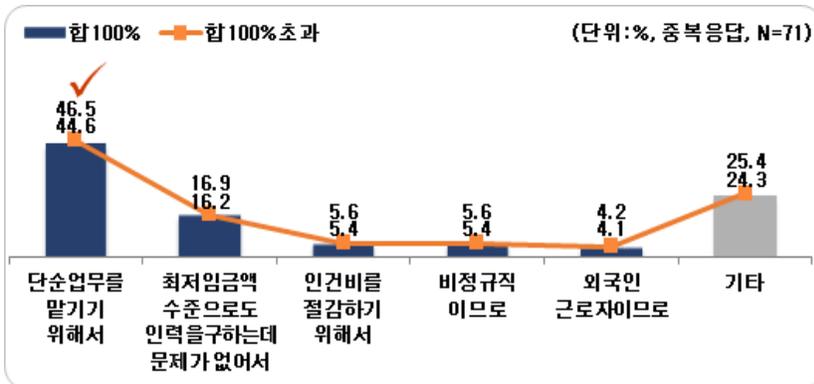
단위: %		사례 수	1~10 % 미만	10~ 20% 미만	20~ 40% 미만	40~ 60% 미만	60~ 80% 미만	80~ 100% 미만	100%
■ 상용근로자 ■		(52)	26.9	9.6	11.5	23.1	7.7	9.6	11.5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8)	62.5	12.5	12.5	0.0	0.0	0.0	12.5
	수산물 가공업	(30)	16.7	6.7	13.3	33.3	6.7	6.7	16.7
	수산물 유통업	(14)	28.6	14.3	7.1	14.3	14.3	21.4	0.0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0)	0.0	0.0	0.0	0.0	0.0	0.0	0.0
	연안어업	(1)	0.0	0.0	0.0	0.0	0.0	0.0	100.0
	근해어업	(2)	100.0	0.0	0.0	0.0	0.0	0.0	0.0
	원양어업	(1)	100.0	0.0	0.0	0.0	0.0	0.0	0.0
	양식어업	(4)	50.0	25.0	25.0	0.0	0.0	0.0	0.0
	수산물 가공업: 동물	(18)	22.2	5.6	11.1	33.3	11.1	5.6	11.1
	수산물 가공업: 식물	(12)	8.3	8.3	16.7	33.3	0.0	8.3	25.0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2)	50.0	0.0	50.0	0.0	0.0	0.0	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2)	25.0	16.7	0.0	16.7	16.7	25.0	0.0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33)	9.1	9.1	21.2	15.2	6.1	12.1	27.3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7)	14.3	14.3	28.6	0.0	0.0	0.0	42.9
	수산물 가공업	(15)	0.0	6.7	26.7	20.0	0.0	13.3	33.3
	수산물 유통업	(11)	18.2	9.1	9.1	18.2	18.2	18.2	9.1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3)	0.0	0.0	66.7	0.0	0.0	0.0	33.3
	연안어업	(0)	0.0	0.0	0.0	0.0	0.0	0.0	0.0
	근해어업	(1)	0.0	0.0	0.0	0.0	0.0	0.0	100.0
	원양어업	(0)	0.0	0.0	0.0	0.0	0.0	0.0	0.0
	양식어업	(3)	33.3	33.3	0.0	0.0	0.0	0.0	33.3
	수산물 가공업: 동물	(10)	0.0	10.0	20.0	30.0	0.0	10.0	30.0
	수산물 가공업: 식물	(5)	0.0	0.0	40.0	0.0	0.0	20.0	40.0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	0.0	0.0	0.0	0.0	0.0	100.0	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	20.0	10.0	10.0	20.0	20.0	10.0	10.0
	■ 외국인 근로자 ■	(28)	42.9	17.9	17.9	7.1	0.0	0.0	14.3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6)	33.3	0.0	33.3	16.7	0.0	0.0	16.7
	수산물 가공업	(18)	44.4	22.2	16.7	5.6	0.0	0.0	11.1
	수산물 유통업	(4)	50.0	25.0	0.0	0.0	0.0	0.0	25.0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0)	0.0	0.0	0.0	0.0	0.0	0.0	0.0
	연안어업	(0)	0.0	0.0	0.0	0.0	0.0	0.0	0.0
	근해어업	(3)	33.3	0.0	33.3	33.3	0.0	0.0	0.0
	원양어업	(0)	0.0	0.0	0.0	0.0	0.0	0.0	0.0
	양식어업	(3)	33.3	0.0	33.3	0.0	0.0	0.0	33.3
	수산물 가공업: 동물	(12)	41.7	25.0	25.0	8.3	0.0	0.0	0.0
	수산물 가공업: 식물	(6)	50.0	16.7	0.0	0.0	0.0	0.0	33.3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0)	0.0	0.0	0.0	0.0	0.0	0.0	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4)	50.0	25.0	0.0	0.0	0.0	0.0	25.0

3) 최저임금액 지급 이유

최저임금액 급여 근로자가 있는 기업(N=71)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액 급여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복응답 기준으로 '단순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액 수준으로도 인력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어서'가 16.9%,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므로'가 5.6%, '외국인 근로자이므로'가 4.2%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생산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복응답 기준으로 '단순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액 수준으로도 인력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어서'와 '외국인 근로자이므로'가 13.3%,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와 '비정규직이므로'가 각각 0.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13〉 최저임금액 급여 이유



〈표 6-13〉 최저임금액 급여 이유

단위: %		사례수	단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인력 구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인건비 절감 하기 위해서	비 정규직 이므로	외국인 근로자 이므로	기타
■ 전 체 ■		(71)	46.5	16.9	5.6	5.6	4.2	25.4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5)	53.3	13.3	0.0	0.0	13.3	26.7
	수산물 가공업	(37)	40.5	24.3	8.1	5.4	2.7	21.6
	수산물 유통업	(19)	52.6	5.3	5.3	10.5	0.0	31.6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3)	66.7	0.0	0.0	0.0	0.0	66.7
	연안 어업	(1)	0.0	100.0	0.0	0.0	0.0	0.0
	근해 어업	(3)	33.3	0.0	0.0	0.0	66.7	0.0
	원양 어업	(1)	0.0	100.0	0.0	0.0	0.0	0.0
	양식 어업	(7)	71.4	0.0	0.0	0.0	0.0	28.6
	수산물 가공업: 동물	(23)	39.1	30.4	13.0	4.3	0.0	17.4
	수산물 가공업: 식물	(14)	42.9	14.3	0.0	7.1	7.1	28.6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2)	0.0	0.0	0.0	50.0	0.0	5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7)	58.8	5.9	5.9	5.9	0.0	29.4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복응답 기준으로 '단순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액 수준으로도 인력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어서'가 24.3%,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가 8.1%, '비정규직이므로'가 5.4%, '외국인근로자이므로'가 2.7%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복응답 기준으로 '단순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이므로'가 10.5%, '최저임금액 수준으로도 인력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어서'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가 5.3%, '외국인근로자이므로'가 0.0% 순으로 나타났다.

4)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해지 근로자 여부

최저임금액 급여 근로자가 있는 기업(N=71)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액 상승으로 인한 고용해지 근로자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98.6%, ‘있다’라는 응답이 1.4%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해지 근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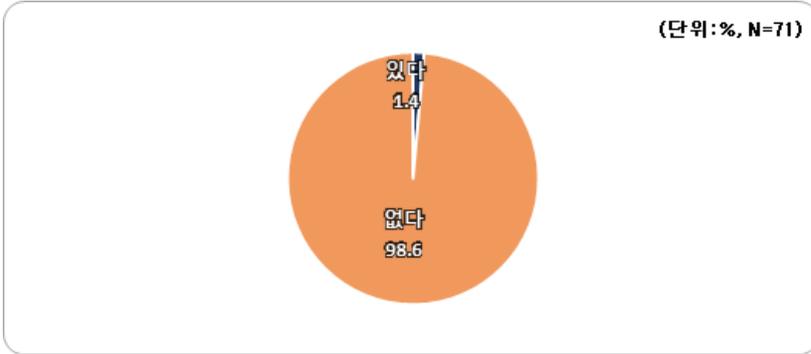
수산물 생산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100.0%, ‘있다’라는 응답이 0.0%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해지 근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97.3%, ‘있다’라는 응답이 2.7%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해지 근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100.0%, ‘있다’라는 응답이 0.0%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해지 근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액 상승으로 인한 고용해지 근로자(N=1)는 정규직인 50대 이상 근로자로 나타났다.

〈그림 6-14〉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해지 근로자 여부



〈표 6-14〉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해지 근로자 여부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 전 체 ■		(71)	1.4	98.6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5)	0.0	100.0
	수산물 가공업	(37)	2.7	97.3
	수산물 유통업	(19)	0.0	100.0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3)	0.0	100.0
	연안어업	(1)	0.0	100.0
	근해어업	(3)	0.0	100.0
	원양어업	(1)	0.0	100.0
	양식어업	(7)	0.0	100.0
	수산물 가공업: 동물	(23)	4.3	95.7
	수산물 가공업: 식물	(14)	0.0	100.0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2)	0.0	10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7)	0.0	100.0

5)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가. 순이익

최저임금이 수산업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의견은 2.5%인데 비해 부정적인 의견은 40.5%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수산물 생산업은 부정적 의견이 31.5%로 가장 낮은 데 비해 수산물 가공업은 52.3%, 수산물 유통업은 39.3%로 비교적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산물 생산업에서는 소금 채취업, 수산물 가공업에서는 동물/식물, 수산물 유통업에서는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의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표 6-15〉 최저임금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사례수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영향 없음	대체로 긍정적	부정	보통	긍정
■ 전 체 ■		(358)	14.5	26.0	57.0	2.5	40.5	57.0	2.5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12.3	19.2	63.8	4.6	31.5	63.8	4.6
	수산물 가공업	(111)	18.9	33.3	45.0	2.7	52.3	45.0	2.7
	수산물 유통업	(117)	12.8	26.5	60.7	0.0	39.3	60.7	0.0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18.5	22.2	59.3	0.0	40.7	59.3	0.0
	연안 어업	(16)	12.5	6.3	75.0	6.3	18.8	75.0	6.3
	근해 어업	(24)	8.3	20.8	66.7	4.2	29.2	66.7	4.2
	원양 어업	(4)	0.0	0.0	100.0	0.0	0.0	100.0	0.0
	양식 어업	(59)	11.9	22.0	59.3	6.8	33.9	59.3	6.8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19.7	31.6	46.1	2.6	51.3	46.1	2.6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17.1	37.1	42.9	2.9	54.3	42.9	2.9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0.0	8.3	91.7	0.0	8.3	91.7	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14.3	28.6	57.1	0.0	42.9	57.1	0.0

나. 제품의 가격

최저임금이 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의견은 1.1%인데 비해 부정적인 의견은 33.0%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수산물 생

산업은 부정적 의견이 28.5%로 가장 낮은 데 비해 수산물 가공업은 41.4%, 수산물 유통업은 29.9%로 비교적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산물 유통업에서 중개 및 도소매업의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표 6-16〉 최저임금이 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사례수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영향 없음	대체로 긍정적	부정	보통	긍정
■ 전 체 ■		(358)	10.3	22.6	65.9	1.1	33.0	65.9	1.1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13.8	14.6	70.0	1.5	28.5	70.0	1.5
	수산물 가공업	(111)	8.1	33.3	57.7	0.9	41.4	57.7	0.9
	수산물 유통업	(117)	8.5	21.4	69.2	0.9	29.9	69.2	0.9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29.6	7.4	63.0	0.0	37.0	63.0	0.0
	연안어업	(16)	12.5	6.3	81.3	0.0	18.8	81.3	0.0
	근해어업	(24)	12.5	20.8	66.7	0.0	33.3	66.7	0.0
	원양어업	(4)	0.0	0.0	100.0	0.0	0.0	100.0	0.0
	양식어업	(59)	8.5	18.6	69.5	3.4	27.1	69.5	3.4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6.6	32.9	59.2	1.3	39.5	59.2	1.3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11.4	34.3	54.3	0.0	45.7	54.3	0.0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0.0	8.3	91.7	0.0	8.3	91.7	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9.5	22.9	66.7	1.0	32.4	66.7	1.0	

다. 이직률

최저임금이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의견은 0.8%인 데 비해 부정적인 의견은 12.8%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86.3%가 영향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수산물 생산업은 부정적 의견이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수산물 가공업은 13.5%, 수산물 유통업은 9.4%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산물 생산업에서 소금 채취업의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표 6-17〉 최저임금이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사례수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영향 없음	대체로 긍정적	부정	보통	긍정
■ 전 체 ■		(358)	4.7	8.1	86.3	0.8	12.8	86.3	0.8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6.2	9.2	84.6	0.0	15.4	84.6	0.0
	수산물 가공업	(111)	4.5	9.0	84.7	1.8	13.5	84.7	1.8
	수산물 유통업	(117)	3.4	6.0	89.7	0.9	9.4	89.7	0.9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18.5	7.4	74.1	0.0	25.9	74.1	0.0
	연안 어업	(16)	12.5	0.0	87.5	0.0	12.5	87.5	0.0
	근해 어업	(24)	0.0	16.7	83.3	0.0	16.7	83.3	0.0
	원양 어업	(4)	0.0	0.0	100.0	0.0	0.0	100.0	0.0
	양식 어업	(59)	1.7	10.2	88.1	0.0	11.9	88.1	0.0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6.6	9.2	82.9	1.3	15.8	82.9	1.3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0.0	8.6	88.6	2.9	8.6	88.6	2.9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0.0	0.0	100.0	0.0	0.0	100.0	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3.8	6.7	88.6	1.0	10.5	88.6	1.0

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전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12.3%, 영향이 없다가 85.8%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의 생산성향상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8〉 최저임금이 근로자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사례수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영향 없음	대체로 긍정적	부정	보통	긍정
■ 전 체 ■		(358)	3.6	8.7	85.8	2.0	12.3	85.8	2.0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4.6	11.5	82.3	1.5	16.2	82.3	1.5
	수산물 가공업	(111)	2.7	8.1	85.6	3.6	10.8	85.6	3.6
	수산물 유통업	(117)	3.4	6.0	89.7	0.9	9.4	89.7	0.9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14.8	11.1	74.1	0.0	25.9	74.1	0.0
	연안어업	(16)	0.0	6.3	93.8	0.0	6.3	93.8	0.0
	근해어업	(24)	4.2	8.3	83.3	4.2	12.5	83.3	4.2
	원양어업	(4)	0.0	0.0	100.0	0.0	0.0	100.0	0.0
	양식어업	(59)	1.7	15.3	81.4	1.7	16.9	81.4	1.7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2.6	10.5	84.2	2.6	13.2	84.2	2.6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2.9	2.9	88.6	5.7	5.7	88.6	5.7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0.0	0.0	91.7	8.3	0.0	91.7	8.3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3.8	6.7	89.5	0.0	10.5	89.5	0.0	

마. 기계화 및 자동화

기계화 및 자동화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산업 전체로 ‘영향이 없다’라고 대답한 것이 89.9%로 기계화 및 자동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수산부문의 경우 기계화와 노동의 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6-19〉 최저임금이 기계화 및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사례수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영향 없음	대체로 긍정적
■ 전 체 ■		(358)	0.8	5.3	89.9	3.6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0.8	4.6	90.0	4.6
	수산물 가공업	(111)	0.9	3.6	90.1	5.4
	수산물 유통업	(117)	0.9	7.7	89.7	0.9

단위: %		사례수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영향 없음	대체로 긍정적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3.7	7.4	81.5	7.4
	연안 어업	(16)	0.0	0.0	100.0	0.0
	근해 어업	(24)	0.0	4.2	95.8	0.0
	원양 어업	(4)	0.0	0.0	100.0	0.0
	양식 어업	(59)	0.0	5.1	88.1	6.8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0.0	2.6	93.4	3.9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2.9	5.7	82.9	8.6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0.0	0.0	100.0	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1.0	8.6	88.6	1.0

주: 완전 긍정적이 수산물 유통업이 0.9%, 전체로는 0.3%임

〈표 6-19〉 최저임금이 기계화 및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계속)

단위: %		완전 긍정적	부정	보통	긍정	계
■ 전 체 ■		0.3	6.1	89.9	3.9	100.0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0.0	5.4	90.0	4.6	100.0
	수산물 가공업	0.0	4.5	90.1	5.4	100.0
	수산물 유통업	0.9	8.5	89.7	1.7	100.0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0.0	11.1	81.5	7.4	100.0
	연안 어업	0.0	0.0	100.0	0.0	100.0
	근해 어업	0.0	4.2	95.8	0.0	100.0
	원양 어업	0.0	0.0	100.0	0.0	100.0
	양식 어업	0.0	5.1	88.1	6.8	100.0
	수산물 가공업: 동물	0.0	2.6	93.4	3.9	100.0
	수산물 가공업: 식물	0.0	8.6	82.9	8.6	100.0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0.0	0.0	100.0	0.0	10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	9.5	88.6	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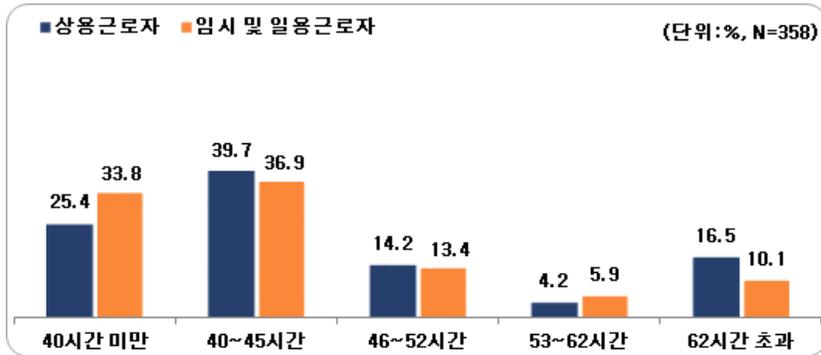
2. 근로시간 단축 영향 분석

1) 주당 평균 근로시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40~45시간'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0시간 미만'이 25.4%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도 '40~45시간'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0시간 미만'이 33.8%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는 경우가 상용 근로자는 20.7%, 임시직은 16.0%로 나타났다.

〈그림 6-15〉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수산물 생산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주당 평균 '40시간 미만'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0~45시간이 24.6%, 그리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 되는 경우도 21.5%가 되었다. 임시직의 경우 근로자 평균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가 35.4%이며, 근로자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5.4%에 달했다.

〈표 6-20〉 분야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사례수	40시간 미만	40~45시간	46~52시간	53~62시간	62시간 초과
■ 상용근로자 ■		(358)	25.4	39.7	14.2	4.2	16.5
대분류	수산물 생산업	(130)	33.1	24.6	20.8	5.4	16.2
	수산물 가공업	(111)	18.0	59.5	9.9	2.7	9.9
	수산물 유통업	(117)	23.9	37.6	11.1	4.3	23.1

단위: %		사례수	40시간 미만	40 ~45시간	46 ~52시간	53 ~62시간	62시간 초과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55.6	18.5	0.0	0.0	25.9
	연안어업	(16)	25.0	25.0	31.3	18.8	0.0
	근해어업	(24)	20.8	37.5	25.0	4.2	12.5
	원양어업	(4)	50.0	25.0	25.0	0.0	0.0
	양식어업	(59)	28.8	22.0	25.4	5.1	18.6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18.4	57.9	10.5	3.9	9.2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17.1	62.9	8.6	0.0	11.4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33.3	25.0	33.3	0.0	8.3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22.9	39.0	8.6	4.8	24.8
■임시 및 일용근로자■	(358)	33.8	36.9	13.4	5.9	10.1	
대 분 류	수산물 생산업	(130)	35.4	26.9	22.3	6.9	8.5
	수산물 가공업	(111)	32.4	51.4	5.4	4.5	6.3
	수산물 유통업	(117)	33.3	34.2	11.1	6.0	15.4
중 분 류	소금 채취업	(27)	59.3	14.8	7.4	3.7	14.8
	연안어업	(16)	18.8	31.3	43.8	6.3	0.0
	근해어업	(24)	29.2	29.2	25.0	12.5	4.2
	원양어업	(4)	75.0	25.0	0.0	0.0	0.0
	양식어업	(59)	28.8	30.5	23.7	6.8	10.2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34.2	50.0	5.3	3.9	6.6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28.6	54.3	5.7	5.7	5.7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33.3	41.7	16.7	0.0	8.3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33.3	33.3	10.5	6.7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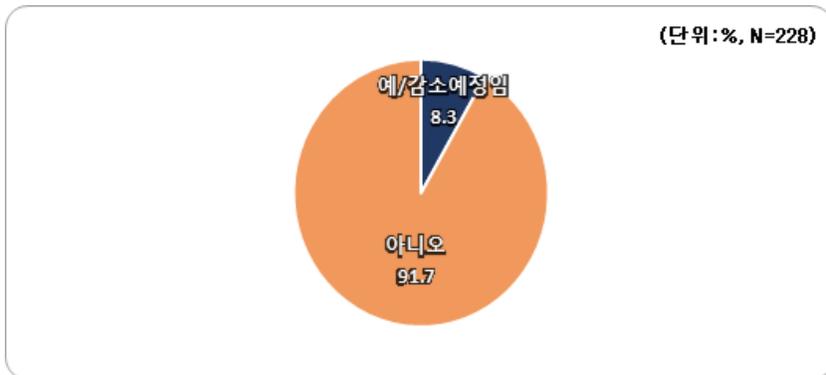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40~45시간'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0시간 미만'이 18.0%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도 '40~45시간'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0시간 미만'이 32.4%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는 '40~45시간'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0시간 미만'이 23.9%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도 '40~45시간'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0시간 미만'이 33.3%로 나타났다.

2) 고용자 임금 감소여부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인 어로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운송업을 제외한 기업(N=228)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고용자 임금 감소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91.7%, '예/감소예정임'이라는 응답이 8.3%로 고용자 임금을 감소한다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6〉 개정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고용자 임금 감소여부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87.4%, '있다/감소예정'이라는 응답이 12.6%로 고용자 임금을 감소한다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95.7%, '있다/감소예정'이라는 응답이 4.3%로 고용자 임금을 감소한다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산물 가공업 중 수산물 가공업: 동물에서 고용자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다.

〈표 6-21〉 분야별 임금 감소 여부

단위: %		사례수	있다 / 감소예정	없다
■ 전 체 ■		(228)	8.3	91.7
대 분 류	수산물 가공업	(111)	12.6	87.4
	수산물 유통업	(117)	4.3	95.7
중 분 류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17.1	82.9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2.9	97.1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8.3	91.7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05)	3.8	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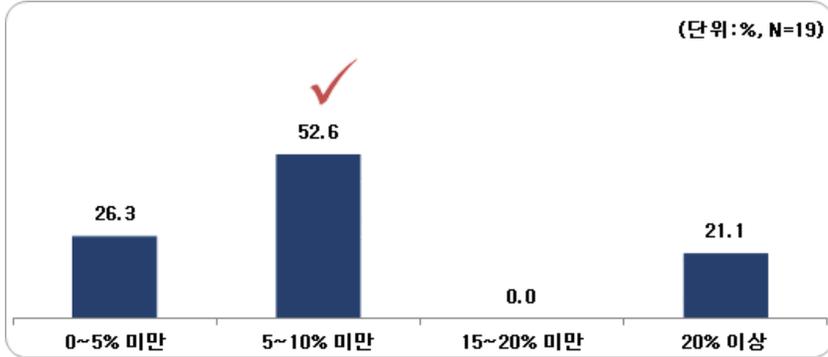
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비율

개정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고용자 임금 감소 또는 감소예정인 기업(N=19)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비율에 대해 살펴본 결과, '5~10% 미만'이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0~5% 미만'이 26.3%, '20% 이상'이 21.1%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5~10% 미만'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0% 이상'이 28.6%, '0~5% 미만'이 21.4%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5~10% 미만'이라는 응답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0~5% 미만'이 40.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17〉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비율



〈표 6-22〉 분야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비율

단위: %		사례수	0~5% 미만	5~10% 미만	15~20% 미만	20% 이상
■ 전 체 ■		(19)	26.3	52.6	0.0	21.1
대 분 류	수산물 가공업	(14)	21.4	50.0	0.0	28.6
	수산물 유통업	(5)	40.0	60.0	0.0	0.0
	수산물 가공업: 동물	(13)	15.4	53.8	0.0	30.8
중 분 류	수산물 가공업: 식물	(1)	100.0	0.0	0.0	0.0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	100.0	0.0	0.0	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4)	25.0	75.0	0.0	0.0

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지원대책 활용(예정)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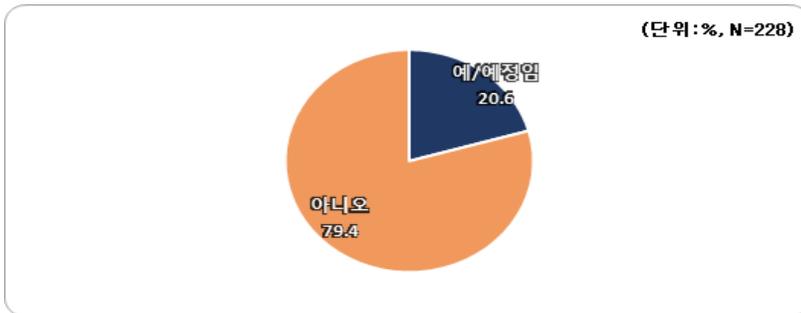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인 어로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운송업을 제외한 기업(N=228)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지원대책 활용(예정)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79.4%, ‘있다’라는 응답이 20.6%로 정부지원대책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74.8%, ‘있

다'라는 응답이 25.2%로 정부지원대책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83.8%, '예/예정임'라는 응답이 16.2%로 정부지원대책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8〉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지원대책 활용(예정)여부



〈표 6-2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지원대책 활용(예정)여부

		단위: %	사례수	예 / 예정임	아니오
■ 전 체 ■			(228)	20.6	79.4
대 분 류	수산물 가공업		(111)	25.2	74.8
	수산물 유통업		(117)	16.2	83.8
중 분 류	수산물 가공업: 동물		(76)	26.3	73.7
	수산물 가공업: 식물		(35)	22.9	77.1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2)	8.3	91.7
	수산물 증개 및 도소매업		(105)	17.1	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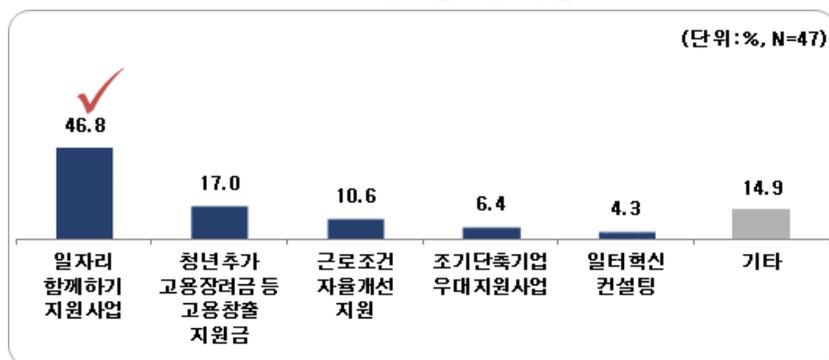
5) 정부지원 대책 활용예정인 제도

정부지원대책 활용 또는 활용예정인 기업(N=47)을 대상으로 활용 또는 활용예정인 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고용창출 지원금’이 17.0%,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이 10.6%, ‘조기단축기업 우대지원사업’이 6.4%, ‘일터혁신컨설팅’이 4.3%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고용창출 지원금’이 17.9%,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이 7.1%, ‘조기단축기업 우대지원사업’이 3.6%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라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고용창출 지원금’이 15.8%,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이 15.8%, ‘조기단축기업 우대지원사업’이 10.5%, ‘일터혁신컨설팅’이 10.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19〉 활용 또는 활용예정인 제도



〈표 6-24〉 분야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단위: %		사례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조기단축 기업 우대지원 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등 고용창출 지원금	기타
■ 전 체 ■		(47)	46.8	6.4	4.3	10.6	17.0	14.9
대 규모	수산물 가공업	(28)	53.6	3.6	0.0	7.1	17.9	17.9
	수산물 유통업	(19)	36.8	10.5	10.5	15.8	15.8	10.5
중 규모	수산물 가공업: 동물	(20)	50.0	5.0	0.0	10.0	15.0	20.0
	수산물 가공업: 식물	(8)	62.5	0.0	0.0	0.0	25.0	12.5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	0.0	0.0	100.0	0.0	0.0	0.0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8)	38.9	11.1	5.6	16.7	16.7	11.1

6) 정부지원대책 미활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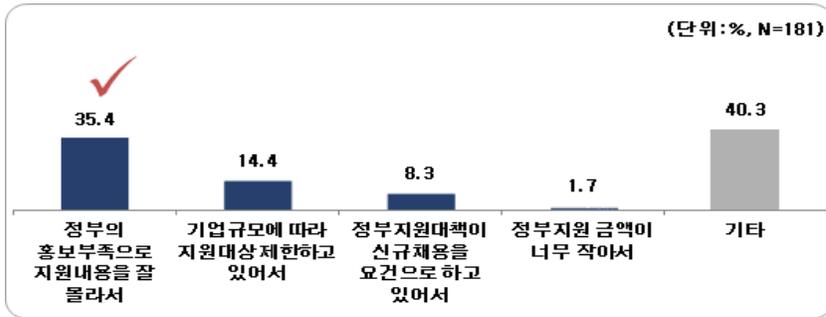
정부지원대책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대책 미활용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지원내용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제한하고 있어서’가 14.4%, ‘정부지원대책이 신규채용을 요건으로 하고있어서’가 8.3%, ‘정부지원금액이 너무 작아서’가 1.7%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지원내용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제한하고 있어서’가 20.5%, ‘정부지원대책이 신규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가 10.8%, ‘정부지원금액이 너무 작아서’가 2.4%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지원내용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

로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제한하고 있어서’가 9.2%, ‘정부지원 대책이 신규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가 6.1%, ‘정부지원금액이 너무 작아서’가 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20〉 분야별 정부지원대책 미활용 이유



〈표 6-25〉 분야별 정부지원대책 미활용 이유

단위: %		사례수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지원내용을 잘 몰라서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제한하고 있어서	정부지원 대책이 신규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정부지원 금액이 너무 작아서	기타
■ 전 체 ■		(181)	35.4	14.4	8.3	1.7	40.3
대 분 류	수산물 가공업	(83)	28.9	20.5	10.8	2.4	37.3
	수산물 유통업	(98)	40.8	9.2	6.1	1.0	42.9
중 분 류	수산물 가공업: 동물	(56)	26.8	16.1	8.9	3.6	44.6
	수산물 가공업: 식물	(27)	33.3	29.6	14.8	0.0	22.2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1)	36.4	0.0	9.1	0.0	54.5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87)	41.4	10.3	5.7	1.1	41.4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1.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1) 수산물 생산업

수산물 생산업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해양수산업특수분류상의 대분류에 해당된다. 중분류에는 어로어업, 양식어업, 어업관련서비스업, 소금 채취업 등이 이에 속한다. 표준산업분류상에는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기타비금속광물광업으로 분류된다.

수산물 생산업의 노동시장은 업종별로 매우 이질적이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어로어업과 양식어업, 소금 채취업의 생산 장소, 노동방법, 판매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나, 이들 업종은 다른 산업과 달

리 노동, 자본 등의 인위적인 노력이 중요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생산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산업적 특징은 노동시장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먼저 노동의 비유동성이다. 수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촌지역에서 자라서 가족노동 구성원으로 참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산업에 흡수된다. 또한 일단 수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게 되면 타 업종에 전업하기가 쉽지 않다.

2017년 해양수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산물 생산업에 종사자는 사업체 등록하지 않은 어업인을 포함하여 2017년 기준으로 619,948명에 달한다. 이 중 사업체 종사자는 총 477,382명이다. 어로어업이 102,693명, 양식어업이 371,467명, 어업관련서비스업은 418명, 소금 채취업은 2,804명이다. 수산물 생산업은 임시 및 일용직과 무급가족이 많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산물 생산업은 임시 및 일용직의 비율은 어로어업이 24.4%, 양식어업이 86.5%, 소금 채취업이 16.3% 등이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3.24%인데, 소금 채취업이 31.9%로 가장 높다. 타 산업에 비해 임시일용직이 많거나 무급가족종사자가 많다.

수산물 생산업에 있어서 생산의 불확실성은 선원 등의 임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깃가림제 유형의 비율급제가 많이 퍼져있다. 완전고정급제, 완전깃가림제와 함께 고정급병용깃가림제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완전월급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어로어업 임금은 지역별, 업종별로 매우 상이하다. 또한 노조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임금제는 업종별로 경영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로어업의 경우 선장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주의 경우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선원의 업무를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장, 어로장을 중심으로 채용한다. 나아가 선장이나 어로장을 중심으로 단체 채용을 하기도 한다. 양식업의 경우 업체 간 협업이나 소개를 통한 일용직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노동시간의 불명확성이다. 수산물 생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출퇴근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승선 시간 이외의 조업준비부터 하역까지 노동시간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계절성을 지녀 인력수요가 상시 고른 것이 아니다. 어로어업은 출어할 때, 양식어업은 입식, 종패, 수확, 어장관리 등 일시적으로 노동수요가 급증하기도 한다.

어선어업종사자 중 「선원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별도로 책정하게 된다. 통상 최저임금 수준은 육상근로자의 127~128%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육상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임금 인상률을 보여주었다.

외국인임금 역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선원법」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시민단체에서 한국인 선원과 동등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며,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의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사업주에 따라 숙식비 등을 공제하기도 하고 공제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숙식비 등 필수 생활 비용 부분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2)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가공업은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산업이다. 수산물 가공업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상의 수산업 중의 하나이다. 수산물 가공업은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식품품제조업의 세분류 수산물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포함된다. 또한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유기질 비료 및 상토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제조업 등도 포함된다. 수산가공산업에 대한 통계는 수산물가공업통계와 해양수산업통계조사에서 조사된다. 수산물가공업통계상 2018년도 사업체수는 5,003명, 종사자 73,197명이다. 그러나 해양수산업통계조사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수산물가공업체 5,934개, 종사자는 115,789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의 종사지위별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평균 7.66명 중 대표 1명(약 13%), 상용근로자 4.73명(약 61.7%), 임시 및 일용근로자 1.3명(약 17%), 무급 가족봉사자 0.58명(약 7.6%), 기타 0.06명(약 0.8%)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업의 여성종사자 비율이 약 59%이며, 외국인 고용률은 5.8%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종별로 기능직이 66.6%로 단순노동의 특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공업 종사자 연령도 50대 이상이 47.4%로 고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산물 가공업의 월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2018년의 상승률은 한국인 상용근로자는 6.5%,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8.1%, 외국인은 15.4%로 2017년도 각 상승률 4.6%, 3.9%, 4.6%보다 대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 중 301만 원 이상을 받는 한국인 상용근로자 비율은 1.3%로 수산물 생산업의 38.8%, 수산물 유통업의 4.5%보다 낮은 수준이다.

수산물 가공업은 수산물의 생산 특성에 따라 고용형태가 좌우된다. 생산이 원료수급에 따라 계절적인 특성을 지니는 사업체의 경우

종사자도 임시일용직이 많다. 그러나 상시 작업을 하는 사업체의 경우 상용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공형태가 단순할수록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의 노령화와 수산물작업 환경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상 최저임금제나 52시간근무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수산물 유통업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업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수산물 유통업은 표준산업분류상 ‘G.도매 및 소매업’과 ‘H.운수 및 창고업’으로 분류되며, 해양수산업특수분류상에는 ‘수산물 유통업’으로 분류된다.

수산물 유통업은 2000년 이후 전통적인 소비지 유통 중심의 도매 시장이 축소되고 대형소매업체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를 보면 도매업은 10억 원 이하가 59.1%, 소매업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업체는 전체의 59.2%로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종사자 규모는 종사자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도매업은 87.9%, 가공식품도매업은 79.3%, 수산물소매업은 98.8%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2019년 해양수산업통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수산물 유통업체는 42,997개, 종사자는 115,789명이다. 대부분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으로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은 69개 업체 1,143명이다. 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무급가족 비율이 19.46%으로 수산물 생산업 7.5%, 가공

업 7.1%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산물 유통업은 여성종사자가 많은데 여성대표가 44.2%로 수산물 생산업의 9.0%, 수산물 가공업의 34.1%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의 47.7%가 여성인데, 종사자 중 상용직의 여성비율은 38.5%이고, 임시 및 일용직의 여성비율은 74.8%로 매우 높다.

수산물도소매업은 업무운영이 비교적 자율적인 형태이며,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가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

2. 노동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1)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액 지급에 대하여 수산물 생산업은 11.5%, 수산물 가공업은 33.3%, 수산물 유통업은 16.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복응답기준으로 '단순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해지여부에 대해 '있다'라는 응답이 1.4%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해지 근로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40.5%가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 가공업은 52.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이 33.0%로 제품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산물 가공업은 41.4%로 비교적 높았다.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이 12.8%로 그다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생산성 역시 최저

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긍정'이 2.0%이고 '보통'이 85.8%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계화 및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없음'이 89.9%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자본재로 즉각 대체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로시간 단축 영향

상용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 53시간이 넘는 업체는 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물 유통업이 27.4%로 나타났다는데 62시간 초과 부분이 23.1%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7.0%인데 이 역시 수산물 유통업은 21.4%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에서 고용자 임금 감소 여부에 대해 91.7%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12.6%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감소비율은 5~10% 미만인 52.6%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하여 정부지원대책에 대하여 '있다'라고 대답한 업체는 20.6%에 불과하였다. 정부지원대책 활용예정인 제도는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사업'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고용창출 지원금'이 17.0%로 나타났다.

정부지원대책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35.4%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제한하고 있어서'가 14.4%, '정부지원대책이 신규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가 8.3%이다,

제2절 정책제언

1. 최저임금 산정 시 수산업 특성 반영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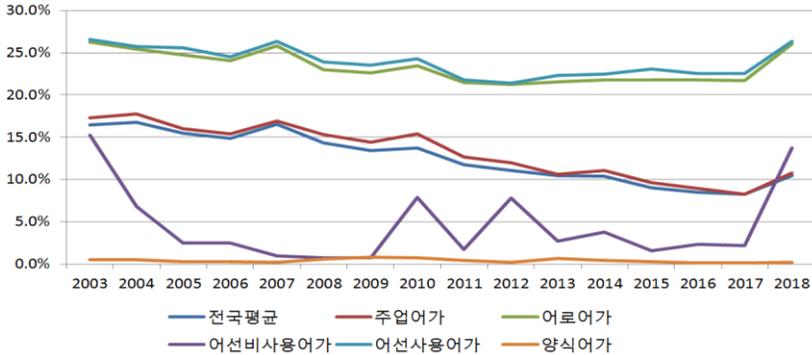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산업의 노동시장 구조는 일반 산업과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외국인 취업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수확되는 수산물의 계절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산업분야의 최저임금은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박 선원만 별도의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18년 통계상 「선원법」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근해어업의 경우 전년에 비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 어가의 경우 노무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7-1〉 참조). 2018년 어업경영비 중 노무비의 비율이 8.2%에서 10.5%로 증가했고, 어선사용어가는 22.5%에서 26.4%로, 어선 비사용어가는 2.2%에서 13.7%로 증가하였다.

수산물 가공업의 월평균 임금 역시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2018년의 상승률은 한국인 상용근로자는 6.5%,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8.1%, 외국인은 15.4%로 2017년도 각 상승률 4.6%, 3.9%, 4.6%보다 대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수산업은 일용직 및 임시근로자가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산물 가공업은 52.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41.4%로 비교적 높았다.

〈그림 7-1〉 어가경제의 비용 중 노무비 비율의 증대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년도(검색일, 2019.10.28.)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영향률 산정 시 농어업을 함께 묶어놓고 분석을 한다. 이에 따라 수산업의 특성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농림어업 최저임금 영향률은 19.9%이나, 해양수산업통계조사 사업체 부문 별도조사에서는 수산물 생산업 2.0%⁵⁴⁾, 수산물 가공업 23.1%, 수산물 유통업이 21.0%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 최저임금 영향률의 차이

구분	최저임금위원회	해양수산업통계조사
2019 수산부문 최저임금 영향률	19.9%	수산물 생산업 2.0% 수산물 가공업 23.1% 수산물 유통업 21.0%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2018.6, 해양수산부, 「2017년 해양수산업통계조사(부가조사편)」, 2019.6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54) 수산물 생산업의 경우 개인 경영체인 어가가 포함되지 않아 낮은 수준이지만 어가를 포함하는 경우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 특성이 완전히 다른 수산업을 타 산업과 같은 그룹에 넣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보다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별도의 최저임금 설정이 불가하다면 최저임금 영향을 산정 시만이라도 농어업을 분리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이다. 「선원법」에 의해 결정되는 외국인 선원 최저 임금과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기준이다.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노동조합과 선주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다 보니 ILO의 기준과 상충되어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은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권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설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ILO 어선원 노동협약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관련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각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저임금 외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으므로 시급히 별도의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숙식비 등의 임금 포함여부이다. 2018년 6월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식비, 숙박비 등의 현물지급은 최저임금 산입법안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수산업의 경우 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과 달리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숙식비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농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수산업분야의 외국인 고용허가에 대한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냉동냉장업의 경우 영하 18도 이하인 곳에서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 필요하지만 법률적인 제한 때문에 외국인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수산업분야의 외국인 고용 필요 업종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3. 고령노동자에 대한 정책지원

수산업의 속성상 고령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어가의 고령화율은 2017년 기준으로 35.2%에 달한다. 한편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50대가 54.8%, 60대 이상이 12.6%이다. 이처럼 수산물 생산업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안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고령자에게 적용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일자리 확보라는 차원에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7-2〉 어가수 추이 및 전망

단위: 가구, 명, %

구분	2017	전망치			증감률	
		2018	2019	2023	'18/'17	'19/'18
어가수	52,808	51,885	50,194	46,563	-1.7	-3.3
어가인구	121,734	118,656	113,647	95,638	-2.5	-4.2
어가 고령화율(%)	35.2	35.4	35.9	38.4	0.6	1.4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년도(검색일, 2019.10.28.)

4. 합리적인 탄력적 근로기간 설정

수산업의 속성상 계절성을 띠고 있다. 특히 가공산업의 경우 원료인 수산물에 따라 생산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신선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인 기간 동안 집중하여 작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노사정이 합리적으로 탄력적 근로기간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없는 경우 법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근로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해당업종의 업무분석을 통한 합리적·탄력적 근로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장조사 시 냉동냉장업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현재 2,114명인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르면 현재 2,026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업종별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라 추가인원이 필요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탄력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정부지원제도의 홍보

정부의 지원대책 미활용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내용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다. 수산물 가공업은 28.9%, 수산물 유통업은 40.8%가 지원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광남 외(2019)⁵⁵⁾에 따르면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163억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었다. 농림·어업·임업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16,426명에게 120억 원 규모를 지원했는데 이중 수산업분야는 약 12억 원만 지원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데, 수산업의 경우 계절성, 보험제 등의 시행을 이유로 가입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설문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지원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1차적인 홍보의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지만, 해양수산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6.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원

고령자, 청년, 귀어·귀촌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고용보험을 가입 전제

55) 이광남 외(2019), p. 237

로 하는데 수산업분야는 영세사업장, 취약계층이 많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농업분야는 2018년부터 60세 이상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1인당 13만 원에서 15만 원급을 확대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포함시키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분야도 노령층, 청년층, 귀어귀촌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금을 확대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수산업분야 노동력 수급 효율성 제고

수산업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노동자 수급이 쉽지 않다. 또한 노동자가 원하는 사업장과 사업주와 원하는 노동자가 다르게 결정되는 미스매치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 고용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인력 미스매치는 과거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⁵⁶⁾

또한 수산업은 계절성과 지역적인 한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노동의 수급여건이 달라 인력조달에 고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산업분야의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협중앙회 산하에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의 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고 있다.

56) 이광남 외(2019)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수산업분야의 근로자 채용방식이 상용 근로자는 지인소개 다음으로 신문, 인터넷 광고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지인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의 어업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등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수산업 노동자 인력풀을 만들고, 나아가 재교육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8. 수산업분야 노동 통계 시스템 구축

수산업분야의 노동 통계는 여러 통계별로 산재되어 있으나 지극히 제한적이다. 수산업분야의 경우 일반산업은 물론 농업과도 산업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수산업분야의 일자리 및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노동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통계자료가 미비한 경우 임시로 조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시계열의 전체적인 추세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다 보니 수산업 노동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발표 통계자료와 통계청의 통계수치가 상이하기도 하여 정책 활용에 혼선이 따른다. 따라서 수산업분야의 노동정책에 필요한 노동관련 통계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 노동정책과 관련한 노동수급, 임금, 고용통계에 대한 정기적인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2018. 6.
- 김병호·강일권·조영제·오철용, 『수산의 이해』, 수산경제연구원BOOKS·블루앤노트, 2013.
-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천일염 생산량 관리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8.
- 박광서, 한광석, 장정인, 최석우, 박예나, 이지원, 김지원 외, 「해양수산 고용현황 분석 및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9.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7년도 어업경영조사보고」
- 수협중앙회 내부자료.
- 식품저널, 「2018년 식품유통연감」, 2018
- 오상봉, 「최저임금이 가게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5.
- 이광남, 정진호, 홍성걸, 조재현, 김창민, 이경현, 김대의, 옥영주「수산업 현장 애로 사항 분석 및 동향 파악 연구」, 2019.
- 이현동 외. 2017. “매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한 국내외 시장동향 및 기호성 분석”,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통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장영수, 「수산물유통론」, 2011.
- 장정인, 최석우, 정수빈, 최수빈,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 영향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내부자료.
- 전라남도교육청, 「수산물 유통」, 2014.
- 정명생·임경희.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 최정윤, 『수산경영학』, 2008.
- 통계청, 「수산물가공업통계」 통계정보 보고서, 2015.
- _____, 「수산물가공업통계」 통계정보 보고서, 2017a.
- _____,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b.
- 한광석 외, 「어업재해보상 보험의 기준임금 조사 및 산정체계에 관한 연구」, 2004.
- 한광석·이현동, 「새로운 수산업 개념 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2019」, 2019.
- 한국은행, 「2017년 기업경영분석」, 2018.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각 연도.
- 해양수산부, 「2018 유통산업실태조사」, 2019.
- 해양수산부, 「근해어업 실태조사」, 각 연도.
- 해양수산부, 「2017년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2019.

〈국외 문헌〉

Schulten, Thorsten and Malte Luebker, 「WSI MINIMUM WAGE REPORT 2019: Time for Substantial Minimum Wage Rises and a European Minimum Wage Policy」, WSI Report No. 46, March 2019.

목포대학교 산학협력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식산업발전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297&lsId=&chrClsCd=010202&urlMode=lsInfoP#0000> (검색일: 2019. 10. 5)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0091#> (검색일: 2019. 10. 5)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도란?」, <http://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검색일: 2019. 10. 1)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심의 및 결정과정」, <http://minimumwage.go.kr/info/infoProc01.jsp> (검색일: 2019. 10. 1)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액 현황」, <http://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검색일: 2019. 10.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통계청, 「해양수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ommonBoardList.do?gubun=1&strCategoryNameCode=055&strBbsId=searr&categoryMenu=014 (검색일: 2019. 10. 1)

〈관련 자료 목록〉

박영범 외, 「경쟁력 있는 가공산업 제도적 육성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5.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해양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최지현
02	수산부문 전망모형「KMI-FOSiM」구축 연구(2차년도)	이현동
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박상우
04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최석우
05	연안토지의 공공적 관리 강화를 통한 연안관리 효과 제고방안	윤성순
06	선박 배출저감기술의 국내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안용성
07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최일선
08	주요국의 해양유전자원 관리체계 강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09	하천·해양 수질의 연계·통합 관리 체계 연구	장원근
10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이정삼
11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및 보존에 관한 연구	류정곤
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정명화
13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영향분석 연구	한광석
14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김태일
15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전형진
16	해상 사이버 보안 대책방안 연구	박한선
17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운기업 역량강화방안 연구	윤희성
18	국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산항 및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하태영
19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이기열
20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협력 수준 분석과 물류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은수
21	온도조절 컨테이너의 국제물류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신수용
22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3/3)	박한선
23	환동해권 경제개발 및 협력방안 연구(3/5)	최나영환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 구축 연구(1/2)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여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양식어장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해양사고조사체계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연구 - 베이지안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병욱
12	해운기업 지배구조 및 비즈니스 유형과 경영성과 관계 분석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함수 추정과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환동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이기열
18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차년도) -	박한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일본의 수산물 수입 구조 분석과 對일본 수출 전략 연구	임경희
----	--------------------------------	-----

02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장홍석
03	사업체 총조사 MD를 활용한 2016,2017 어촌지역 고용통계	한광석
04	외래 해양부착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박수진

2018년

01	선화주조선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낙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3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안용성
04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조지성
05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6	수산업·어촌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류정곤
07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방안	엄선희
08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최일선
02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이남수
03	해수욕장의 사회악자 포용성 증진 방안	정지호
04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황규환
05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연계·활용방안 연구	안용성
06	한국산 수산물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한기욱
07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구상	이윤정
08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및 시사점	안지은
09	해운 조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	안영균
10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박상우

11	지역 해양수산 역량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황재희
12	극동러 진출 우리 화주·물류 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 방안	박성준
13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의 비차보관 의무 도입방안 연구	임병호

2018년

01	미얀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 인증을 중심으로 -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 위한 우리나라-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4	페루 수산업 실태 및 수산 협력 방향	엄선희
25	경제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이용한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	한광석
26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남정호
27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홍장원
28	어촌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박상우
29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	이종필
30	IMO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비한 국내 해운산업 대응 전략	이호춘
31	외래병해충에 대한 항만분야 방제체계 개선방안	최나영환
32	수산물 생산·유통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가능성과 도입방안	고동훈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양식수산물의 경영비 조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백은영
02	딥러닝 기반의 건화물선 시황예측 연구	윤희성
03	해운-조선산업 관계분석 연구 - 컨테이너 신조발주량 예측 -	최건우
04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1) -디지털 공급사슬 생태계 정보통합지도 구축 중심-	최상희
05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해안관리 방향	정지호
06	우리나라 주요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운영, 시설, 제도를 중심으로	이경한
07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8	EU의 수산물 소비 특성 및 수출 전략(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김지연
09	해양수산 위성계정 기초연구(1)	장정인
10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성과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트렌드 분석 및 수출 전략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브릿지 구축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연구

인 쇄 | 2019년 12월 29일 인쇄

발 행 | 2019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장 영 태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08월 0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애드원플러스 Tel : 070-4390-3850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15,000원

